

강원특별자치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120 호

2025. 3. 28(금)

조 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 ... 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9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50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1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2호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3호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4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22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5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6호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7호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8호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32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9호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0호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 3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1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 3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2호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3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4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4호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5호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4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6호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45

회 람								
--------	--	--	--	--	--	--	--	--

발행: 대 변 인 실 (TEL: 033-249-2054, FAX: 033-249-409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7호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8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9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20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5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2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62

규 칙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36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4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37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66

입 법 예 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15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16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8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17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9

고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109호	어론천(신풍지구)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135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110호	치유의 숲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45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117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춘천 만천천 양지교) 고시	148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487호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자치·행정분야)	150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489호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모집 공고	151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492호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55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494호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56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49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158

시 군 행 정

춘천시 고시 제2025-170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강원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59
춘천시 고시 제2025-171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중도복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 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73
춘천시 고시 제2025-172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중도복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76
춘천시 공고 제2025-622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중로3류9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안) 열람공고 178
춘천시 공고 제2025-631호	춘천 도시계획시설(중합의료시설:춘천성심병원)사업 완료 공고 184
춘천시 공고 제2025-634호	춘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열람공고 185
춘천시 공고 제2025-639호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부분준공) 공고 188
원주시 고시 제2025-126호	원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23호:중앙근린공원(2구역)]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90
원주시 고시 제2025-129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한라대학교) 세부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7
원주시 공고 제2025-758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76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202
원주시 공고 제2025-803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26호)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203
원주시 공고 제2025-804호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1-4호,대로3-10호,중로2-113호,소로2-618호, 완충녹지26호)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 209
강릉시 고시 제2025-101호	강릉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신원아침도시~안목간 도시계획 도로(중로2-1호선, 중로1-7호선) 사업(2공구)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고시 222
강릉시 고시 제2025-106호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75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고시 226
강릉시 고시 제2025-107호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8호선,중로2-16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28
강릉시 고시 제2025-109호	강릉 도시관리계획(견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 230
강릉시 고시 제2025-113호	강릉 향호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34
강릉시 공고 제2025-566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264
강릉시 공고 제2025-571호	강릉 도시계획시설(소로2-164호선 외 2개소)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열람·공고 287
강릉시 공고 제2025-609호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열람·공고 296
동해시 고시 제2025-40호	동해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298
삼척시 고시 제2025-60호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6)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299
삼척시 고시 제2025-62호	삼척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302

횡성군 공고 제2025-73호	횡성 군계획시설(연구시설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안) 열람·공고	304
정선군 공고 제2025-321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소로3-35호선) 공사완료 공고	306
정선군 공고 제2025-322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소로2-2호선, 소로3-10호선) 공사완료 공고	307
정선군 공고 제2025-326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장찬천) 공사완료 공고	308
화천군 공고 제2025-350호	화천군 공인 폐기 공고	309

조 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급식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보관·조리·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억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기본방향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목표 및 달성 방안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교육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행계획 수

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표창)교육감 및 교육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한 실천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소비 문화와 환경 의식을 함양하고,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과 정의(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제3조)
-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제4조 및 제5조)
- 지도·점검 및 협력체계(제6조 및 제7조)
- 표창(제8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사용자의 요구·의도를 스스로 이해하여 글, 그림, 소리,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 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원을 보조·지원하는 교수 도구로 활용할 것
-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기회를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할 것
- 3. 학생과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별·학년별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시범사업
-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3. 학생 및 교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4. 그 밖에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생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다.

- 1.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
- 2.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역기능
- 3.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 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침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수 활동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1.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으로 도출된 결과를 해석·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 2.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 3. 제7조에 따른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통해 학생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있어서 윤리적 책임감을 갖을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제3조)
-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 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
-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제6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9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교육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살해, 유기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도 나타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제3조).
-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제4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제6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0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활동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2. 방과 후 학교·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4.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5. 그 밖에 학생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할 수 있다.

-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4.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시 학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7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

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해야 한다.

-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 2. 개설 프로그램, 수강료
-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기능)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 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복합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 3.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교장이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회의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운영협의회에 운영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체육,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목적 및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제4조)
- 기능에 관한 사항(제5조)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에 관한 사항(제6조)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1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입법평가 결과 법령에 근거하여 기 추진중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와의 기능 중복 부분이 있어 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2호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발급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여부 여 [], 부 []		
	대상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주소		
	휴대전화 번호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2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1.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 사항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6.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7.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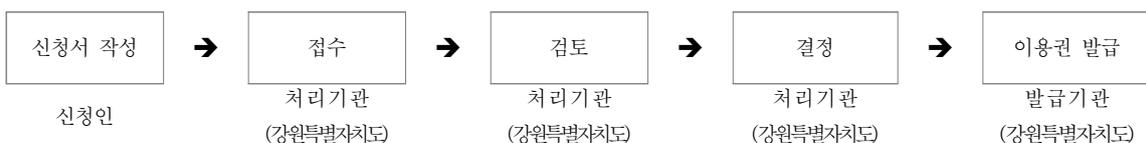
작성방법

-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증질지(80g/m²)]

■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집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회원가입동의 여부, 평생학습계좌번호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계좌 발급 및 학습이력관리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관리	<u>5년,</u> <u>회원탈퇴 시</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부가서비스 제공은 제한을 받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발급위탁금융기관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한도금액 부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	<u>목적 달성 시 까지</u>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항 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u>주민등록번호</u>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u>5년</u>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정이유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3호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분류 중 건축, 토목, 건설기계운전, 자동차, 용접,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에너지·기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 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송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에 기념행사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30명”을 “50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관할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2.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도 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을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 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서장이”로, “호선하고,”를 “임명하고”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를 “소방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경우간사”를 “경우 간사”로 한다.

2.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4. 그 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용소방대법 제4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서” 를 “소방서장 감사패 수여 대상: 소방서” 로, “근무한 사람 : 소방서장 감사패” 를 “근무하거나 공로가 크다고 인정받은 사람” 으로 한다.

1. 도지사 감사패 수여 대상

가. 의용소방대장

나. 공로가 크다고 인정받은 의용소방대원

제2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물품” 을 “·물품·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복장 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군 관할구역 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등 사무공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강의경연대회 소요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4. 시·군 관할구역 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소방홍보 활동,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5. 강원특별자치도민 대상 소방 안전 교육훈련 경비

7.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및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별지 제12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를 “가족관계증명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약칭을 명확히 하여 관련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고,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운영위원회 및 지역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4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소방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방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소방서·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지역대, 특수대응단 및 환동해특수대응단을 말한다.
- 2. “소방법률지원”이란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지원을 말한다.
 - 가. 법률자문: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제시
 - 나. 소송지원: 소방관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관서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 포함)에 대한 지원 활동
 - 다. 법률상담: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 상담 활동
 - 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의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출석 시 동행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법률지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방법률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등 분야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 예방 활동
-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구급 활동
-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조사 활동
- 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119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활동
- 6. 소방관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 7. 그 밖에 소방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제6조(소방법률지원의 방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방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지정

2.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에게 의뢰

제7조(소방법률지원의 절차) ① 소방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의 장은 도지사에게 소방법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소방법률지원을 해야 한다.

③ 소방법률지원의 종료는 사안별로 소방법률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소방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소방법률지원의 요청,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를 개인의 신상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법률지원의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소방법률고문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소방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이하 “소방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소방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 2.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
- 3.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 4. 불성실하게 소방법률지원을 하는 경우
- 5. 소방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 6.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 7. 그 밖에 정상적인 소방법률지원이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비밀의 유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수당) ① 도지사는 소방법률고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액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는 “소방법률고문”으로, “고문료 및 자문료”는 “수당”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 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서 각종 민원으로부터 비롯된 법률적 지원을 요구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방법률지원을 통해 업무수행에 있어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5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 및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상생협력”이란 상가건물의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차임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 2.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 2.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상생협약 체결의 권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 권장 시 법 제10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
- 2.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 3.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
-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
-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 상권 활성화 또는 상가임대차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 다.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 라.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 마. 「법무사법」 제4조에 따른 법무사
- 4.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1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 및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6호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바이오헬스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헬스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3. 바이오헬스산업 유관 기관의 장
 4. 바이오헬스산업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를 “위원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바이오헬스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의3(자문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신사업 발굴, 연구, 정책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 개정이유

직위 중심의 위원회 구성 및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7호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기술 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군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8호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통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방향
- 2. 전통문화산업의 인정기준 및 지정
- 3.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지역 내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
- 4.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5. 전통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재원의 확보
- 6.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육성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전통문화산업 육성 사업)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인 요소(디자인, 산업, 기술 등을 말한다)를 조화롭게 발전·융합하는 사업
-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전통문화상품 제작
- 3.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4.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 5.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가업승계 장려
-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 7. 전통문화산업 관련 홍보
- 8.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통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전통문화산업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체험활동 지원
- 3. 전통문화산업 행사 지원
- 4.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등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전통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전통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09호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앞의 “제3장 위원회” 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의 “제4장 보칙” 을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9조를 제20조로 하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 도지사는 노인의 건전한 성(性)문화 조성 및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정립·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상담 사업
-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사업
- 3.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사업
- 4. 그 밖에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위원회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100세시대 건강한 노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노인 성문화를 조성하고 노인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0호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
- 2.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의 추진방법
- 3. 희귀질환 교육·홍보
- 4.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희귀질환관리 지원사업)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 1.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 2. 희귀질환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3.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는 질환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희귀질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1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수산물식품 수출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와 제13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 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생산 기반 조성,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농수산물식품수출지원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농수산물식품수출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수출 진흥 사업)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업체 및 해외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사업
- 2. 농수산물식품 수출품 생산자단체의 수출에 관한 컨설팅 사업
- 3. 수출대상국이 요청하는 기준·규격 및 검역 조건에 적합한 농수산물식품 수출품 생산 기술·관리 교육 사업
-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제6조 각 호의 사업
- 2.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을 위한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수·보수 사업
- 3. 농수산물 물류 장비·기자재 구입 사업

4.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해외 판촉행사 개최 사업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기여도가 높은 시·군,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2호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양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양삼을 말한다.
2. “산양삼제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수록된 식품 중 산양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산양삼산업”이란 산양삼 및 산양삼제품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임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양삼 재배·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산양삼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3. 산양삼 가공 및 산양삼제품의 유통·판로 지원
4. 산양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임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다만,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 다만,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산양삼 산업은 친환경적이며 건강 기능성이 뛰어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임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음.
-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의 재배 및 유통 체계가 아직 미흡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산양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3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공익기능”이란 산림의 수원(水源) 함양, 대기 정화, 재해 방지, 휴양·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경관 보전, 탄소흡수 등의 기능을 말한다.
3.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4. “산림소유자”란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림보호구역의 산림 중에서 국·공유림 외의 산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5. “산림보호관리협약”이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체결하는 다음 각 목의 협약을 말한다.

가. 산불감시

나. 밀렵 및 임산물 굴취·채취 등 불법행위 감시

다. 역사·문화자원 보존 활동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의 공익기능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약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과제 발굴과 재원 조달 방안
3. 기초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 개발
4. 산림 분야 일자리 발굴 관련 기업·법인·단체 육성과 지원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5.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현황 및 통계 조사, 정책 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
2. 지역사회와 도민이 참여하는 산림 생태계 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
3. 산림 분야 보존 및 활용 등 분야별 관리주체 육성
4. 산림 분야 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교육, 홍보 지원
5. 산림소유자에 묘목·종자,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6. 산림 분야 교육·치유·문화·휴양 관련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 참여형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7. 산림 관련 일자리 발굴 및 서비스 개발
8.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산림 관련 법인·단체·기관·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식목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식목 활동 캠페인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추진할 때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목적에 맞는 식목활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산림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법인·단체·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요 자산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4호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홍보)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홍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5 호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수원지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생활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지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제4조(상수원지역 내 지방도 우선 건설 등) 도지사는 상수원지역 내 지방도에 대하여 다른 지방도에 우선하여 건설하거나 지방도 건설 순위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 2. 그 밖에 도지사가 상수원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상수원보호구역 갈등 관리) 도지사는 지역 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중첩규제로 인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수변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하고 주민생활을 지원하여 균형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6호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의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의 수질 및 생물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하천복원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하여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담당 실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 2. 생태하천복원 분야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2. 생태하천복원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실적보고서 제출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 완료·승인·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내용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 조건, 사업 목적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시장·군수에 대하여 향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현저한 성과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에게 사후관리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재정 지원은 조례 제정 이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례 시행일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사후관리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도 적용한다.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7호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해양이 미래산업, 지역경제 및 국제무역의 중심으로 부상함을 인식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 2. “해양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 3. “해양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해운·항만물류 분야
 - 나. 조선 분야
 - 다. 해양바이오 및 해양과학기술개발 분야
 - 라. 해양환경·오염방재 분야
 - 마.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 바. 해양정보·금융 분야
 - 사.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
 - 아.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 분야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 및 여건 변화
-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 3.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 4. 장단기 발전 전략 및 추진 과제
- 5.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6.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7.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육성계획에 따른 연차별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및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 2. 해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
- 3.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 4.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 5. 해양산업 판로 개척 및 저변 확대
- 6.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해양산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해양산업의 육성·발전과 관련한 정책의 조정
-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도지사가 임명하는 해양산업 담당 부서의 장(총괄기획관, 미래산업국장, 관광국장, 해양수산국장)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 나. 해양산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산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해양산업 분류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양산업 관련 통계를 관리하여 해양산업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해양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해양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2.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제도 지원
- 3.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의 해양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산업화, 인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5. 같은 업종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 6. 관련 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제16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공무원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8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사회·기업·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협업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다.
- 2. “부패방지 정책”이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말한다.
- 3.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제3조(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이하 “시민사회등”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의 체결·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3.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 6. 제9조제4항,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 7.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2.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
-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단체 중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단체를 말한다)의 장

③ 민관협의회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시민사회·기업을 대표하는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그 밖에 부패방지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관협의회의 부문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공공부문 의장: 도지사
- 2. 민간부문 의장: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 중 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의 직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직을 상실하고,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의장이 단독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 1. 정기회의: 연 1회
- 2. 임시회의

가. 의장 2명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의장 중 1명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며,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를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민관협의회에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①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청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된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

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관협회의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 2. 민간부패의 실태
- 3. 기업의 윤리경영
- 4. 그 밖에 민관협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회의 협의를 거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도지사는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제안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한다.

◇ 개정이유

입법평가결과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과 협의기관으로서 성격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동시에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가독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9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중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신품중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품종”이란 「식물신품중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 2. “산림신품중”이란 법 제2조2호의 품종 중 산림 분야의 새로운 품종을 말한다.
- 3. “품종보호권”이란 법 제2조제4호의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산림신품중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 2. 산림신품중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환류에 관한 사항
- 3. 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에 관한 중요 사항
-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신품중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장(이하 “산림과학연구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산림과학연구원장
- 2. 임업연구실장

④ 위촉직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2. 산림신품중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산림신품중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산림신품중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신품중 연구개발 및 육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단, 안 제2조 제4항 특허권등 중 품종보호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특화작목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를 “단, 제2조제4호 특허권등 중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특화작목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며,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항 중 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중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품종보호권”을 “품종보호권(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제정이유

산림신품중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신품중 연구개발 및 육성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20호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상징마크: 별표 1
- 2. 의회로고: 별표 2

제3조(의장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권의 출원) 의장은 상징물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을 출원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활용 등) ① 의장은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활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 의회의 (전자)문서·간행물·홍보물·관리물품 등
- 2. 의회 홍보물품 또는 응용상품의 개발·제작
- 3. 의회의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
- 4.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감사패·상장·신분증 등
- 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과 같이 상징물을 활용할 경우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위해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방법)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작도법 및 색상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상징물을 응용하여 사용할 경우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상징물의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상징물을 승인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징마크(제2조제1호 관련)

1. 상징마크



2. 의미

우리나라 국화(國花)인 무궁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문장의 규격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의 원형 꽃순 내부에 '의회' 자를 표시하며, 무궁화의 꽃잎과 꽃순의 테두리, 꽃순 내부의 '의회' 자는 금색으로 하고, 꽃순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3. 색상 기준

금색			자주색
의회 글자	꽃잎	꽃순, 꽃잎 테두리	원형
R255 G255 B79 C0 M9 Y80 K0	R255 G210 B0 C0 M16 Y100 K0	R255 G185 B35 C0 M30 Y95 K0	R112 G0 B6 C0 M100 Y80 K65

[별표 2]

의회로고(제2조제2호 관련)

1. 디자인



2. 디자인 컨셉

소통의 문을 여는 말풍선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는 의회의 가치 표현

3. 색상 의미

- 청정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을 배경으로 의회와 도민이 나누는 긍정의 에너지인 「소통」을 의미
- 따스하고 인정넘치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표상
- 도민을 하늘처럼 생각하고 섬기며, 진실하고 정직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에 대한 「신뢰」를 상징
- 강원특별자치도의 깊고 진한 동해바다처럼 도민과 의회가 함께 어우러짐을 의미

4. 활용안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제1항 관련>

상징물 사용 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	
	성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이메일: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		
<제출서류> 개인 및 법인 : 상징물 사용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포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div>		
<h2 style="margin: 0;">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하</h2>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제2항 관련>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	
	성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FAX)	/이메일: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변 경 사 유		
변경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하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강원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2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지사, 부교육감
2.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보좌기관 중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제3호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실장·과장 및 이와 동등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
5. 의회사무처장, 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8.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실장·과장 및 이와 동등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및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이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나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실장·본부장 및 이와 동등한 직급의 직원

제3조(대리 출석·답변) 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을 대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지방자치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규 칙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25. 3. 19.)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36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재산 :”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산 :”을 “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유임야 :”를 “공유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제4조제2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15조 중 “재산인도전”을 “재산인도 전”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계인수시”를 “인계인수 시”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없이”를 각각 “지체 없이”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5일전까지”를 “5일 전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3급 관사규모 및 사용대상자 기준(제34조 관련)

1. 관사 지원규모

(규모 : 전용면적 기준)

관사(단독형)	관사(APT)	기숙사
25㎡ 이내/1인	66㎡ 이내 (단, 3급 이상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우 99㎡ 이내)	14.5㎡/1인 (기관장 외)

※ 단, 관사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지역여건 등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가능

2. 관사 지원대상

소 재 지	대 상 자
본청 소재	1. 기획조정실장 2. 소방본부장 3. 비서실장 4. 농업기술원장 5. 중앙부처 파견협력관·정책관
본청 외 지역본부·직속기관·사업소 등	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가 정하는 본청 외 기관장의 임용·전보인사로 각 임용기관 소재 시군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

※ 단, 임용기관 소재 기준으로 차량이동 1시간(70km) 이상 거리의 기관에 한하며, 시·군 소방관서장은 적용 제외

◇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3급 관사 규모 및 사용대상자 기준)에 대한 지원기준에 “농업기술원장” 을 추가하여 국가직공무원의 도 발령 시 주거안정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25. 3. 19.)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37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동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개정(24. 12.)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입 법 예 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15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사무의 신설·수정·삭제를 통해 현실적 행정처리에 적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 가. 재난안전 분야 14개 사무 신설
- 나. 산림환경분야 6개 사무 신설, 11개 사무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048
- e-mail : skt321@korea.kr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재난 안전	1	승강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지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휴업 및 재개신고의 수리 나.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청문포함) 및 사업정지명령,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다.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조치·하도급계약 해지명령 라.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의 보고 및 검사 마.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 제7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제75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82조
	2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및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3	안전진단 및 점검전문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수리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다. 등록증 발급·재발급 라.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마. 신규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사실 통보 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사. 청문 아. 보고·조사 자. 시정명령 차.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카. 영업 양도·양수 접수 및 수리 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입력 및 승인 관리 파. 과태료 부과·징수 하. 하도급 사실조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제2항·제5항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제6항·제7항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제8항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 제38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2조의2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행정	1	은닉 도유재산 색출 및 신고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4조
	2	도유 일반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같은 법 제14조, 제44조
	3	도유 일반재산 대부 및 대부료, 변상금의 조정·징수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81조
경제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등록, 등록증교부, 등록부열람, 등록의 갱신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의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2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필요시 관할시·도지사에게 영업소 검사(공동검사 포함) 요청 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요청 사.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명령의 내용 통보 아. 영업정지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사실통보 카. 실태조사 타. 등록수수료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같은 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제5항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21조
	2	협동조합 신고 수리 및 지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수리 나.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수리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수리 라.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바.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교부 사.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수리 아.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19조 같은 법 제15조의2 같은 법 제60조의2 같은 법 제70조의2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3	어린이제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포·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4	수입물품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 가.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 나.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부과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제59조제3항
산업	1	지방산업단지의 관리(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2	산업단지의 지정 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3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한다.) 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4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포함) 및 고시 나. 이행강제금 처분 및 징수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같은 법 제43조의3 같은 법 제55조
	5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 승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6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수리 나. 시공업 등록의 말소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 열사용기자재의 제조, 수입, 판매,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
	7	20만V 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20조
	8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p>나. 계량기의 자체수리</p> <p>다. 폐업의 신고</p> <p>라. 검정증인의 표시 등</p> <p>마. 정기검사</p> <p>바.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p> <p>사.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p> <p>아. 검사증인의 표시 등</p> <p>자.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p> <p>차. 소비자감시원 위촉, 교육, 해제</p> <p>카. 과징금</p> <p>타. 신고포상금</p> <p>파. 지위승계</p> <p>하.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p> <p>거. 청문</p> <p>너. 수수료</p> <p>더. 업무의 위탁</p> <p>러. 과태료</p>	<p>같은 법 제8조제2항</p> <p>같은 법 제12조제4항, 제5항</p> <p>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항, 제4항</p> <p>같은 법 제30조제4항</p> <p>같은 법 제32조제2항</p> <p>같은 법 제33조제2항</p> <p>같은 법 제34조제1항, 제2항, 제3항</p> <p>같은 법 제42조제2항</p> <p>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p> <p>같은 법 제55조제2항, 제4항</p> <p>같은 법 제56조제1항</p> <p>같은 법 제63조2항</p> <p>같은 법 제64조</p> <p>같은 법 제66조제2항</p> <p>같은 법 제67조</p> <p>같은 법 제69조</p> <p>같은 법 제76조제3항</p>
	9	<p>전기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개선·과기·수거명령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p> <p>나. 보고 및 검사 등</p> <p>다. 과태료 부과·징수</p>	<p>「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p> <p>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p> <p>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p>
	10	<p>생활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생활용품의 개선·과기·수거·판매중지·보고·검사 명령 등</p> <p>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p>	<p>「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제41조</p> <p>같은 법 제51조</p>
	11	<p>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주차위반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p> <p>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다. 충전구역에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는 업무</p>	<p>「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6항</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2항</p>
	12	<p>전기사업(송배전 부문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p>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가.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1,000KW이하 발전사업) 나.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의 지정, 연장 및 사업의 개시신고의 접수(1,000KW이하 발전사업) 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1,000 KW이하 발전사업) 라. 전기사업의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1,000KW이하 발전사업) 마.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청문(1,000KW이하 발전사업) 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1,000KW이하 발전사업) 사.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1,000KW이하 발전사업) 아. 사업개시신고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1,000KW이하 발전사업) 자. 금지행위를 한 전기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1,000KW이하 발전사업) 차. 조사대상자에게 사실조사계획의 알림(1,000KW이하 발전사업) 카.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이행명령 (1,000KW이하 발전사업) 타.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1,000KW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7조,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9조,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10조,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12조,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61조,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71조,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10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문화체육	1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담보제공의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9조의2
복지보건	1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의 임면보고 수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3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노인복지법」 제42조
	4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5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폐기처분 나. 업무정지 다. 허가 등의 취소 라. 과징금 부과 마.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바.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사. 폐업 등의 신고수리 아. 허가 등의 제한 자. 출입·검사와 수거 차. 청문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69조
	6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7	마약류관리자 지정(의료업자)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44조, 제46조
	8	몰수 마약류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몰수 마약류의 인수 및 보관·폐기 나. 몰수 마약류의 처분 및 공급신청 처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 법 제53조
농정	1	공동방제 비용부담 명령서 교부	「식물방역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	지방 관리방조제 유지관리	「방조제 관리법」 제6조
	3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시료수거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4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
	5	가축의 방역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6	시장·군수(토지소유자 포함)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준공검사(법제2조제5호나목)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7	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발기반정리, 대구획경지정리, 소규모배수개선)에관한다음사무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산 립 환 경	8	<p>사무명</p> <p>가. 예정지 조사</p> <p>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사업 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수혜면적이50만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한정)</p> <p>다. 재산의 관리·처분 승인</p> <p>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한국농어촌 관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p> <p>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p> <p>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p>	<p>근거 법령</p> <p>「농어촌정비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제14조</p> <p>「농어촌정비법」 제17조</p> <p>같은 법 제24조</p>
	1	<p>자동차공회전 제한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등</p> <p>나.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p> <p>다. 공회전 단속</p> <p>라. 과태료 부과·징수</p>	<p>「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p> <p>같은 조례 제6조</p> <p>같은 조례 제7조</p> <p>같은 조례 제9조</p>
	2	<p>지정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p> <p>나. 허가 및 변경허가</p> <p>다. 허가에 따른 조건부여</p> <p>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p> <p>마. 과징금의 부과·징수</p> <p>바.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p> <p>사.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p> <p>아. 처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의 검사</p> <p>자.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p> <p>차. 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p> <p>카. 위임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p> <p>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승인</p> <p>파.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변경 승인</p> <p>하. 적합성확인 신청접수, 확인·통보, 자료제출, 조치요구</p>	<p>「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p> <p>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25조제11항, 제12항</p> <p>같은 법 제25조제7항</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8조</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38조, 제39조</p> <p>같은 법 제39조의2, 제39조의3</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61조</p> <p>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p> <p>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p> <p>같은 법 제25조의3 제2항, 제3항</p>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거. 반입정지명령, 반입재개 신청접수, 반입재개 여부통보 너. 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 승인 더. 폐기물 재위탁 승인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3	폐기물처리신고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신고, 변경신고 및 처리금지 명령 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다. 폐기물처리기간 예외 승인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4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저지대,연약지반,농지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 5의3] 제2호라목
	5	강원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나.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다. 원상회복 면제승인 라. 공원입장료 결정징수 및 공원시설사용료 결정 징수 허가 마.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바. 공원구역 등 출입제한 또는 금지 사. 자연자원의 조사 아. 영업의 제한 또는 금지 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차. 공원대장의 작성보관 카.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자연공원법」 제20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4조
		타. 공원구역안에서의 인가 또는 허가에 관한 협의(중앙행정기관 또는 도에서 시행하는 처분에 관한 협의는 제외) 파.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6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개선명령 권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7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의2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8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다. 건설폐기물 보관기간의 연장에 대한 인정 건설폐기물업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나. 허가 및 변경허가 다.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라. 과징금 처분 마. 건설폐기물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신고수리 바. 사용개시 신고의 수리 사. 개선명령 또는 중지명령 아.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자. 휴·폐업 등의 신고수리 차. 청문 카.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3항, 제22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66조
	9	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재위탁 승인 방치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조치 및 이행상황 점검 요구 나. 처리이행보증의 조치 다. 처리명령 라. 승계자에 대한 처리명령 및 행정대집행 마. 처리이행보중에 대한 조치명령 및 보험금수령	같은 법 제23조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2항, 제4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10	특정 농작물의 경작권고 등	「물환경보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1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등	「물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12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대집행은 시장·군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제4항
	13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항
	14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15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대상자 선발 및 자료제출 요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16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하수·분뇨관련 영업자의 기술인력,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선발 및 자료제출 요청	「하수도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제5항, 제6항
	1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3에 의한 2종 내지 5종 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2개 시군 이상의 광역적인 오염관리 또는 중대한 민원유발업소로서 도지사가 특별히 고시하는 사업장,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수리·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 나. 방지사설 설치의무 면제 다. 자가방지사설 설계·시공의 승인 라.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가동개시 신고수리 마.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에 대한 개선명령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등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 아.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자.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차.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카.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폐쇄조치 등 타.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제26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제35조의3 같은 법 제35조의4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18	항합유기준 초과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중지 등 조치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
	19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등 조치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20	보고명령 및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21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22	저항유 외 연료 사용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23	고체연료의 사용승인(1종사업장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24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37조
	25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의 폐기처분 등	「먹는물관리법」 제47조
	26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2항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27	먹는물 관련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등의 신고수리(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
	28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수리(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25조제3항
	29	품질검사 위탁검사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1조제2항
	30	사업장 폐쇄를 위한 조치(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6조제1항
	31	계시물의 제거 또는 봉인의 해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6조제2항
	32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그 용기와 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제2항
	33	영업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폐쇄, 영업정지(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
	34	청문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50조
	35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51조
	36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3항
	37	산림용 종묘검사 및 출하금지, 소독·폐기 등의 조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1호, 제2항
	38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마.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9조제2항
	39	보호수의 관리	「산림보호법」 법 제13조의2
	40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권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제3조
	41	임업후계자의 선발·지원 및 선발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3항
	42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나.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같은 법 제4조제2항
	43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가.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등 허가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나.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등 영업의 승계	같은 법 제31조
		다.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등의 취소 등	같은 법 제32조
		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설정	같은 법 제33조
		마.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등 허가 등	같은 법 제36조의2
		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등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른 사무	같은 법 제36조의4
		사. 해양심층수관련업 관련 시설의 출입·검사 및 수거 등	같은 법 제38조
		아. 과징금	같은 법 제45조
		자. 청문	같은 법 제52조
	4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잔류성오염물질함유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증지 또는 폐쇄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3항
		나.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4조의2
		다. 오염기기 등의 안전관리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
		마. 청문	같은 법 제30조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45	물놀이 수경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에 관한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8조제1항
	46	산림조합에 대한 감독 권한	「산림조합법」 제123조제2항
	47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물환경보전법」 제23조
	48	산지(山地)의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 등을 위한 다음의 권한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같은 법 제37조
		다. 복구비의 예치 등	같은 법 제38조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2항, 제3항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0조
		바.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신청의 접수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49	사. 복구대행, 비용충당 및 대집행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자. 복구비의 반환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카.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타. 위입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근거 법령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49조, 제57조
	5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 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 동물원 허가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동물원 허가 등 나. 동물원 허가의 취소 다. 과징금 부과 라. 동물원의 개방 및 휴·폐원에 따른 신고·반납 마. 동물원 안전관리 바. 동물원의 운영 등 자료의 제출 사. 동물원의 검사 등 아. 조치명령 자. 동물원의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관련 청문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같은 법 제31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32조
건설교통	1	도지사가 관리청인 도로의 접도구역 관리 및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도로법」 제40조
	2	도로점용료나 기타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과오납금의 반환 (단, 도로점용료는 2006.1.1이전 부과대상에 한한다)	같은 법 제69조, 제70조
	3	지방하천에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장·군수가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5조제2항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4	다른 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거나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6조
	5	하천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하천법」 제15조
	6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하천법」 제74조
	7	지방하천의 하천공사(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하천법」 제27조제5항
	8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하천법」 제27조제6항
	9	지방하천 하천공사의 준공고시(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27조제7항
	10	지방하천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하천법」 제29조
	1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 허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천법」 제30조제1항, 제2항
	12	동 공사비의 예치명령,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	「하천법」 제30조제4항, 제5항, 제6항
	13	동 공사의 준공인가 및 필요한 검사의 의뢰(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30조제7항, 제8항
	1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32조제3항
	15	동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천법」 제32조제6항
	16	지방하천에서의 토지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17	동 하천시설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
	18	동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하천횡단 시설물(교량, 보)를 제외한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19	동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호
	20	동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21	동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제35조가 규정한 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22	동 하천점용허가의 고시(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33조제7항
	23	동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비 예치,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인가의 고시, 준공인가 신청 접수 및 준공인가(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33조제8항
	24	동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36조
	25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의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다)	「하천법」 제37조제1항, 제5항, 제50조제5항
	26	동 변상금의 징수	「하천법」 제37조제3항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27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법」 제38조
	28	동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등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9	동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이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	「하천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30	동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공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48조
	3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장·군수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68조
	32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69조
	33	동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통지	「하천법」 제70조
	34	하천감시원의 임명	「하천법」 제72조
	35	지방하천에서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하천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1조
	36	동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75조
	37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예정지 지정 등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따른 협의(하천관리청 시행 하천공사를 포함한다)	「하천법」 제76조제2항, 제3항
	38	지방하천에서 토지등의 수용·사용(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78조
	39	동 보고 및 출입 등(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90조
	40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을 위한 청문(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91조
	4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 통지, 보상금의 공탁, 보상대상자 결정, 보상금액 산정 및 지급 통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8조
	42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권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43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44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수리, 등록이전, 등록의 경정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
	45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46	건설기계 등록원부비치·관리 및 등록원부의 등·초본교부, 열람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47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명령) 및 재부착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48	등록번호표의 반납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49	등록번호 새김명령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50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51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지정 신청접수 및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및 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	나.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같은 법 제8조의2
	52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건설기계의 검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53	건설기계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54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는 제외)	「주택법」 제15조
	55	감리자의 지정, 감리자 교체, 이의신청의 처리, 부실감리자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주택법」 제43조
	56	다음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과에 이에 관한 고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외한다. 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에 한한다. 단, 도로법에 의거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바. 광장 사.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에 한한다) 사. 공공공지 아. 수도공급 설비 자. 전기공급 설비(변전시설 및 배전사업소에 한한다) 차. 가스공급 설비 카. 열공급 설비 타. 방송·통신시설 파. 시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하.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거. 학교(고등학교 이하에 한한다) 너. 공공청사(국가 및 도 단위 기관으로써 둘 이상의 사군을 관할구역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더. 문화시설 러.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및 종합운동장을 제외한다) 머. 연구시설 버. 사회복지시설 서. 공공직업훈련시설 어. 청소년수련시설 저. 하천(소하천에 한한다) 처. 유수지 커. 저수지 터. 방화설비 피. 방풍설비 히. 방수설비 고. 사망설비 노. 방조설비 도. 장사시설 로. 도축장 모. 종합의료시설 보. 하수도(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광역시설을 제외한다) 오. 수질오염방지시설 조. 폐차장 초. 공동구 코.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57	경미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이에 관한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5항
	58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이에 관한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항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59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실효고시 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같은 법 제48조제2항
	6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또는 폐지 및 이에 관한 고시 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다. 관련인·허가 등 의제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라. 공시송달의 승인 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의 수리 및 준공검사,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완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같은 법 제98조
	61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62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 변경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에 의한 경미한 사항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변경지정 라.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마.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 바. 공사의 감리 사.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 아.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자.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차.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 제정 타. 신탁계약의 승인	「도시개발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58조
	6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도시개발법」 제13조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나.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다. 준공검사	같은 법 제50조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52조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사.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고시[단,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 환지 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같은법 제10조
		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 수립	같은법 제10조의2
	6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의2
	65	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등록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7조
		나.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교부, 재교부 및 등록의 거부	같은 법 제8조, 제9조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10조, 제16조
		라.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	같은 법 제13조제6항
		마. 자동차변경등록의 처리	같은 법 제11조
		바. 자동차이전등록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사. 자동차말소등록의 처리와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같은 법 제13조
		아.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자.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4조
	66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정 및 취소 등	「자동차관리법」 법 제20조, 제21조
		나.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74조
		다. 청문	같은 법 제75조
	67	임시운행 허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
	68	자동차 점검·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나. 검사기간의 경과의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69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허가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등록 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 마.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바. 자동차대여사업의 합병 사.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 아.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폐업 자.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 설치 차. 등록 카. 자동차 대여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타. 차령연장 파. 등록취소 등 하. 청문 거.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10조제5항, 제35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5조 같은 법 제14조제4항, 제35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5조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70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나. 사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다. 시설 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가 라. 터미널의 위치 변경인가 마.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의 명령 바.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사업의 상속신고수리, 사업의 휴·폐업의 허가 사. 사업자에 대한 청문 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94조
	71	여객자동차의 사용정지(시외버스는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72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시외버스운송사업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7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차령의 연장(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74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 나.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다.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마.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6조의2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23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7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개서 및 재교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7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 허가·허가증의 교부·개서 및 재교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77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78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79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의 변경 중 시행령 3조에 의한 개발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다. 사업시행자의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라.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 마.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 바. 선수금 승인 사.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아. 준공검사, 준공검사확인증 교부 및 준공 전 사용허가 자.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조치 차.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카.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협의 및 통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관광	1	설악산 문화시설 소재 행정재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용·수익허가 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청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다. 관리위탁 및 위탁료 징수 라. 사용료 징수 마. 연체료 징수 바. 변상금 징수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해양수산	1	연안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항지역 및 분구의 설정 나. 항만대장의 작성·비치 다.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운영의 위임·위탁,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관리청이 아닌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수리(국가에서 설치한 종합여객 터미널 및 부대시설 제외) 라. 항만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를 결정에 관한 사항 마.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바.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권한의 위임이 있는 사항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에 한한다)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 아. 보고 및 검사 등 자.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차. 토지에의 출입 및 사용과 장애물 제거 카.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 타.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파.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한업무 하.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거. 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	「항만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7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3조, 제94조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제102조 같은 법 제105조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업무분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행정	1	지방농업연구관 및 지방농촌지도관의 농업기술원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2	지방농업연구관 및 지방농촌지도관의 승급	같은 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3	지방농업연구관 및 지방농촌지도관의 임용제청	같은 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4	지방농업연구사 및 지방농촌지도사의 임용	같은 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5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원 산하기관 내의 전보	같은 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6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징계	같은 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7	6급이하(연구사포함) 일반직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	같은 법 제6조제2항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 및사업소장
건설교통	1	도로연결허가	「도로법」 제52조	도로관리사업소장 및각지소장
	2	도로점용허가	같은 법 제61조	
	3	도로점용공사의 준공확인	같은 법 제62조	
	4	도로점용허가 취소	같은 법 제63조	
	5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같은 법 제65조	
	6	도로점용료 징수 및 반환 등	같은 법 제66조	
	7	점용료 징수의 제한	같은 법 제68조	
	8	도로점용료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69조	
	9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같은 법 제70조	
	10	부과 점용료 이의신청 적부 심사 및 통보	같은 법 제71조	
	11	초과점용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	같은 법 제72조	
	12	점용 원상회복 명령 및 준공확인 등	같은 법 제73조	
	13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같은 법 제74조	
	14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96조	
	15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이행 강제금 등	같은 법 제100조	
	16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101조	

업무분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7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03조	
	18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등	같은 법 제106조	
	19	도로점용허가 관련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17조	
소방	1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소방서장
	2	방염처리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소방서장
	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소방서장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3]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행정	1	별정직 및 전문경력관의 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별정직 및 전문경력관의 경징계	같은 법 제6조제2항	
	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개방형 직위는 제외)	같은 법 제6조제2항	
	4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제자유구역청 내의 전보	같은 법 제6조제2항	
복지보건	1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한함)	「의료법」 제33조제4항, 제5항	
	2	의료기관 지도와 명령	같은 법 제59조제1항	
	3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의 제한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4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5	식품위생(취급)업소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나. 관계공무원을 통한 영업소 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	
	6	식품위생(취급)업소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가. 시정명령 나. 폐기처분 등 다. 시설 개수명령 등 라. 폐쇄조치 등 마. 청문 실시 바. 과징금 처분	「식품위생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제83조	
	산림환경	1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수리·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 나. 방지사설 설치의무 면제 다. 방지사설 설계·시공의 승인 라.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가동개시 신고수리 마. 측정기기 운영·관리에 대한 조치명령 바.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등 아.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자. 허가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제26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차. 과징금의 부과·징수 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타. 위임된 처분을 위한 청문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85조
	2	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3	황합유기준 초과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중지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41조제4항
	4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42조
	5	고체연료의 사용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6	위임된 사무·사업장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7	위임된 사무·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8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기타 수질오염원 발생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명령 및 검사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
	9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23조제3항
		다.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4조의2
		라.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마.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바. 청문	같은 법 제30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10	토양오염도 측정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
	11	토양정밀 검사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1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토양환경보전법」 제7조제1항
	13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청구서 접수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2항
		나. 보상금액 결정 및 통지	같은 법 제9조제3항
	14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양 정밀 조사 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나. 토양 정밀조사 실시결과 접수	같은 법 제15조제2항
		다.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같은 법 제15조제3항
		라. 환경부장관 요청에 의한 조치명령 및 결과보고	같은 법 제15조제7항
	15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경제자유구역 내 산업계)	「물환경보전법」 제23조
산업	1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에 한함),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에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한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신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라.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사. 보고 및 검사 아.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자.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납부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33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34조 같은 법 제14조, 제35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49조
건설교통	1	경제자유구역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 변경 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의한 경미한 사항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다.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 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바. 공공시설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사.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협의	「도시개발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2	경제자유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 나. 선수금 승인 다. 준공검사 라.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 필증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바. 조성토지 등 준공전 사용허가	「도시개발법」 제13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해양수산	1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립면허 나. 매립면허의 고시 다. 매립면허 수수료 징수 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및 승인 마.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의 협의 및 승인 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 신고처리 아. 준공검사 전 매립지의 사용허가 자. 준공검사 및 보완공사 명령 등 차.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카.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확인 및 고시 타. 매립목적의 변경 승인 및 고시 파. 매립지의 사용의 확인 하.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및 조치명령 거. 상실된 매립면허의 회복 너. 원상회복 명령 더.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제45조제2항 같은 법 제46조제4항 같은 법 제4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53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16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일부 사무의 수정을 통해 현실적 행정처리에 적합하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과 6개 사무, 회계과 7개 사무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048
- e-mail : skt321@korea.kr

강원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 행정과	1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시· 군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재산 정책과	1	총괄청 소관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관한 사무 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 및 매각 등 처분 다. 국유재산의 대부 및 대부료 징수 라. 국유재산대장등 공부의 작성관리 마.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바. 국유재산변상금의 징수	「국유재산법」 제25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9조,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 령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같은 법 제66조제2항 같은 법 제72조
	2	은닉국유재산 및 무주부동산에 대한 사실조사와 환수 등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77조
경제 정책과	1	가격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가격표시의무자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다.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 업에 관한 명령 및 검사 라.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된 도·소매업에 관한 명령 및 검사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제7조, 제16조제1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 청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8조
에너지 정책과	1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산물인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를 하는 석유판매업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제 49조제2항제1호
	2	과태료 부과·징수(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한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령」 제50조
	3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기간 연장,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신 고 수리	「광업법」 제42조제3항, 제42조의2제2항, 제3항
	4	광물 생산보고서의 접수	같은 법 제83조
	5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의 위치 등의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3항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6	변경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4조제1항, 제2항제1호, 제2항제2호
	7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부분 접수	같은 법 제84조
	8	석탄품질유지 의무위반자(석탄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 광업권의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나. 고발	「석탄산업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 제2항
접경 지역과	1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거주지보호 실태조사 및 대장의 작성·관리 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친환경 농업과	1	양곡의소유자, 매매업자, 가공업자, 수출수입 및 보관 또는 수송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공무원의 증표 발행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2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라.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마. 사용료 징수 바. 사용료 면제 사.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 아.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자. 행정재산등의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차.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총괄청 인계 카. 용도 폐지된 재산중 총괄청이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처분 토록 지정한 재산의 관리 타. 국유재산의대장·등기부등본과도면의비치, 실태조사, 대장의 정비 및 서류의 열람·복사, 등·초본의 교부 등 파. 변상금 징수 하. 과오납금 및 반환가산금의 처리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제2항4호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5조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거.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4조
산림 정책과	1	조립비의 반환 조치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65조
산림 관리과	1	사방지의 지정	「사방사업법」 제4조
	2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같은 법 제6조
	3	사방지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20조
	4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에서 시행하는 사방담 설치·관 리사업 및 산지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방사업의 시행 나.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다. 공무원의 조사 등 라. 손실보상 등 마. 보상금의 결정 바. 재결의 신청 사. 사업의 위탁 아. 수익의 귀속 자. 사방사업 공부의 비치 차. 사방사업 대장의 열람 등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7조의2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환경 정책과	1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2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3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20조제1항, 제2항
	4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취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나.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보고명령 및 검사 라. 조치명령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제6항 같은 법 제38조제3항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48조의5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6	<p>「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사무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2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중 다음의 권한</p> <p>가.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등,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사항 등</p> <p>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p> <p>다.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 결정·통보, 통지, 협조요청</p>	<p>같은 법 제29조</p> <p>같은 법 제32조제3항</p> <p>같은 법 제33조</p>
	7	<p>「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p> <p>가.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오염물질측정결과 접수, 주변지역영향조사 결과 접수, 오염물질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조사결과 공개 등</p> <p>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집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사후관리 제외 대상시설의 인정</p> <p>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통보, 징수, 납부, 수리, 사후관리 비용 및 이행물의 결정 등</p> <p>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통보, 적립계획서수리, 납부 통보 등</p> <p>마. 토지이용의제한, 계획서수리, 토지용도, 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립 등</p>	<p>같은 법 제31조</p> <p>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p> <p>같은 법 제51조</p> <p>같은 법 제52조</p> <p>같은 법 제54조</p>
	8	위임된 사무에 관한 청문	같은 법 제61조
	9	위임된 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68조
	10	<p>위임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정기검사 기간연장 및 유예</p> <p>나. 정기검사 수검명령</p> <p>다. 정기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p> <p>라.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p>	<p>「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p> <p>같은 법 제62조제4항</p> <p>같은 법 제62조의3제1항</p> <p>같은 법 제62조의4제1항</p>
	11	<p>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p> <p>나.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p> <p>같은 법 제39조</p>
	12	<p>대기·폐수배출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p>	<p>「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p>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3	<p>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p> <p>다.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표시판설치</p> <p>라. 사업장 등의 출입·검사</p> <p>마. 자료제출 요구</p> <p>「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 별표13에 따른 2종 내지 5종 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2개 시군 이상의 광역적인 오염관리 또는 중대한 민원유발업소로서 도지사가 특별히 고시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p> <p>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p> <p>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p> <p>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의 수리, 점검 및 오염도검사 의뢰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p> <p>라.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p> <p>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p> <p>바.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p> <p>사.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p> <p>아.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p> <p>자.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p> <p>차. 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 등</p> <p>카. 기준 이내 배출량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p> <p>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p> <p>파. 과징금의 부과·징수</p> <p>하.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배출시설의 인정</p> <p>거.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p> <p>너.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p> <p>더.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p> <p>러. 행정처분 명령의 이행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p> <p>머.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검사의뢰, 개선기간 연장 신청의 수리</p>	<p>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p> <p>같은 법 제13조제4항</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17조</p> <p>「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항</p> <p>같은 법 제35조제3항</p> <p>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3항, 제4항</p> <p>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p> <p>같은 법 제39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41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44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50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51조</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3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58조</p> <p>같은 법 제44조</p> <p>같은 법 제47조제1항</p> <p>같은 법 제38조의4</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40조</p>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4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내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개선명령·조업정지·폐쇄명령	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제60조제3항, 제4항
	15	위임된 사무·사업장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68조제1항
	16	위임된 처분을 위한 청문	같은 법 제72조
	17	위임된 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
	18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의 매수(토지매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토지매수협의회” 운영은 제외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 보상금의 지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제1항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2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외의 대기·폐수 2~5종 사업장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만 해당되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제외한다)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수질 보전과	1	오수·분뇨·축산시설사업장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다.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표시판설치 라. 사업장 등의 출입·검사 마. 자료제출요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2	특정 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명령, 시설장비검사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3 4	과태료 부과·징수(「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7호, 제24호, 제27호, 제28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입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검사 나. 증명서류의 접수 및 처리 다.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 및 보전조치·시정조치 명령 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마.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강제징수 바. 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조치 및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제한	같은 법 제80조제4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 같은 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2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지역 도시과	1 2 3	국유재산(구거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 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의 등록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및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 신청의 접수·내용확인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의 조치 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사. 시정명령·지시 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제86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같은 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리.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버.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처목
교통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나. 운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고속형시외버스 운송사업 제외, 그 외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운송 시설의 확인에 한함) 다.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수리(기준 및 요율은 시외버스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내·농어촌버스는 도지사가 정함) 라. 운송약관의 신고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마. 사업계획변경인가,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바.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사. 양도·양수신고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 수리(시외버스운송 사업은 제외 한다) 아. 상속신고 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자.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차.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카. 개선명령(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타. 사업면허의 취소, 등록의 취소 및 운송사업의 정지처분(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파. 청문(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하.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87조
	2	과태료 처분(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94조
	3	내압용기 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업무는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4제3항
	4	택시미터검정기관 지정 및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7조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나. 허가사항 변경허가 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제3조제3항 같은 법 제3조제9항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라.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	같은 법 제6조
		마. 운송가맹점가입사업자의 소속운송가맹점 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의 상호변경신고	같은 법 제11조
		바. 개선명령	같은 법 제13조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같은 법 제16조
		아. 상속신고	같은 법 제17조
		자. 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같은 법 제18조
		차.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같은 법 제19조
		카.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수리 및 반환	같은 법 제20조
		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21조
		파. 청문	같은 법 제22조
		하. 책임보험 계약 등의 미체결보험 의무가입자에 대한 통지	같은 법 제38조
		거. 사업의 임시허가	같은 법 제3조제12항
	6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나. 청문	같은 법 제22조, 제23조
	7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같은 법 제3조제9항, 제24조제7항
		다. 사업의 허가취소 및 정지	같은 법 제27조
		라. 운송주선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6조, 제28조
		마. 책임보험계약등의 미체결 보험등 의무가입자에 대한 통지	같은 법 제38조
		바. 운송가맹점가입사업자의 운송가맹점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의 상호변경 신고	같은 법 제11조, 제28조
		사. 개선명령	같은 법 제13조, 제28조
		아.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같은 법 제16조, 제28조
		자. 상속신고	같은 법 제17조, 제28조
		차.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21조, 제28조
		카. 청문	같은 법 제22조, 제28조
		타. 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같은 법 제18조, 제28조
	8	과태료 부과 및 징수(운송가맹사업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70조
	9	물류창고업등록에 대한 다음의 권한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나.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다.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라.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의 휴·폐업의 신고수리 마.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바.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사.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아.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자. 청문 차.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0. 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11.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경의 취소 및 효력정지 나. 사업면허 취소, 사업정지 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 명령 다. 청문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 같은 법 제14조, 제21조10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21조의10 같은 법 제15조제2항, 제21조의10 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21조의10 같은법 제21조의9 같은 법 제61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62조제1호, 제1호의2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제64조제2항 제2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3조제3항
하천과	1 2	1. 댐 구역내에서의 다음의 권한 가.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의 선박 운항 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허가 나. 동권리·의무이전의 신고수리, 같은법령 위반자 및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다. 동 허가·처분 등을 위한 댐 수탁관리자와의 협의 2.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토지의 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 다.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허가 및 이의 고시 라.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 및 이의 고시 마.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하천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제36조제1항, 제2항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바.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의고시	같은 법 제38조
		사.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69조
		아.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0조
		자.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3조
	3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48조
	4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장·군수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68조
	5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5조
	6	보고 및 출입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0조
	7	청문(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1조
	8	과태료의 부과·징수(시장·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1호, 제6호, 제7호
	9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구거, 하천, 유지(溜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의 다음의 권한(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기관이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을 제외한다)	
		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국유재산법」 제12조
		나. 기부채납	같은 법 제13조
		다.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라.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같은 법 제24조
		마.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같은 법 제29조
		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같은 법 제30조
		사.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같은 법 제35조
		아.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같은 법 제40조
		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같은 법 제8조제3항
		차. 대부	같은 법 제41조, 제46조
		카. 멸실 또는 철거 보고	같은 법 제70조
		타. 관리전환의 결정을 위한 사전협의 및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파.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하.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사실의 통보 거. 청문 너.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더. 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국유재산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수산 정책과	1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른 어업허가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합여부 조사·점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저장 및 출하되기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 시설로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정한 기준에 의한 등록된 시설에 한한다)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6항제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제76조
	3	생산·가공시설의 중지 등(「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6조제2항의 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70조, 제76조
	4	원산지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수산물에 한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5	출입·조사 등(「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위임된 권한에 한한다)	같은 법 제7조
	6	원산지 표시방법의 시정명령	같은 법 제9조, 제13조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2]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예방안전과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중 합관목제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 성능검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방서장
도로과	1	위임국도 관리에 관한 사무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운영 나. 도로공사 및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다.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도로의 유지·관리 명령 및 준공검사 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직접 시행과 공사시행 및 준공 사실의 통지 마. 부대공사의 시행 바.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사.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 명령 아.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자. 진출입로 연결허가 차.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타. 도로대장의 작성·보관 파. 도로관리원의 임명 하.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안전관리 거.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도로법」 제110조제1항, 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30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제32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4호) 같은 법 제3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제3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6호) 같은 법 제34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7호) 같은 법 제35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8호) 같은 법 제37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0호) 같은 법 제52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5호) 같은 법 제5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6호) 같은 법 제54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7호) 같은 법 제55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8호) 같은 법 제56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9호) 같은 법 제57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0호) 같은 법 제61조, 제62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2호) 같은 법 제65조	도로관리사업 소장 및 각 지소장

소관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너.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3호) 같은 법 제66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4호)	
		더. 점용료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69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5호)	
		러.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같은 법 제70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5호)	
		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통보	같은 법 제71 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6호)	
		버.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7호)	
		서. 원상회복의 명령	같은 법 제7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8호)	
		어. 도로의 통행 금지·제한 명령	같은 법 제76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9호)	
		저. 차량의 운행 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같은 법 제77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0호)	
		처.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명령	같은 법 제80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1호)	
		커.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같은 법 제82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2호)	
		터.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수용 등	같은 법 제8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3호)	
		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9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4호)	
		허.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0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5호)	
		고. 원인자 및 공공단체 또는 사인 등에 대한 비용의 부과·징수 및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관리·과기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6호)	
		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같은 법 제96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7호)	
		도.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97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8호)	
		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0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9호)	
		모.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0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40호)	
		보.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같은 법 제106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41호)	

소관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17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42호)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3]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정책과	1	대기폐수배출사업장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다.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표시판 설치 라. 사업장 등의 출입·검사 마. 자료제출 요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2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등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시설가동상태 점검 및 오염도 검사명령,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적합여부 조사 라. 오염물질의 회석처리에 관한 인정 마.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바.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 확인 및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오염도검사의뢰 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아.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자.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차.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카.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타.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등 파. 기준이내 배출량 조정에 따른 자료 제출요청 및 오염도 검사의뢰 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 거. 과징금의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내지 제3항 같은 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소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너.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더. 행정처분 명령의 이행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 지시·의뢰 러.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7조제1항
	3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기타수질오염원 발생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개선명령·조업정지·폐쇄명령 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72조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나.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보고명령 및 검사 라. 조치명령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제6항 같은 법 제38조제3항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대기·폐수 1~5 종 사업장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만 해당된다)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제49조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조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17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행정여건의 변화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일부 사무의 수정을 통해 현실적 행정처리에 적합하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 가. 복무, 재산 및 채권 관리 업무 5개 사무 수정
-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048
- e-mail : skt321@korea.kr

강원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공 통 사 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도지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본부장	부지사		
합 계	263	22	108	94	28	11	
1.정원조정 요구	1. 실·국·본부내 과(담당관)별 5급이하 정원조정 요구 2. 실·국·본부내 정원조정 방침 결정·요구 가. 정원 증원요구 나. 직급 상향조정 요구 다. 직급·직렬 간 상계조정 요구			○			자치행정 과장
2. 공무직 정원 관리	1.공무직 정원책정(신규) 요구 2.공무직 정원보전 요구		○	○			
3.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1.실·국·본부간 사무분쟁 2.실·과간 사무분쟁 3.실·과내 사무분쟁			○	○		
4. 직제에 관한 사항	1. 직제개정 요구 가. 실·국·본부 간 직제개정 요구 나. 실·국·본부 내 직제개정 요구			○	○		자치행정 과장
5. 복 무	1. 출장 허가 및 근무상황 관리 가. 3급이상 실·국·본부장 (단, 부지사의 경우 도지사가 결재) 나. 4급 다. 5급이하 (단, 외출·조퇴·지각·육아시간은 팀장 전결) 2.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가. 3급이상 나. 4급이하 3. 5급이하 특근명령(승인) 4. 소속직원의 당직변경	○	○	○	○		예산과장, 총무과장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도지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본부장	부지사		
	11. 준공검사원의 지정 12. 공사 하자보수 명령 13.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수속 및 소유권 이전허가 14. 설계변경 보고서 가. 중요사항 나. 그 밖에 사항 15. 공사현장 보고서 가. 중요사항 나. 그 밖에 사항 16. 공사의 설계변경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다. 모든 건설공사의 일반 설계사항의 변경 라. 모든 건설공사의 단순한 수량 증감 등 경미한 사항 변경		○ ○	○			
12. 설계·공사 감리용역	1. 주요사업의 기본방침 및 변경 2. 용역집행 가. 건당 1억원이상 나. 건당 1억원미만 3. 용역착공 명령 4. 용역감독자 또는 업무 담당자 지정 5. 용역기간의 연기결정 가. 1건당 1억원이상 나. 1건당 1억원미만 6. 용역의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 7. 용역의 준공검사 가. 건당 1억원이상				○		예산과장, 회계과장, 계약팀장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				도지 사	협조
		권자	팀장	과장	실·국· 본부장		
	나. 건당 1억원미만 8. 용역의 설계변경 가. 1건당 1억원이상으로서 기본설계 사항의 변경 나. 1건당 1억원미만으로서 기본설계사항의 변경 다. 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9. 책임감리용역 운영 가. 감리용역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나. 감리용역비 기성 확정 다. 감리원 근무실태 점검 등 복무단속 라. 감리단 이력승인 마.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방침) 바.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결정			○			
13. 물건의 제조·구매· 임대차 및 그 밖에 품의	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물품제조 및 용역 가. 건당 20억원 이하 나. 건당 10억원 이하 다. 건당 2억원 이하 3. 물품구매·임대차 등 가. 건당 20억원 이하 나. 건당 10억원 이하 다. 건당 2억원 이하				○		예산과장, 회계과장, 계약팀장
14. 재산 및 채권관리	1. 재산취득, 처분, 교환 등의 기본방침 결정 가. 일반재산취득·처분 및 교환 (1) 중요재산(재산가격 건당 20억 원 이상)의 취득, 처분 및 교환 등					○	예산과장, 재산정책 과장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도지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본부장	부지사		
	(2) 건당 5,000㎡ 이상 (3) 건당1,650㎡ 이상 5,000㎡ 미만 (4) 건당 1,650㎡ 미만 나. 법령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다. 재산 대부와 사용허가 (단. 대부료·사용료 5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2.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가격 결정 3.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계약 체결 (단, 재산가액 5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4.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대부 등의 감정 및 가격사정 의뢰 5. 부동산 전임대 보증금 채권 (계약 후 임대보증금 지급전 보증금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서면협조) 가. 건당 1억원 이상 나. 건당 1억원 미만 6. 민간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전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 서면협조) 가. 1억원 이상 나. 1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	예산과장, 재산정책과장	
			○			예산과장, 재산정책과장	
			○			재산정책과장	
			○			재산정책과장	
				○		세정과장	
			○			세정과장	
1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1.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 기준 결정 2. 분담금 및 청산금 결정 3. 분담금 감액 결정 4.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결정 가. 지급계획 (1) 민간			○		회계과장	
				○		예산과장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도지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본부장	부지사		
	(2) 시군 나. 경미한 계획변경 (단, 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다. 지급결정 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			○ ○ ○			
16. 보상	1. 보상업무 계획 2. 보상금 지급결정 가. 1억원이상 나. 1억원미만 3. 지장물이전 보상금 집행 4. 보상금 재심결정 5. 보상금 재감정 결정 6. 보상금 재결신청 7. 보상금 사건확인 8. 보상금 지급			○ ○ ○ ○ ○ ○ ○ ○			
17. 수수료 및 사용료	1. 제 수수료 지출 가. 건당 1,000만원이상 나. 건당 1,000만원미만 2. 수임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결정			○ ○			
18.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사항	1.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의무적 경비의 집행 품의 2. 공공요금 재조정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리		○ ○				
19. 상훈 및 과업 포상금	1. 기존방침에 의한 표창내신 2. 특별표창 계획수립 3. 업무 등의 평가결과에 따른 실·국내 과업 포상금 결정 및 지급		○	○		총무과장	
20. 의회업무	1. 도의회 부의안건 방침결정 가. 예산안, 동의안 등 (1) 중요사항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도지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본부장	부지사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2. 도의원 요구자료 제출 3.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4.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5. 국정감사 결과 처리			○ ○ ○ ○	○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21. 행정심판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보충서면 등 제출		○				
22. 민사, 행정 등 소송	1. 응소·제소·상소·청구·인락·소취하·구상권 행사· 추심 결정 등 소송관련 방침결정 가. 중요 소송 나. 일반 소송 다. 집행정지 2. 소송수행 가. 소송대리인 선임 의뢰 나.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다. 그 밖에 쟁송관계 자료제출			○ ○ ○ ○ ○ ○	○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23. 법규(법령·조례·규칙) 입법(제정·개정·폐지), 법령해석 및 고시·공고 등	1. 법령정비 건의 2. 자치법규 입법안 기본방침 결정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나. 조례·규칙의 개정(중요한 사항) 다. 조례·규칙의 개정(경미한 사항) 라.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 ○	○ ○ ○	○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 권자				도지 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 본부장	부지 사		
	(2) 경미한 사항 3. 자치법규 입법안 입법예고 심사의뢰 4.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뢰 5. 자치법규 입법안 확정방침 결정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나. 조례·규칙의 개정 다.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자치법규 입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7. 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에 대한 재의 또는 공포 여부 결정 가. 의원발의 조례안(공포시) (1) 조례 제정안 (2) 조례 개정안 1) 중요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나. 재의 요구를 하는 경우 다. 중요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도지사 발의 조례 안) 라. 경미한 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 (도지사 발의 조례안) 8. 법령해석 질의 및 자치법규 해석 응답 9. 고시·공고문의 결정 10. 시군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 지시의 결정 가.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 나. 제소 지시를 결정하는 경우			○			정책기획 관
						○	
			○				정책기획 관
			○				정책기획 관
			○				정책기획 관
				○			
24. 자료제출	1. 관계자 소환서류 제출 및 요구 2.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른 자료의 제출(청내, 왕복문서) 3. 그 밖에 경미한 자료제출		○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 권자				도지 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 본부장	부지 사		
	4. 소관업무의 통계제출 5. 정기보고 6. 수리치 못한 문서의 이송 또는 반송 7. 하부기관 및 타과로부터 보고나 응신을 요구하는 문서 (1회 보고 승인) 8. 산하 사업소의 경미한 사항 자료 제출 및 조사지시		○ ○ ○ ○ ○				
25.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에 관한 방침 가. 위원장이 도지사인 경우 나. 위원장이 부지사인 경우 다. 위원장이 실·국장인 경우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호선인 경우 등 2. 위원회 개최, 안전상정 및 결과 보고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 ○ ○ ○ ○	○	
26. 회 의	1. 회의소집 가. 시군, 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회의 나. 그 밖의 직원회의			○ ○			
27. 민원서류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나. 경미한 사항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처리진행 상황, 처리결과, 처리기간 연장 등의 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제외)의 종결처리 7. 신고로써 종결되는 사항			○ ○ ○ ○ ○ ○ ○ ○ ○ ○			
28. 지방공기업 지도	1. 지도감독업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 권자				도지 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 본부장	부지 사		
감독	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2. 승인업무 가. 정관변경 승인 나. 사업계획 승인 다. 기구조정 라. 정원조정 마. 임원의 임면승인 바.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29. 사무위임 및 위탁	1. 위임·위탁 방침결정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나. 신규 위탁 및 환수 (1) 중요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위탁의 내용 변경 라. 그 밖에 위탁사항의 변경(위탁범위, 기관변경) 2. 실행계획 수립·집행			○		○	행정국장 자치행정 과장 행정국장
30. 시군 분쟁조정 신청서처리	1. 분쟁조정신청 검토 보고, 요구 및 결정 통지					○	자치행정 과장
31. 정책결정 및 기획	1. 소관 업무별 운영계획 수립·조정			○			
32. 의전행사	1. 도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가. 주요행사 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	○			총무과장
33. 그 밖의 업무	1. 각종 심의회·협의회 등에 부의할 안건 처리 2. 실·국간의 사업협조 3. 소관업무에 관한 시군, 사업소 지도감독 및 소속 기관의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 권자				도지 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 본부장	부지 사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5. 사무인계·인수 가. 부지사간 사무인계인수 나. 국장간 사무인계인수 다. 과장간 사무인계인수 라. 5급간 사무인계인수 마. 직원간 사무인계인수 6. 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면 7.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가. 3급이상 부여자 나. 4급 부여자 다. 5급이하 부여자 8.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의 변경 9.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소인 검열 10. 물품의 반납 11. 물품의 청구와 수리 12. 소속금품 출납명령 13. 각종 간행물의 배부 14. 차량 배차신청 15. 각종 통계 및 정례보고(중앙부처, 타 기관) 16. 소속직원 교육 17. 대부알선 18. 대여장학금 승인 19. 사망조위금 신청		○			○	
34. 의료보험	1. 피보험자 자격관리 가. 자격취득·상실 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다. 그 밖의 자격관리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				도지 사	협조
		권자	팀장	과장	실·국· 본부장		
35. 재난관리대상 시설 지정·해제	1.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2.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			○			
36. 친환경 상품 구매	1. 친환경상품의 구매계획 수립 2.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 집계 3. 물품구매의 친환경상품 구매가능 검토·확인 4. 용역·공사 등 발주시 친환경 상품 적용 가능여부 확인		○	○			
37. 정책실명제 운영	1. 정책실명제 추진 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나. 정책자료집 발간				○		
38. 행정 정보공개(청구처리)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			○			
39. 처리과 기록물 관리	1. 문서접수·배부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조사·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3. 기록물 폐기 4. 기록물 인계·인수		○		○		
40.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1. 자기역량개발계획서 수립 가. 5급(상당) 나. 6급(상당)이하 2. 교육수강신청 가. 5급(상당) 나. 6급(상당)이하 3. 상시학습 실적 인정 가. 5급(상당) 나. 6급(상당)이하 4. 부서주관 교육 실적 등록		○	○	○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조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고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109호

어론천(신평지구)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고시 제2023-316호(2023.9.8.)로 시행계획 수립된 어론천 하천재해예방 공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1. 하천공사의 명칭: 어론천(신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본 과업은 지방하천인 “어론천” 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를 시행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축제 및 보축 : 978m, 교량 5개소, 가교 2개소 등
-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신평리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어론천
-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인제군수(건설과)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
 - 기정: 2023년 9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
 - 변경: 2023년 9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의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편입면적: 39,120.7㎡(기정)
- 편입면적: 35,248.7㎡(변경) ※ 토지조서 참조 (붙임)

7. 실시설계도서: 인제군청 건설과 비치 및 열람가능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총 사업비 8,428백만원(변경없음)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8,428	0	756	1,000	2,940	2,438	1,294	
도비	5,067	-	756	600	2,000	2,303	-	
군비	3,361	-	-	400	940	135	1,294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구분 공종	요율(%)	추진 계획								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	
축제공	10.00%	2.5	2.5	2.5	2.5					10.0
호안공	22.00%		5.0	5.0	5.0	5.0	2.0			22.0
교량공	29.00%		5.0	5.0	5.0	5.0	5.0	4.0		29.0
접속도로공	7%							4.0	3.0	7.0
부대공	32%	4.0	4.0	4.0	4.0	4.0	4.0	4.0	4.0	32.0
계	100%	6.5	16.5	16.5	16.5	14.0	11.0	12.0	7.0	100.0
누 계		6.5	23.0	39.5	56.0	70.0	81.0	93.0	100.0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준공 이후 인제군에서 유지·관리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변경없음): 해당없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자외의 권리자 성명 및 주소
가.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종 류 및내 용	
					당초	변경						
합계		113필지				35,248.7						
1	인제군 신평리	609-3	대	202	-	4.19	국(국방부)					추가
2	인제군 신평리	609-4	대	294	13	98.2	국(국방부)					
3	인제군 신평리	610-2	대	463	36	317	국(국방부)					
4	인제군 신평리	611-1	잡	280	-	-	국(국방부)					편입 제외
5	인제군 신평리	610-1	대	850	-	3.7	국(국방부)					추가
6	인제군 신평리	616-1	잡	1,053	-	32.4	국(국방부)					추가
7	인제군 신평리	616-4	체	309	-	31.1	국(기획재정 부)					추가
8	인제군 신평리	618-11	체	17	-	1.8	국(기획재정 부)					추가
9	인제군 신평리	618-4	천	366	44	100	국(기획재정 부)					
10	인제군 신평리	620-1	천	65,317	7,107	5,895.4	국(국토교통 부)					
11	인제군 신평리	620-4	천	2,038	98.4	101.5	국(국토교통 부)					
12	인제군 신평리	623-3	도	334	85	45.1	유·군	남면 어론리 ○○○				
13	인제군 신평리	623-4	체	309	-	2.7	국(건설교통 부)					추가
14	인제군 신평리	623-5	도	5,076	81.4	4.4	국(건설교통 부)					
15	인제군 신평리	765-1	구	3,468	-	9.1	국(농수산부)					추가
16	인제군 신평리	793-1	체	2,032	1,151	69.5	인제군					
17	인제군 신평리	855	답	506	-	32.6	권·우 외1인	인제읍 인제로 ○○○번길 ○○				추가
18	인제군	855-1	도	185	17	40.6	국(국토교통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종 류 및내 용	
					당초	변경						
	신평리						부)					
19	인제군 신평리	855-2	체	615	-	553.2	국(건설교통 부)					추가
20	인제군 신평리	855-3	천	56	45	56	국(건설교통 부)					
21	인제군 신평리	856-3	체	985	4	875.5	국(건설교통 부)					
22	인제군 신평리	856-4	천	642	469	642	국(건설교통 부)					
23	인제군 신평리	857-5	천	496	-	258.8	국(건설교통 부)					추가
24	인제군 신평리	857-6	천	41	19	2.1	국(건설교통 부)					
25	인제군 신평리	857-2	답	2,134	-	4.9	국(국방부)					추가
26	인제군 어룡리	551	천	367	329.1	1.9	국(건설교통 부)					
	인제군 어룡리	551-1	도	40	11.3	-	국(국토교통 부)					편입 제외
27	인제군 어룡리	589	잡	230	230	133	국(국방부)					
28	인제군 어룡리	591	잡	107	107	107	국(국방부)					
29	인제군 어룡리	603	답	2,362	528.3	587	국(건설교통 부)					
30	인제군 어룡리	676	답	627	316.6	178.4	최○숙	홍천읍 신장대리 ○-○				
31	인제군 어룡리	866	답	600	527.9	176.9	인제군					
32	인제군 어룡리	산356	임	184,12 1	-	-	이○호	서울 성북구 종암동 ○○-○○ ○				편입 제외
33	인제군 어룡리	538-1	도	100	40.6	100	국(건설교통 부)					
34	인제군 어룡리	538-11	도	453	64	136.7	국(건설교통 부)					
35	인제군 어룡리	538-17	도	575	14	13.5	국(건설교통 부)					
36	인제군 어룡리	561-10	도	58	58	58	국(국방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 류 및내 용	
					당초	변경						
37	인제군 어른리	561-16	전	48	46	48	국(국방부)					
38	인제군 어른리	561-17	전	106	-	106	국(국방부)					추가
39	인제군 어른리	561-18	도	4,411	197.6	211.9	국(국방부)					
40	인제군 어른리	561-20	도	186	18.4	11.3	국(국방부)					
41	인제군 어른리	561-3	도	684	-	129.5	국(국방부)					추가
42	인제군 어른리	561-9	잡	40	40	40	국(국방부)					
43	인제군 어른리	563-1	도	218	33	29.7	국(건설교통 부)					
44	인제군 어른리	563-2	제	457	138.5	166.1	국(건설교통 부)					
45	인제군 어른리	563-3	도	684	-	1.7	국(건설교통 부)					추가
46	인제군 어른리	565-6	제	743	216	115.6	국(건설교통 부)					
47	인제군 어른리	573-1	전	155	62	47.8	국(국방부)					
48	인제군 어른리	573-2	도	106	61	64.2	국(국방부)					
49	인제군 어른리	573-3	전	66	66	66	국(국방부)					
50	인제군 어른리	574-1	답	127	29	35.8	국(건설교통 부)					
51	인제군 어른리	574-2	도	188	56	62.9	국(국방부)					
52	인제군 어른리	574-3	답	242	242	242	국(국방부)					
53	인제군 어른리	574-4	답	192	80.9	92.6	국(국방부)					
	인제군 어른리	575-2	도	77	1.3	-	국(국토교통 부)					편입 제외
54	인제군 어른리	576-2	도	506	313.7	173.3	권○일	인천 부병구 일산동 ○○○				
	인제군	576-3	대	3,110	4.4	-	사회복지법인	남면 응봉길				편입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종 류 및내 용	
					당초	변경						
	어촌리						작은공	○○-○○				제외
55	인제군 어촌리	576-4	체	327	230.9	172.9	사회복지법인 작은공	남면 응봉길 ○○-○○				
	인제군 어촌리	577-1	대	2,920	19.8	-	사회복지법인 작은공	남면 응봉길 ○○-○○				편입 제외
56	인제군 어촌리	577-5	답	2,206	-	3.4	권○일	인천 부평구 일신동 ○○○				추가
57	인제군 어촌리	577-10	전	575	-	6	국(국방부)					추가
58	인제군 어촌리	577-11	전	698	124	81.4	국(국방부)					
59	인제군 어촌리	577-12	답	499	173	272.4	국(국방부)					
60	인제군 어촌리	577-13	답	126	102	101.5	국(국방부)					
61	인제군 어촌리	577-16	도	22	-	7.4	국(국방부)					추가
62	인제군 어촌리	588-1	전	1,234	38.4	5.9	박○섭	서울 광진구 자양동 ○○○-○				
63	인제군 어촌리	589-1	도	150	57.9	23.9	국(국토교통 부)					
64	인제군 어촌리	589-2	체	303	43	206	국(건설교통 부)					
65	인제군 어촌리	589-3	천	591	-	24.5	국(건설교통 부)					추가
66	인제군 어촌리	589-4	잡	30	-	20.5	국(국방부)					추가
67	인제군 어촌리	589-6	잡	106	-	12.6	국(국방부)					추가
68	인제군 어촌리	589-7	잡	44	-	1.6	국(국방부)					추가
69	인제군 어촌리	589-8	도	6	-	6	국(기획재정 부)					추가
70	인제군 어촌리	589-9	도	18	-	3.7	국(기획재정 부)					추가
71	인제군 어촌리	591-1	구	29	25.3	12.9	국(농림수산 부)					
72	인제군 어촌리	591-5	체	295	107.2	252.7	국(건설교통 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종 류 및내 용	
					당초	변경						
73	인제군 어룡리	591-7	잡	1,133	-	271.8	국(국방부)					추가
74	인제군 어룡리	591-13	구	61	-	11.1	국(농림수산 부)					추가
75	인제군 어룡리	594	전	1,933	-	300.1	강○해	인제군 북면 원통로 ○○○○				추가
76	인제군 어룡리	602-12	답	980	157	117.5	국(국방부)					
77	인제군 어룡리	602-7	제	745	228.7	468.1	국(국방부)					
78	인제군 어룡리	602-8	천	414	10.2	65	국(국방부)					
79	인제군 어룡리	602-9	답	193	-	61.5	국(국방부)					추가
80	인제군 어룡리	604-1	도	160	58.9	154	국(건설교통 부)					
81	인제군 어룡리	604-6	도	164	-	32.7	국(건설교통 부)					추가
82	인제군 어룡리	605-1	도	33	21	33	국(건설교통 부)					
83	인제군 어룡리	605-2	도	89	-	11.3	국(국토교통 부)					추가
84	인제군 어룡리	612-4	도	1,900	-	10.8	국(농수산부)					추가
85	인제군 어룡리	622-1	도	119	18	106.3	국(건설교통 부)					
86	인제군 어룡리	622-2	도	46	-	42.9	박○인	남면 부평리 ○○○				추가
87	인제군 어룡리	622-5	도	967	-	48.5	유○철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길○○				추가
88	인제군 어룡리	622-8	도	78	-	76.5	국(국토교통 부)					추가
	인제군 어룡리	623	주	834	11.8	-	송○창	속초시 중앙로 ○○○				편입 제외
	인제군 어룡리	623-1	도	29	22.6	-	국(건설교통 부)					편입 제외
89	인제군 어룡리	626-1	도	1,064	356.7	69.6	국(국토교통 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종 류 및내 용	
					당초	변경						
90	인제군 어룡리	626-10	도	57	14	53.2	국(국토교통 부)					
91	인제군 어룡리	626-11	도	280	149.7	228.8	국(국토교통 부)					
	인제군 어룡리	627-1	대	7	3.8	-	김○영	춘천면 요성당리 ○○-○				편입 제외
92	인제군 어룡리	627-2	도	160	44.6	75.8	김○영	춘천면 요성당리 ○○-○				
93	인제군 어룡리	628-7	도	202	13.7	21.2	국(국토해양 부)					
94	인제군 어룡리	662-5	구	140	-	2.5	국(농림수산 부)					추가
95	인제군 어룡리	676-3	도	1,538	705	514.4	국(농수산부)					
96	인제군 어룡리	676-4	체	626	287.1	337.4	국(건설교통 부)					
97	인제군 어룡리	676-5	천	589	13.5	174.6	국(건설교통 부)					
	인제군 어룡리	709-5	구	1,373	18	-	국(농수산부)					공사 제외
	인제군 어룡리	733-5	체	1,015	27	-	국(건설교통 부)					공사 제외
	인제군 어룡리	734-2	주	1,222	5.3	-	배○호	남면 신남로 ○○번길 ○-○				공사 제외
	인제군 어룡리	738-8	도	666	110.8	-	국(국토교통 부)					공사 제외
	인제군 어룡리	867-16	천	1,431	154	-	국(건설교통 부)					공사 제외
98	인제군 어룡리	827-1	답	547	473	153	인제군					
99	인제군 어룡리	828	잡	244	40	0.9	인제군					
	인제군 어룡리	863-3	도	775	137	-	국(국토교통 부)					공사 제외
	인제군 어룡리	866-1	도	135	89.7	-	국(국토교통 부)					공사 제외
	인제군 어룡리	866-2	도	2,015	521.6	-	국(건설교통 부)					공사 제외
100	인제군	867	전	2,861	-	53.2	조○길	○○○				추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종 류 및내 용	
					당초	변경						
	어론리											
101	인제군 어론리	867-1	천	188,883	17,495	15,937.7	국(건설교통부)					
102	인제군 어론리	867-10	체	5	-	5	조○길	○○○				추가
	인제군 어론리	867-17	체	820	198.2	-	국(건설교통부)					공사 제외
103	인제군 어론리	867-11	체	2,124	139.1	668.9	국(건설교통부)					
104	인제군 어론리	867-25	도	1,147	530.5	461.1	국(건설교통부)					
105	인제군 어론리	867-26	도	313	197	18.9	국(건설교통부)					
106	인제군 어론리	867-27	도	305	158	40.2	국(건설교통부)					
107	인제군 어론리	867-3	도	373	363	59.7	국(건설교통부)					
108	인제군 어론리	867-5	체	547	54.1	18.8	국(건설교통부)					
109	인제군 어론리	868-1	체	639	-	639	이○호	서울 성북구 중암동○○-○○ ○				추가
	인제군 어론리	871	대	2,268	359	-	고○식	○○○				편입 제외
	인제군 어론리	871-2	답	34	8	-	조○길	○○○				편입 제외
	인제군 어론리	879	전	263	58	-	유○철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길○○				편입 제외
	인제군 어론리	879-2	전	312	69	-	고○식	○○○				편입 제외
110	인제군 어론리	산255-2	도	1,281	398	348.4	국(산림청)					
111	인제군 어론리	561-8	도	69	-	13	국(국방부)					추가
112	인제군 어론리	604-2	도	436	-	6.9	국(건설교통부)					추가
113	인제군 어론리	622-3	도	66	-	1.5	국(건설교통부)					추가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해당없음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천)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나.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시행자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다.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변경)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위치	사업면적 또는 규모	사업기간(변경)
어론천(신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인제군 남면 어론리 ~ 신평리 일원	- 규 모: 하천정비 L=3.74km - 면 적: A=39,120.7㎡(기정) 면 적: A=35,248.7㎡(변경)	기정: 시행계획 고시일 ~2025. 12. 31. 변경: 시행계획 고시일 ~2026. 12. 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인제군수(건설과)
- 주 소: 인제군 입제읍 인제로 187번길 8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하천공사 시행계획 편입조서로 같음함)

4)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3. 기타사항

- 설계도서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 등은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제군 건설과(033-460-2095)에 비치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110호

치유의 숲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치유의 숲 조성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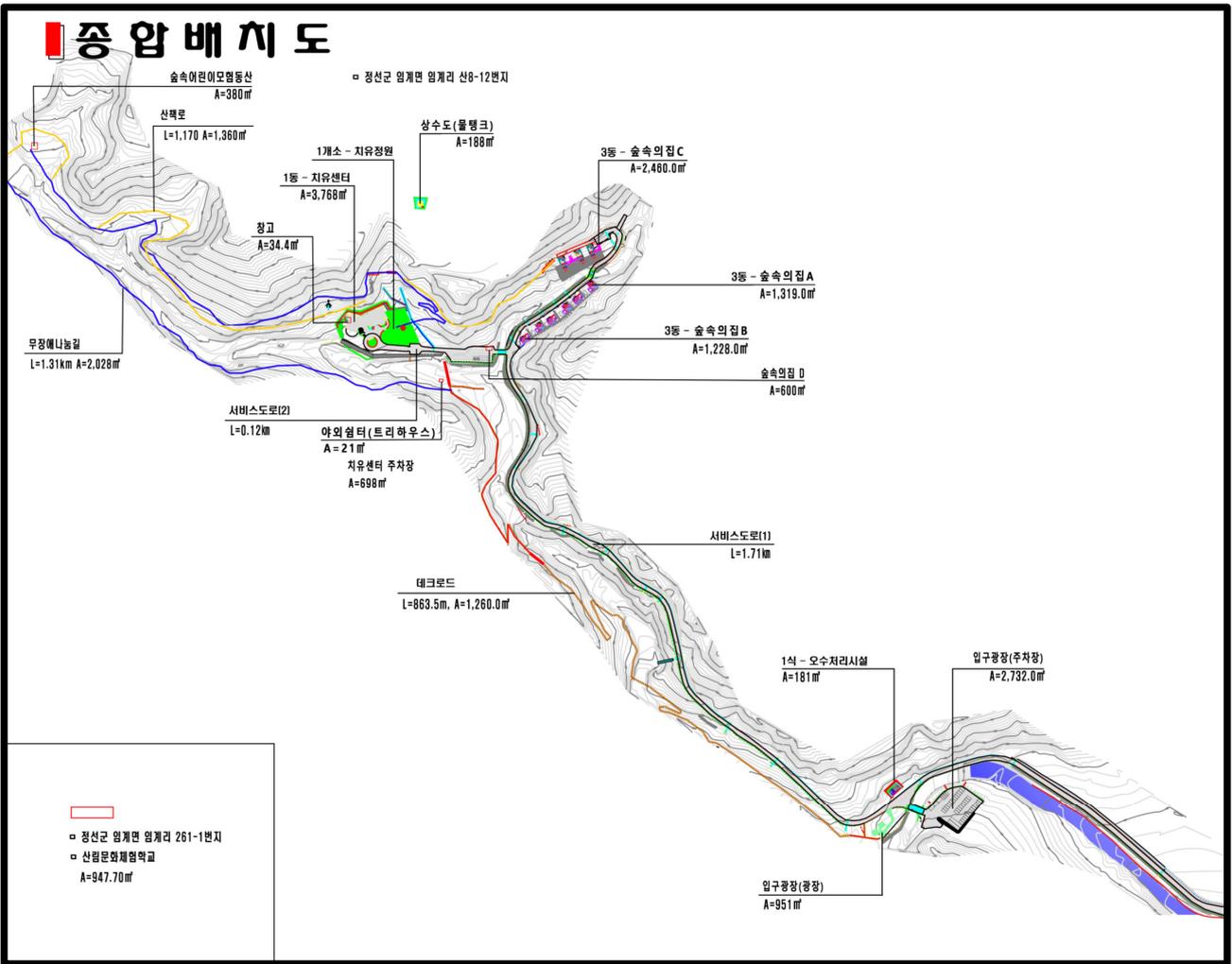
- 1. 명 칭 : 백두대간 산림치유센터 치유의 숲
- 2.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8-12번지 외 3필지
- 3. 면 적 : 4,346,345㎡
- 4. 조성기간 : 2010년 ~ 2014년(5년간) / 2015. 7. 10. 개장
- 5. 승인일자 : 2025. 3. 21.
- 6. 시설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시설계획

시 설 명	규 모	단 위	수 량			비 고
			기승인	금회변경	증 감	
합 계			17종	18종	1종	
○ 산림치유시설			9종	10종	1종	
- 치유센터	828.07㎡	동	1	1		
- 숲속의집 A	41.04㎡	동	3	3		
- 숲속의집 B	41.82㎡	동	3	3		
- 숲속의집 C	78.90㎡	동	3	3		
- 숲속의집 D	31.05㎡	동	2	2		
- 산림문화체험학교	947.7㎡	동	8	8		
- 산책로	B=1.5	m	2,165	1,170	△995	
- 무장애나눔길	W=1.5	m	-	1,312	증1,312	

시 설 명	규 모	단 위	수 량			비 고
			기승인	금회변경	증 감	
- 테크로드	B=1.8	m	863.5	863.5		
- 숲속어린이 모험동산	380㎡	식	1	1		
○ 편익시설			6종	6종		
- 솔내음관(관리사)	701.74㎡	동	1	1		
- 서비스도로	B=5.0~3.0	km	1.83	1.83		
- 입구광장	3,683㎡	개소	1	1		
- 치유센터주차장	698.0㎡	개소	1	1		
- 야외쉼터	21.42㎡	개소	1	1		
- 창고	34.4㎡	개소	1	1		
○ 위생시설			2종	2종		
- 오수처리시설	100톤	개소	1	1		
- 상수도(물탱크)	150톤	개소	1	1		

연도별 투자계획

사 업 비	총 계	11,525백만원
	- 2011~2021년	10,300백만원
	- 2022년~	1,225백만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117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춘천 만천천 양지교) 고시

하천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하천공사의 명칭		도시계획도로(중로1-121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교량(양지교) 재가설
점 용 자 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주)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민관식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공 사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779-3번지 외 9필지(No.1+662)
공사의 목적 및 사유		도시계획도로(중로1-121호선) 교량(양지교) 재가설
공 사 기 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7월 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조 서

- 양지교(중로1-12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계	하천 구역내	하천 구역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만천리	779-3	도로	344	61	61		춘천시					
2	만천리	779-11	하천	162	17	17		강원도					
3	만천리	794-2	도로	73	31	-	31		춘천시				
4	만천리	794-3	도로	106	5	-	5		춘천시				
5	만천리	796-1	도로	485	186	-	186		춘천시				
6	만천리	796-2	답	69	59	59	-		춘천시				
7	만천리	905	하천	71,408	205	205	-		국(국토교통부)				
8	만천리	907-1	도로	144	15	9	6		국(국토교통부)				
9	만천리	907-2	도로	290	45	-	45		국(국토교통부)				
10	만천리	907-3	구거	38	38	38	-		국(국토교통부)				
11	만천리	908-7	도로	837	35	35	-		국(국토교통부)				
12	후평동	120-3	답	919	93	93	-		춘천시				
13	후평동	180-27	구거	2,502	176	176	-		국(국토교통부)				
14	후평동	186-20	도로	150	22	7	15		춘천시				
계				77,527	988	700	288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487호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자치·행정분야)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선정결과 : 6개 사업, 60,000천 원

(단위 : 천 원)

연번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액
합 계			60,000
1	강원국학원	‘한국인이 한국인 답게’ 희망! 대한민국 “무궁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10,000
2	(사)너브내행복나눔재단	공간을 변화시키는 나눔봉사단	10,000
3	원주여성민우회	쉽GO 친근하GO 놀이로 알아가는 인권!	10,000
4	강원특별자치도 의정회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보 제작	10,000
5	산울림예술공연단	2025 행복한 강원 만들기 힐링콘서트	10,000
6	사단법인 원주YWCA	2025 강원 人의 실천, 살기좋은 특별자치시대!	10,000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489호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위원회 개요

- 위원회명: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 기 능: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 위원구성: 위촉직 위원, 당연직 위원 포함하여 20명 이내에서 구성
- 임 기: 위촉일로 부터 2년

2. 신청기간: 2025. 3. 21. ~ 4. 4.(15일 간)

3.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물류정책, 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 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
 - 관할 및 인접 시·군의 시장·군수

4. 선정기준

- 위원회 고유 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 우선 선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성별 10분에 6 범위내 선정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청년 10분에 1 이상 선정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위촉하는 위원회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불가하고, 동일 위원회에 2회까지 연 임 가능
- 전문분야, 소속기관, 연령, 성별 등 고려하여 선정

5.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 수 처: 춘천시 중앙로1 강원특별자치도청 교통과(문의 : ☎033-249-3627)
- 접수방법: 붙임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e-mail(hurhoy@korea.kr), 우편 또는 FAX (033-249-4123)로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촉위원 신청서(추천서)

1. 성 명	(한자)	생년월일			
2. 자택주소	(우편번호)				
3.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	팩스:	
	e-mail 주소				
4. 직장현황	주소 : (우편번호)				
	직장명 :		부 서 명 :		
	직위 :	직급 :	담당업무 :		
5. 직 업 군	유관기관·공단·연구원(), 대학(), 공무원(), 전문가(), 기타()				
6.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7. 학력현황	학위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8. 전공분야					
9. 경력현황	근무기간(시작~종료)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
10. 주요저서 및 논문	제출년월	출판사·관련학회	논문명	논문 주요내용	
11. 타위원회 참여현황	소속기관	위원회명	기간	전문분야	
			~		
			~		
12. 금융기관 계좌번호	(0000은행 :)				

상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신청인(추천인)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지사 귀하

신청서(추천서) 작성시 유의사항

추천서 작성

1. 성명 ~ 4. 직장현황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5. 직업군은 해당 군에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학력현황은 최종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전공분야는 자신의 전공학과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9. 경력현황은 상기 “8항”의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주요저서 및 논문현황은 최근 10년간 발표한 주요 저서 및 논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1. 타위원회 참여현황은 현재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2.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본인 소유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3. 상기 각 “항”에 대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 추가용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신청서 제출

1. 작성한 신청서는 2025. 4. 4.(금)까지 팩스, 우편,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 24266) 춘천시 중앙로 1(강원특별자치도청) 교통과 교통복지팀
 - 팩스 : 033-249-4123 (E-mail : hurhoy@korea.kr)
2.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기관 및 단체추천서, 자격증 사본 등)를 스캔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3. 신청서(추천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선정)을 위한 자료에만 활용합니다.
4. 기타사항은 교통과 교통복지팀 허호영(☎ 033-249-36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492호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1. 공고기간/게시장소 : 2025.3.20.(목) ~ 2025.4.3.(목) / 강원도보 및 도 홈페이지
- 2. 청문대상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대상업종	공고내용	요청근거
(주)강원씨엔디 (안경덕)	속초시 엑스포로 135-6(교동)	건축공사업 (02-1997)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의2호 위반

3. 청문일정

- 가. 일시 : 2025.4.17.(목) 14:00~14:30
- 나.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청문장(본관 4층)
- 다. 청문주재자 : 김형석 변호사
- 라. 의견서제출 : 2025.4.7.(월)까지

4. 안내사항

가. 귀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참 석 자 :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자)
- 2)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 신분증, 위임장(대표자 불참 시)

나. 귀사께서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귀사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지역도시과 건설산업팀(033-249-2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494호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대상업체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대상업종	공고내용	요청근거
㈜진현종합건설 (강성현)	춘천시 효평길 22 1층(효자동)	건축공사업 (02-1515)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동우건설(주) (김종선)	춘천시 동산면 원무동길 303-28 1층	건축공사업 (01-4597)		
㈜반곡토건 (전창식)	원주시 반곡길 152, 2층(반곡동)	건축공사업 (11-0335)		
㈜성지종합건설 (채두석)	원주시 양지로 58 코아루시티 2층 10호(반곡동)	건축공사업 (05-0855)		
도경종합건설(주) (이동수)	원주시 시청로 3, 106호(무실동)	건축공사업 (11-0730)		
에이치제이엔 종합건설(주) (이준호)	원주시 만대로 21-1 매머드시티1차 6층 601호 (무실동)	건축공사업 (05-0965)		
(주)지노종합건설 (지호식)	영월군 상동읍 구래로 59	건축공사업 (11-0499)		
종합건설해화(주) (이석희)	원주시 중평길 69-11 (평원동)	토목공사업 (15-0575) 건축공사업 (13-0502)		
유니크건설(주) (배용운)	동해시 전천로 60 202호(이도동)	건축공사업 (14-0932)		
가림종합건설(주) (윤정무)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로 41	토목건축공사업 (10-0516)		
㈜에목종합건설 (강현덕)	횡성군 우천면 수남로266번길 25	건축공사업 (01-1229)		

2. 공고기간 : 2025. 3. 21. ~ 2025. 4. 4.

3. 공고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오니 대상업체는 소명자료를 2025. 4. 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지역도시과(☎033-249-2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49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중 교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1. 등록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5-3호
- 2. 모 집 자 : 북평면체육축제위원회
- 3. 사무소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오대천로 62-16
- 4. 모집목적 : 2025년 정선로컬푸드축제 보존 및 계승발전 도모
- 5. 모집지역 : 전국
- 6. 모집기간 : 2025. 3. 24. ~ 2026. 6. 30. ※ 사용기한 : 2025. 6. 30.
- 7.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 8. 모집목표액 : 15,000,000원
- 9. 모집방법 : 지정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및 접수처
- 10. 모집비용 : 0원
- 11.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및 사무실 보관
- 12. 모집상황 공개 홈페이지 : 1365기부포털(기부모집활동)

시 군 행정

춘천시 고시 제2025-170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강원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강원대학교)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3월 28일

춘 천 시 장

가. 결정(변경) 취지

강원대학교 내 시설 사업계획 반영(공용차고지, 장애인 엘리베이터, 의학대학 신축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강원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1178번지 일원

다.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1	대학교	강원대학교	춘천시 강원대학길 1번지	889,343.7	증)402.9	889,746.6	건고 제1985-475호 (1985. 11. 2.)	

※ 직전 고시(기정): 강원도고시 제2024-128호(2024.3.22.)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1	대학교	◦ 면적변경 - A = 889,343.7㎡ → 889,746.6㎡ (증 402.9㎡)	◦ 공용차고지(공용차고지-2, 차고창고동) 신축에 따른 면적증가

라.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89,343.7	증)402.9	889,746.6	183,251.557	증)3,650.000	186,901.557	714,430.926	증)24,080.000	738,510.926
교육기본시설	271,748.0	증)2,480.0	274,228.0	87,654.204	증)1,350.000	89,004.204	325,978.164	증)16,700.000	342,678.164
지원시설	107,537.0	감)288	107,249.0	34,405.100	증)300.000	34,705.100	134,446.520	증)900.000	135,346.520
연구시설	22,234.0	증)4,881	27,115.0	7,382.850	증)1,100.000	8,482.850	27,555.355	증)5,500.000	33,055.355
특수시설	10,673.0	-	10,673.0	3,800.653	증)80.000	3,880.653	15,443.777	증)160.000	15,603.777
부속시설	25,343.0	-	25,343.0	6,117.910	-	6,117.910	7,199.410	-	7,199.410
기타시설	103,244.1 1	감)3,212	100,032.11	13,152.840	증)820.000	13,972.840	30,899.700	증)820.000	31,719.700
도로	79,117.0	-	79,117.0	-	-	-	-	-	-
녹지	203,032.9 9	감)3,458.1	199,574.89	-	-	-	-	-	-
도시첨단산업단지	66,414.6	-	66,414.6	30,738.000	-	30,738.000	172,908.000	-	172,908.000

2)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층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89,343.7 00	증)402.9	889,746.6	183,251.55 7	증)3,650. 000	186,901.55 7	714,430.92 6	증)24.08 0.000	738,510.92 6	-	-	-	
교육기본시설	소계	271,748	증)2,480	274,228	87,654.204	증)1,350. 000	89,004.204	325,978.16 4	증)16,70 0.000	342,678.16 4	-	-	-
	경영1호관 (경영대)	3,584	-	3,584	1,054.620	-	1,054.620	4,570.020	-	4,570.02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경영2호관 (경영대)	3,627	-	3,627	839.020	-	839.020	3,472.800	-	3,472.80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공학1호관 (공과대)	4,847	-	4,847	1,563.620	-	1,563.620	5,259.930	-	5,259.93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공학2호관 (공과대)	5,324	-	5,324	1,240.700	-	1,240.700	5,098.880	-	5,098.88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공학3호관 (공과대)	6,223	-	6,223	1,512.860	-	1,512.860	7,713.340	-	7,713.340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1층 지상5층
	수리모형 실험실	426	-	426	426.000	-	426.000	834.000	-	834.000	지상2층	-	지상2층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층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학4호관 (공과대)	3,153	-	3,153	1,073.900	-	1,073.900	4,633.250	-	4,633.25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농학1호관 (농생대)	3,587	-	3,587	1,421.900	-	1,421.900	4,416.600	-	4,416.60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농학2호관 (농생대)	3,064	-	3,064	1,266.110	-	1,266.110	5,185.310	-	5,185.31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농학3호관 (농생대)	2,045	-	2,045	985.640	-	985.640	4,286.600	-	4,286.60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농업생명 과학대학	4,165	-	4,165	4,000.000	-	4,000.000	15,000.000	-	15,000.000	지하1층 지상7층	-	지하1층 지상7층
영상 바이오관	5,295	-	5,295	1,270.040	-	1,270.040	4,444.000	-	4,444.00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교육1호관 (사범대)	3,741	-	3,741	991.740	-	991.740	3,074.394	-	3,074.394	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 지상3층
교육2호관 (사범대)	2,694	-	2,694	548.800	-	548.800	2,634.010	-	2,634.010	지상5층	-	지상5층
교육3호관 (사범대)	3,362	-	3,362	469.424	-	469.424	928.560	-	928.560	지상2층	-	지상2층
예술1호관 (문화예술대)	3,276	-	3,276	1,321.120	-	1,321.120	2,928.620	-	2,928.620	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 지상3층
교육4호관 (사범대)	5,113	-	5,113	1,772.080	-	1,772.080	6,108.750	-	6,108.75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교육5호관 (사범대)	5,367	-	5,367	2,000.000	-	2,000.000	8,000.000	-	8,000.000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1층 지상5층
인문사회1호관 (인문대)	4,312	-	4,312	966.610	-	966.610	3,475.480	-	3,475.48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인문사회2호관 (인문대)	2,878	-	2,878	973.540	-	973.540	2,674.270	-	2,674.27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인문사회3호관 (인문대)	1,946	-	1,946	800.900	-	800.900	2,951.430	-	2,951.43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자연과학 1호관	4,690	-	4,690	1,190.700	-	1,190.700	5,712.660	-	5,712.660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1층 지상5층
자연과학 2호관	4,297	-	4,297	1,444.820	-	1,444.820	6,947.300	-	6,947.300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1층 지상5층
자연과학 3호관	2,270	-	2,270	870.660	-	870.660	3,399.300	-	3,399.30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자연과학 4호관	2,813	감)209	2,604	823.950	증)50	873.950	3,568.860	증)200	3,768.86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구평생교육원	2,731	-	2,731	636.330	-	636.330	2,011.690	-	2,011.690	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 지상3층
나래관	3,215	-	3,215	1,060.000	-	1,060.000	2,504.000	-	2,504.000	지하1층 지상2층	-	지하1층 지상2층

교육
기
본
시
설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층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중앙도서관	8,682	-	8,682	2,646.000	-	2,646.000	11,446.400	-	11,446.400	지상5층	-	지상5층
미래도서관	6,444	-	6,444	4,000.000	-	4,000.000	14,000.000	-	14,000.000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1층 지상5층
제1학생회관 (천지관)	5,042	-	5,042	1,938.000	-	1,938.000	4,818.300	-	4,818.300	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 지상3층
제2학생회관 (백록관)	3,221	-	3,221	1,484.320	-	1,484.320	3,707.620	-	3,707.620	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 지상3층
옥외강의시설(동아리)	2,781	-	2,781	1,619.250	-	1,619.250	3,512.620	-	3,512.620	지하1층 지상2층	-	지하1층 지상2층
동자대 1호관	3,532	-	3,532	1,074.010	-	1,074.010	4,520.540	-	4,520.54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동자대 2호관	5,043	-	5,043	1,387.850	-	1,387.850	6,215.330	-	6,215.330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1층 지상5층
약학관	4,851	-	4,851	1,227.800	-	1,227.800	3,865.680	-	3,865.680	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 지상3층
산림과학대학 2호관	3,732	-	3,732	939.790	-	939.790	4,008.200	-	4,008.20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사회과학대학 1호관	7,549	-	7,549	1,175.460	-	1,175.460	4,919.100	-	4,919.100	지하1층 지상7층	-	지하1층 지상7층
공대 5호관	4,431	-	4,431	1,153.140	-	1,153.140	5,798.210	-	5,798.210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1층 지상5층
공대 6호관	7,066	-	7,066	1,345.850	-	1,345.850	7,229.220	-	7,229.220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1층 지상5층
태백관	2,061	-	2,061	541.600	-	541.600	2,067.370	-	2,067.37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제3학생회관	1,300	-	1,300	1,500.000	-	1,500.000	2,400.000	-	2,400.000	지상2층	-	지상2층
의학1호관 (의대)	7,405	-	7,405	1,605.470	-	1,605.470	6,668.850	-	6,668.850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1층 지상5층
대학본부	4,368	-	4,368	1,032.870	-	1,032.870	5,398.510	-	5,398.510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1층 지상5층
자연대학 5호관	3,027	-	3,027	1,092.480	-	1,092.480	3,446.850	-	3,446.850	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 지상3층
어학교육원	3,808	-	3,808	835.310	-	835.310	3,660.770	-	3,660.77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예술2호관 (문화예술대)	4,245	-	4,245	1,733.640	-	1,733.640	6,147.020	-	6,147.02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산림과학대학 1호관	2,483	-	2,483	1,183.890	-	1,183.890	5,998.510	-	5,998.510	지하1층 지상7층	-	지하1층 지상7층
수의학관 (동물병원)	5,649	-	5,649	1,640.740	-	1,640.740	4,975.500	-	4,975.50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법학관	2,555	-	2,555	1,393.040	-	1,393.040	4,580.620	-	4,580.620	지하1층	-	지하1층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층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지상5층		지상5층	
교육 기 본 시 설	종합강의동	16,928	-	16,928	3,112.760	-	3,112.760	10,273.110	-	10,273.110	지하1층 지상9층	-	지하1층 지상9층	
	의학2호관(의대)	4,510	-	4,510	1,296.530	-	1,296.530	5,478.290	-	5,478.290	지상7층	-	지상7층	
	의생명과학관 (생명건강지역혁신 특성화센터 실험실동)	6,005	-	6,005	2,766.230	-	2,766.230	9,565.960	-	9,565.960	지하1층 지상10 층	-	지하1층 지상10층	
	의생명과학관 (생명건강지역혁신 특성화센터 연구실동)	10,346	-	10,346	1,722.730	-	1,722.730	3,102.170	-	3,102.170	지상3층	-	지상3층	
	사회과학대학 2호관	2,210	-	2,210	626.650	-	626.650	2,032.540	-	2,032.540	지상5층	-	지상5층	
	제2도서관(집현관)	3,666	-	3,666	1,677.450	-	1,677.450	7,374.600	-	7,374.600	지하2층 지상5층	-	지하2층 지상5층	
	법학전문대학원	3,213	-	3,213	838.080	-	838.080	3,284.850	-	3,284.85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청정산업기술 지원센터	8,899	-	8,899	1,838.180	-	1,838.180	11,147.370	-	11,147.370	지하1층 지상12 층	-	지하1층 지상12층	
	글로벌경영관	3,543	-	3,543	2,000.000	-	2,000.000	9,000.000	-	9,000.000	지하1층 지상6층	-	지하1층 지상6층	
	교수회관	6,930	감)6,930	-	3,500.000	감)3,500	-	15,000.000	감)15,000 0	-	지하1층 지상5층	감)지하1층 감)지상5층	-	-
	신평생교육원	6,029	-	6,029	1,500.000	-	1,500.000	3,500.000	-	3,500.000	지상3층	-	지상3층	
	동물실험센터	2,149	-	2,149	1,700.000	-	1,700.000	5,000.000	-	5,000.000	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 지상3층	
	의학3-1호관	-	증)4,220	4,220	-	증)2,000	2,000	-	증)15,000 0	15,000	-	증)지하1층 증)지상8층	지하1층 지상8층	지하1층 지상8층
	의학3-2호관	-	증)4,220	4,220	-	증)2,000	2,000	-	증)15,000 0	15,000	-	증)지하1층 증)지상8층	지하1층 지상8층	지하1층 지상8층
해부실습동	-	증)1,179	1,179	-	증)800	800	-	증)1,500	1,500	-	증)지하1층 증)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지 원 시 설	소계	107,537.0	감)288	107,249.0	34,405.100	증)300	34,705.100	134,446.52 0	증)900	135,346.52 0	-	-	-	
	실사구시관	4,160	-	4,160	1,161.530	증)50	1,211.530	2,126.080	증)100	2,226.080	지하1층 지상2층	-	지하1층 지상2층	
	제1체육관	4,615	-	4,615	2,330.250	-	2,330.250	2,778.310	-	2,778.310	지상2층	-	지상2층	
	기숙사(난지원)	2,647	-	2,647	1,128.840	증)50	1,178.840	2,541.060	증)150	2,691.060	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 지상3층	
	기숙사(국지원)	2,909	-	2,909	723.740	증)50	773.740	2,550.480	증)150	2,700.480	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 지상3층	
	남자기숙사 식당동	3,681	-	3,681	1,136.620	-	1,136.620	2,295.620	-	2,295.620	지하1층 지상1층	-	지하1층 지상1층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층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숙사(울곡관)	1,920	-	1,920	939.600	증)50	989.600	3,686.400	증)200	3,886.400	지상4층	-	지상4층
기숙사(퇴계관)	2,664	감)288	2,376	939.600	증)50	989.600	3,686.400	증)200	3,886.400	지상4층	-	지상4층
백령문화관	7,560	-	7,560	3,769.890	증)50	3,819.890	6,224.900	증)100	6,324.900	지하1층 지상2층	-	지하1층 지상2층
미래관	2,997	-	2,997	1,423.880	-	1,423.880	7,991.310	-	7,991.310	지하1층 지상8층	-	지하1층 지상8층
향토학사A동 (다산관)	3,936	-	3,936	862.500	-	862.500	3,266.100	-	3,266.10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향토학사B동 (예지원)	1,406	-	1,406	774.900	-	774.900	3,314.700	-	3,314.700	지상5층	-	지상5층
기숙사(새림관)	24,237	-	24,237	5,067.430	-	5,067.430	32,979.320	-	32,979.320	지하1층 지상15층	-	지하1층 지상15층
기숙사(이룸관)	13,900	-	13,900	3,000.000	-	3,000.000	19,000.000	-	19,000.000	지하1층 지상14층	-	지하1층 지상14층
BTL생활관(3차)	9,530	-	9,530	4,000.000	-	4,000.000	20,000.000	-	20,000.000	지하1층 지상14층	-	지하1층 지상14층
건강·스포츠 교육센터	8,433	-	8,433	5,000.000	-	5,000.000	12,000.000	-	12,000.00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부설고생활관	3,758	-	3,758	856.610	-	856.610	4,915.240	-	4,915.240	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 지상3층
직장보육시설	4,287	-	4,287	459.140	-	459.140	537.320	-	537.320	지하1층 지상2층	-	지하1층 지상2층
부설고 인제양성관	4,897	-	4,897	830.570	-	830.570	4,553.280	-	4,553.280	지하1층 지상6층	-	지하1층 지상6층
연 구 시 설	소계	22,234	증)4,881	27,115	7,382.850	증)1,100	8,482.850	27,555.355	증)5,500	33,055.355	-	-
환경연구소	1,036	-	1,036	411.670	-	411.670	893.200	-	893.200	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 지상3층
정보통신연구소 (아산관)	3,296	-	3,296	817.590	-	817.590	3,615.675	-	3,615.675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창강제지기술 연구소	2,446	-	2,446	501.200	-	501.200	1,002.400	-	1,002.400	지상2층	-	지상2층
친환경지류 포장소재센터	570	-	570	500.000	-	500.000	3,000.000	-	3,000.000	지상2층	-	지상2층
석재복합연구소	1,431	-	1,431	361.940	-	361.940	1,810.000	-	1,810.000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1층 지상5층
동생대실험실 (중보관)	1,082	-	1,082	201.450	-	201.450	595.350	-	595.350	지상3층	-	지상3층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4,119	-	4,119	1,089.000	-	1,089.000	4,638.730	-	4,638.730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1층 지상5층
SMART 공장	4,719	-	4,719	2,000.000	-	2,000.000	6,000.000	-	6,000.000	지상3층	-	지상3층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층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특수시설	혁신계약임상연구동	3,535	-	3,535	1,500.000	-	1,500.000	6,000.000	-	6,000.00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반도체공동연구소	-	증)4,881	4,881	-	증)1,100	1,100	-	증)5,500	5,500	-	증)지하1층 증)지상7층	지하1층 지상7층
특수시설	소계	10,673	-	10,673	3,800.653	증)80	3,880.653	15,443.777	증)160	15,603.777	-	-	-
	박물관	4,175	-	4,175	1,050.253	-	1,050.253	3,252.577	-	3,252.577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학군단	2,646	-	2,646	750.400	-	750.400	2,191.200	-	2,191.200	지상3층	-	지상3층
	박물관(메타박물관)	3,852	-	3,852	2,000.000	증)80	2,080.000	10,000.000	증)160	10,160.000	지상5층	-	지상5층
부속시설	소계	25,343	-	25,343	6,117.910	-	6,117.910	7,199.410	-	7,199.410	-	-	-
	공대 부속공장	1,235	-	1,235	288.000	-	288.000	288.000	-	288.000	지상1층	-	지상1층
	서암관	8,144	-	8,144	993.110	-	993.110	1,480.400	-	1,480.400	지상2층	-	지상2층
	자연대학 동물사육실	457	-	457	66.000	-	66.000	66.000	-	66.000	지상1층	-	지상1층
	박편제작실(자연대)	1,370	-	1,370	240.000	-	240.000	240.000	-	240.000	지상1층	-	지상1층
	위험물저장소	130	-	130	130.000	-	130.000	130.000	-	130.000	지상1층	-	지상1층
	농생대 위험물저장소	130	-	130	130.000	-	130.000	130.000	-	130.000	지상1층	-	지상1층
	제1위험물저장소	130	-	130	130.000	-	130.000	130.000	-	130.000	지상1층	-	지상1층
	제2위험물저장소	130	-	130	130.000	-	130.000	130.000	-	130.000	지상1층	-	지상1층
	의학전문대학원 위험물저장소	130	-	130	130.000	-	130.000	130.000	-	130.000	지상1층	-	지상1층
	농업공작실(농생대)	1,495	-	1,495	672.630	-	672.630	864.580	-	864.580	지상2층	-	지상2층
	동자대 사료배합실	1,035	-	1,035	128.000	-	128.000	128.000	-	128.000	지상1층	-	지상1층
	산림대 유리온실	3,884	-	3,884	342.800	-	342.800	342.800	-	342.800	지상1층	-	지상1층
	동자대 동물소각장	415	-	415	136.800	-	136.800	136.800	-	136.800	지상1층	-	지상1층
	축산가공공장 (동자대)	924	-	924	360.000	-	360.000	360.000	-	360.000	지상1층	-	지상1층
	산림공작실(산림대)	2,065	-	2,065	797.700	-	797.700	1,132.700	-	1,132.700	지상2층	-	지상2층
	석재복합연구소 공작실	316	-	316	80.980	-	80.980	148.240	-	148.240	지상2층	-	지상2층
	예술대학 야외조각장	1,358	-	1,358	253.260	-	253.260	253.260	-	253.260	지상1층	-	지상1층
	예술대학 도자기실 창고	55	-	55	49.630	-	49.630	49.630	-	49.630	지상1층	-	지상1층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리사 (동자대)	350	-	350	108.000	-	108.000	108.000	-	108.000	지상1층	-	지상1층
자연대온실 및 소동물사육장	434	-	434	120.000	-	120.000	120.000	-	120.000	지상1층	-	지상1층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층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부속시설	유리온실(농생태)	920	-	920	700.000	-	700.000	700.000	-	700.000	지상1층	-	지상1층
	자연대 장비보관소	85	-	85	80.000	-	80.000	80.000	-	80.000	지상1층	-	지상1층
	자연대 시약보관소	121	-	121	21.000	-	21.000	21.000	-	21.000	지상1층	-	지상1층
	창고	30	-	30	30.000	-	30.000	30.000	-	30.000	지상1층	-	지상1층
소계	103,244.11	감)3,212	100,032.11	13,152.840	증)820	13,972.840	30,899.700	증)820	31,719.700	-	-	-	
기타시설	제1과외플랜트	1,235	-	1,235	600.000	-	600.000	825.000	-	825.000	지상2층	-	지상2층
	제2과외플랜트	1,863	-	1,863	845.600	-	845.600	894.200	-	894.200	지상2층	-	지상2층
	북문수위실(후문)	123	-	123	31.620	-	31.620	31.620	-	31.620	지상1층	-	지상1층
	남문수위실(정문)	142	-	142	27.410	-	27.410	27.410	-	27.410	지상1층	-	지상1층
	주변전실	1,050	-	1,050	518.400	-	518.400	598.800	-	598.800	지상2층	-	지상2층
	제2변전실	2,198	-	2,198	800.000	-	800.000	800.000	-	800.000	지상1층	-	지상1층
	고가수조	530	-	530	-	-	-	-	-	-	-	-	-
	대운동장	24,988	-	24,988	1,982.160	-	1,982.160	2,490.030	-	2,490.030	지상2층	-	지상2층
	소운동장	3,034	-	3,034	-	-	-	-	-	-	-	-	-
	제1테니스장(관리동)	4,649	-	4,649	75.870	-	75.870	75.870	-	75.870	지상1층	-	지상1층
	교수테니스장(관리동)	3,166	-	3,166	60.900	-	60.900	60.900	-	60.900	지상1층	-	지상1층
	미래의 광장	5,238	-	5,238	-	-	-	-	-	-	-	-	-
	연적지	5,546	-	5,546	100.000	-	100.000	100.000	-	100.000	지상1층	-	지상1층
	나래밭	1,953	-	1,953	-	-	-	-	-	-	-	-	-
	목공실	808	-	808	172.530	-	172.530	172.530	-	172.530	지상1층	-	지상1층
	체육시설(농구장)	1,508	-	1,508	-	-	-	-	-	-	-	-	-
	소운동장	9,991	감)9,991	-	-	-	-	-	-	-	-	-	-
	동문수위실	213	-	213	41.450	-	41.450	41.450	-	41.450	지상1층	-	지상1층
	연구단지 수위실	117	-	117	30.000	-	30.000	30.000	-	30.000	지상1층	-	지상1층
	Idea 창업센터	4,337	-	4,337	1,500.000	-	1,500.000	4,500.000	-	4,500.000	지상2층	-	지상2층
	제1컨테이너	55	-	55	55.000	-	55.000	80.000	-	80.000	지상1층	-	지상1층
	제2컨테이너	30	-	30	30.000	-	30.000	60.000	-	60.000	지상1층	-	지상1층
	제3컨테이너	30	-	30	30.000	-	30.000	60.000	-	60.000	지상1층	-	지상1층
Post BI	6,633	-	6,633	4,000.000	-	4,000.000	15,000.000	-	15,000.000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공용차고지	600	-	600	400.000	-	400.000	800.000	-	800.000	지상2층	-	지상2층	
공용차고지-2	-	증)600	600	-	증)600	600.000	-	증)600	600.000	-	증)지상1층	지상1층	
차고창고동	-	증)350	350	-	증)60	60.000	-	증)60	60.000	-	증)지상1층	지상1층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층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타 시설	주차장	341	-	341	-	-	-	-	-	-	-	-	-	
	주차장	500	-	500	-	-	-	-	-	-	-	-	-	
	주차장	864	-	864	-	-	-	-	-	-	-	-	-	
	주차장	2,132	-	2,132	-	-	-	-	-	-	-	-	-	
	주차장	8,487	-	8,487	-	-	-	-	-	-	-	-	-	
	주차장	458	-	458	-	-	-	-	-	-	-	-	-	
	주차장	553	-	553	-	-	-	-	-	-	-	-	-	
기타 시설	주차장	6,524	-	6,524	-	-	-	-	-	-	-	-	-	
	공영주차장	1,658.11	-	1,658.11	1,376.600	-	1,376.600	3,776.590	-	3,776.590	지상3층	-	지상3층	
	휴게시설	1,211.12	-	1,211.12	211.120	-	211.120	211.120	-	211.120	지상1층	-	지상1층	
	전통정자	12.96	-	12.96	12.960	-	12.960	12.960	-	12.960	지상1층	-	지상1층	
	전통정자2	25.92	-	25.92	25.920	-	25.920	25.920	-	25.920	지상1층	-	지상1층	
	커피전문점	130	-	130	105.300	-	105.300	105.300	-	105.300	지상1층	-	지상1층	
	간이매점	120	-	120	120.000	-	120.000	120.000	-	120.000	지상1층	-	지상1층	
	상징조형물	190	-	190	-	-	-	-	-	-	-	-	-	
	스마트팜 옥외화장실	-	증)78	78	-	증)60	60.000	-	증)60	60.000	-	증)지상1층	지상1층	
	테니스장 휴게실	-	증)130	130	-	증)100	100.000	-	증)100	100.000	-	증)지상1층	지상1층	
	체육시설 (테니스장 및 풋살장)	-	증)5,621	5,621	-	-	-	-	-	-	-	-	-	
도 로	79,117	-	79,117	-	-	-	-	-	-	-	-	-		
녹 지	203,032.99	감)3,458.1	199,574.89	-	-	-	-	-	-	-	-	-		
도시첨단산업단지	소계	66,414.6	-	66,414.6	30,738.000	-	30,738.000	172,908.000	-	172,908.000	-	-	-	
	산업시설	27,973.2	-	27,973.2	19,600.000	-	19,600.000	112,000.000	-	112,000.000	지하1층 지상10층	-	지하1층 지상10층	
	복합시설	12,017.5	-	12,017.5	8,418.000	-	8,418.000	48,108.000	-	48,108.000	지하1층 지상10층	-	지하1층 지상10층	
	공공 시설	공원(소1)	5,523.7	-	5,523.7	-	-	-	-	-	-	-	-	-
		녹지(경1)	1,471.3	-	1,471.3	-	-	-	-	-	-	-	-	-
		녹지(경2)	3,963.7	-	3,963.7	-	-	-	-	-	-	-	-	-
		유수지(유1)	1,860.0	-	1,860.0	-	-	-	-	-	-	공원중 복	-	공원중복
		주차장(주1)	3,199.8	-	3,199.8	2,720.000	-	2,720.000	12,800.000	-	12,800.000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1층 지상5층
도로 (중로1-1)	8,073.8	-	8,073.8	-	-	-	-	-	-	-	-	-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층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종료3-1)	4,191.6	-	4,191.6	-	-	-	-	-	-	-	-	-

3)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변경	22	자연과학 4호관	· 부지면적 : 2,813㎡→2,604㎡ 감)209㎡ · 건축면적 : 823.95㎡→873.95㎡ 증)50㎡ · 건축연면적:3,568.86㎡→3,768.86㎡ 증)200㎡	· 구적오차에 따른 부지면적 축소, 장애인 승강기 설치에 따른 건축면적 및 연면적 증가
변경	24	실사구시관	· 건축면적 : 1,161.53㎡→1,211.53㎡ 증)50㎡ · 건축연면적: 2,126.08㎡→2,226.08㎡ 증)100㎡	· 장애인 승강기 설치에 따른 건축면적 및 연면적 증가
변경	30	기숙사 (난지원)	· 건축면적 : 1,128.84㎡→1,178.84㎡ 증)50㎡ · 건축연면적:2,541.06㎡→2,691.06㎡ 증)150㎡	· 장애인 승강기 설치에 따른 건축면적 및 연면적 증가
변경	31	기숙사 (국지원)	· 건축면적 : 723.74㎡→773.74㎡ 증)50㎡ · 건축연면적: 2,550.48㎡→2,700.48㎡ 증)150㎡	· 장애인 승강기 설치에 따른 건축면적 및 연면적 증가
변경	33	기숙사 (울곡관)	· 건축면적 : 939.6㎡→989.6㎡ 증)50㎡ · 건축연면적: 3,686.4㎡→3,886.4㎡ 증)200㎡	· 장애인 승강기 설치에 따른 건축면적 및 연면적 증가
변경	34	기숙사 (퇴계관)	· 부지면적 : 2,664㎡→2,376㎡ 감)288㎡ · 건축면적 : 939.6㎡→989.6㎡ 증)50㎡ · 건축연면적: 3,686.4㎡→3,886.4㎡ 증)200㎡	· 구적오차에 따른 부지면적 축소, 장애인 승강기 설치에 따른 건축면적 및 연면적 증가
폐지	45	교수회관	· 부지면적 : 6,930㎡→0㎡ 감)6,930㎡ · 건축면적 : 3,500㎡→0㎡ 감)3,500㎡ · 건축연면적: 15,000㎡→0 감)15,000㎡ · 높이 : 지하1층, 지상5층→0층, (감)지하1층, 지상5층	· 테니스장 휴게실, 체육시설 (테니스장 및 풋살장) 신설에 따른 교수회관 폐지
변경	47	백령문화관	· 건축면적 : 3,769.89㎡→3,819.89㎡ 증)50㎡ · 건축연면적: 6,224.9㎡→6,324.9㎡ 증)100㎡	· 장애인 승강기 설치에 따른 건축면적 및 연면적 증가
폐지	103	소운동장	· 부지면적 : 9,991㎡→0㎡ 감)9,991㎡	· 의학 3-1,2호관 신설에 따른 소운동장 폐지
변경	151	박물관 (베타박물관)	· 건축면적 : 2,000.00㎡→2,080.00㎡ 증)80㎡ · 건축연면적: 10,000.00㎡→10,160.00㎡ 증)160㎡	· 장애인 승강기 설치에 따른 건축면적 및 연면적 증가
변경		녹지	· 부지면적 : 203,032.99㎡→199,574.89㎡ 감)3,458.1㎡	· 세부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면적 축소
신설	153	스마트팜 옥외화장실	· 부지면적 : 78㎡ · 건축면적 : 60㎡ · 건축연면적: 60㎡ · 높이 : 지상1층	· 스마트팜 옥외화장실 신설
신설	154	테니스장 휴게실	· 부지면적 : 130㎡ · 건축면적 : 100㎡ · 건축연면적: 100㎡ · 높이 : 지상1층	· 테니스장 휴게실 신설
신설	155	해부실습동	· 부지면적 : 1,179㎡ · 건축면적 : 800㎡ · 건축연면적: 1,500㎡ · 높이 : 지하1층, 지상3층	· 의대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건물 신설
신설	156	의학3-1호관	· 부지면적 : 4,220㎡ · 건축면적 : 2,000㎡ · 건축연면적: 15,000㎡ · 높이 : 지하1층, 지상8층	· 의대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건물 신설
신설	157	의학3-2호관	· 부지면적 : 4,220㎡ · 건축면적 : 2,000㎡ · 건축연면적: 15,000㎡ · 높이 : 지하1층, 지상8층	· 의대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건물 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신설	158	반도체 공동연구소	· 부지면적 : 4,881㎡ · 건축면적 : 1,100㎡ · 건축연면적 : 5,500㎡ · 높이 : 지하1층, 지상7층	·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설
신설	159	공용차고지-2	· 부지면적 : 600㎡ · 건축면적 : 600㎡ · 건축연면적 : 600㎡ · 높이 : 지상1층	· 공용차고지 신설
신설	160	차고창고동	· 부지면적 : 350㎡ · 건축면적 : 60㎡ · 건축연면적 : 60㎡ · 높이 : 지상1층	· 차고창고동 신설
신설	161	체육시설 (테니스장 및 풋살장)	· 부지면적 : 5,621㎡	· 체육시설(테니스장 및 풋살장) 신설

마. 세부조성계획 중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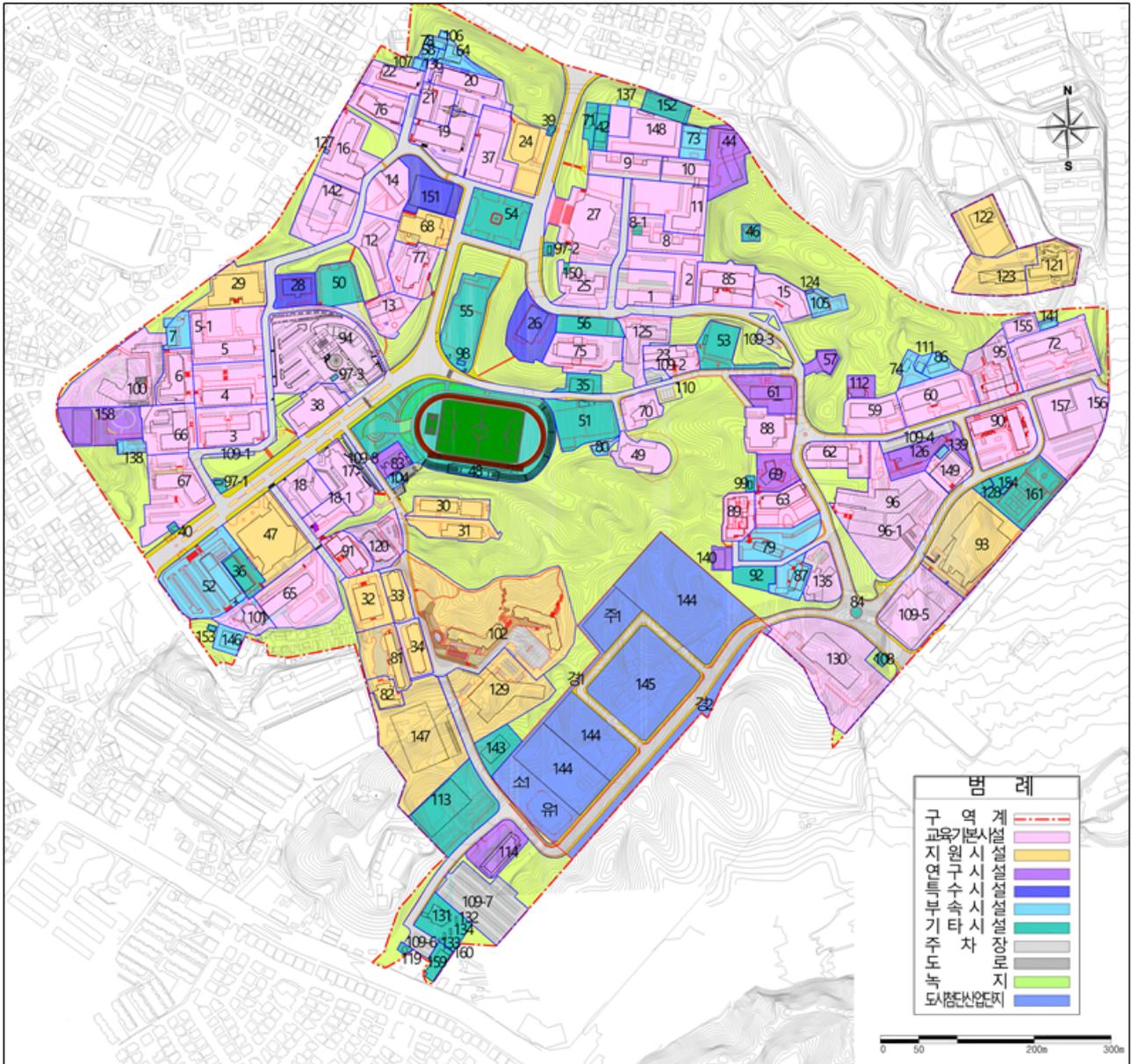
구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합계	23	5,749	79,117	5	1,914	23,911	8	1,859	30,811	10	1,976	24,395
기정	대로	2	581	18,097	-	-	-	1	474	14,494	1	107	3,603
기정	중로	10	2,290	33,610	1	318	7,914	2	459	7,219	7	1,513	18,477
기정	소로	11	2,878	27,410	4	1,596	15,997	5	926	9,098	2	356	2,315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비고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도로	474	정문 구역계	중로 2-1 연적지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도로	107	동문 구역계	중로 3-4 의생명과학관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2	15~20	주간선도로	318	북문 구역계	중로 3-1 박물관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1	13~18	주간선도로	223	대로 2-1 교육2호관	소로 1-1 미래의 광장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2	15	주간선도로	236	대로 3-1 의생명과학관	소로 1-3 제2도서관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5	10~12	주간선도로	383	중로 1-1 박물관	소로 2-1 환경연구소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69	소로 1-1 자연대학 1호관	자연대학 3호관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3	12	주간선도로	83	중로 1-1 미래의 광장	중로 2-1 미래의 광장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4	12	주간선도로	377	대로 3-1 의생명과학관	소로 1-3 수의학관	일반 도로	-	-	-

비고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284	중로 1-2 사회혁신센터	기숙사 (퇴계관)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7	12	국지도로	200	중로 3-6	109-6호 주차장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8	12	국지도로	117	중로1-1	대로 3-1 동문구역계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1	8~10	주간선도로	842	대로 2-1 공대 6호관	중로 1-1 미래의 광장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68	중로 3-1 나래관	농학 2호관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435	의학2호관 동측구역계	중로 2-5 제2도서관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51	대로 2-1 인문사회2호관	남자기숙사 식당동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1	6~10	국지도로	581	대로 2-1 연적지	소로 1-3 제2도서관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41	소로 2-1 제1테니스장	축산대동물소각장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52	소로 1-2 교수테니스장	제2도서관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74	소로 1-3 수의학관	중로 3-4 수의학관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6	7.5~9	국지도로	178	대로 2-1 인문사회1호관	기숙사 C동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95	대로 2-1 종합강의동	소로 1-1 학군단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61	중로 2-2 동문-약대	산림과학대학 1호관	일반 도로	-	-	-

바.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실음생략

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033-250-48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 고시 제2025-171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중도복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춘천시 중도동 872번지 일원의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 완료지역 보존조치를 위한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중도복유원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법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춘 천 시 장

□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춘천시 중도동 872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중도복유원지) 사업
 - 나. 사업의 명칭: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완료지역의 보존조치를 위한 녹지조성
- 3.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녹지 10,170㎡
 - 나. 규 모: 녹지조성 10,170㎡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춘천시장
 - 나.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 나. 준공예정일: 2025. 6.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가.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중도동	872	원	26,168	10,170	춘천시	-	-	-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중도북유원지)

가.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중도북유원지) 결정(변경) 조서(변경있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유원지 (중도북유원지)	춘천시 중도동 872번지 일원	52,616	감)17	52,599	강고 제58호 (1977. 4. 19.)	

나.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중도북유원지) 결정(변경) 사유서(변경있음)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원지 (중도북유원지)	• 면적변경 - 52,616㎡ → 52,599㎡ (17㎡ 감)	• 면적변경(17㎡ 감) - 지적확정측량 결과 등 반영

2.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높이(층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2,616	감)17	52,599	4,971.99	-	4,971.99	6,406.66	-	6,406.66	-	-	-
특수 시설	계	25,466	감)384	25,082	4,600.00	-	4,600.00	5,546.89	-	5,546.89	-	-	-
	소계	16,382	감)384	15,998	2,932.22	-	2,932.22	2,932.22	-	2,932.22	-	-	-
	① 1구역 (온실동)	16,382	감)384	6,330	2,932.22	-	2,932.22	2,932.22	-	2,932.22	지상 1층	-	지상 1층
	2구역 (묘포장)		-	9,668	-	-	-	-	-	-	-	-	-
②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및 편익시설	9,084	-	9,084	1,667.78	-	1,667.78	2,614.67	-	2,614.67	지상 3층	-	지상 3층	
편익 시설	계	1,151	-	1,151	274.64	-	274.64	762.42	-	762.42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1,151	-	1,151	274.64	-	274.64	762.42	-	762.42	지상 4층	-	지상 4층
휴양 및 편익 시설	계	331	-	331	97.35	-	97.35	97.35	-	97.35	-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331	-	331	97.35	-	97.35	97.35	-	97.35	지상 1층	-	지상 1층
관리	계	15,865	-	15,865	-	-	-	-	-	-	-	-	-

시설	도로	15,865	-	15,865	-	-	-	-	-	-	-	-	-
녹지	계	9,803	증)367	10,170	-	-	-	-	-	-	-	-	-
	녹지	9,803	증)367	10,170	-	-	-	-	-	-	-	-	-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사유서

구 분	면적변경(m ²)	변 경 사 유	비 고
특수시설	감) 384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특수시설① 면적 17m² 감소 • 문화재 심의 도로개설 보류(미승인)에 따른 특수시설① 면적 367m² 감소 	온실 및 묘포장, 정원소재 실용화 센터 및 편익시설
녹지	증) 367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심의 도로개설 보류(미승인)에 따른 보존조치 이행으로 면적 367m² 증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지도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도: 실음생략.

춘천시 고시 제2025-172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중도복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춘천시 중도동 872번지 일원의 정원문화 확산 인프라 시설 건립을 위한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중도복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춘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춘천시 중도동 87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중도복유원지)사업
 - 나. 사업의 명칭: 정원문화 확산 인프라 시설 건립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특수시설 ①: 15,998㎡
 - 1구역: 6,330㎡ (온실동, 주차장 등)
 - 2구역: 9,668㎡ (묘포장, 주차장 등)
 - 나. 규 모 : 건축연면적: 2,720.00㎡(온실동/지상 1층), 건축면적 : 2,720.00㎡(온실동)
 - 재배형온실: 1,280㎡
 - 관람형온실: 1,280㎡
 - 기계실: 16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춘천시
 - 나.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11(옥천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예정일: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중도동	872	원	26,168	15,998	춘천시	-	-	-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춘천시 공고 제2025-622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중로3류9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안) 열람공고

춘천시고시 제2023-9호(2023.1.1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춘천시 우두동 150-7번지 일원 소양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중로3류98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안) 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춘 천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춘천시 우두동 150-7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사업의 종류: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중로3류98호선)사업
 - 나. 사업의 명칭: 소양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 기정 : 2,778㎡
 - 변경 : 2,782㎡
 - 나. 규 모 : 도시계획도로(중로3류98호선) B=12m, L=199m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춘천시장(도로과)
 - 나. 주 소 :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일 후
 - 나. 준공예정일
 - 기정 : 2023. 12. 31.
 - 변경 : 2026. 12. 31.
-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 2025. 3. 28. ~ 2025. 4. 11. (14일간)
 - 나. 장 소 : 춘천시청 도시계획과(☎033-250-3175)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가. 토지조서(변경)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결정 면적 (㎡)	기타 면적 (㎡)	합계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변경 없음	우두동	150-7	도	18,444	10		10	건설부						
2	변경 없음	"	428-12	도	10	10		10	춘천시						
3	변경 없음	"	443-3	도	26	1		1	국토교통부						
4	기정	"	281-6	도	23	13		13	건설교통부						
	변경	"	281-13	도	13	13		13	건설교통부						
5	변경 없음	"	117-28	도	356	356		356	건설부						
6	기정	"	281-4	대	31	3		3	재무부						
	변경	"	281-12	대	3	3		3	춘천시						
7	기정	"	428-11	대	40	40	40	이옥희	우두동 428						
								안세현	우두동 428						
								안두현	우두동 428						
변경	"	428-11	대	40	40		40	춘천시							
8	변경 없음	"	278-34	도	266	266		266	춘천시						
9	변경 없음	"	278-29	대	81	81		81	춘천시						
10	기정	"	278-30	대	40	40		40	김병도	우두동 278-21					
	변경	"	278-30	대	40	40		40	춘천시						
11	기정	"	278-35	대	6	6		6	김새롬	춘천시 서부대성로 33, 102동 1803호					
	변경	"	278-35	대	6	6		6	춘천시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결정 면적 (㎡)	기타 면적 (㎡)	합계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2	기정	"	278-33	대	19	19		19	심상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7길 20, 101동 502호				
	변경	"	278-33	대	19	19		19	춘천시					
13	변경 없음	"	282-9	학	571	571		571	강원도 (교육감)					
14	변경 없음	"	278-12	도	129	129		129	춘천시					
15	변경 없음	"	278-16	도	17	17		17	춘천시					
16	변경 없음	"	278-9	대	129		127	127	춘천시					
17	변경 없음	"	277-12	대	9		9	9	춘천시					
18	변경 없음	"	278-27	대	77		69	69	춘천시					
19	변경 없음	"	277-13	대	148		148	148	춘천시					
20	변경 없음	"	277-11	도	63	63		63	춘천시					
21	변경 없음	"	277-10	도	20	20		20	춘천시					
22	기정	"	277-6	대	226	5		5	조남일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13				
	변경	"	277-18	대	9	9		9	춘천시					
23	변경 없음	"	283-7	전	15	15		15	강원도 (교육감), 춘천시					
24	변경 없음	"	269-39	대	5	5		5	춘천시					
25	변경 없음	"	283-6	구	62	62		62	춘천시					
26	변경 없음	"	275-6	구	4	4		4	춘천시					
27	변경 없음	"	283-4	도	155	155		155	건설부, 춘천시					
28	변경 없음	"	269-40	전	9	9		9	춘천시					
29	변경 없음	"	291-13	전	155	126		126	춘천시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결정 면적 (㎡)	기타 면적 (㎡)	합계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30	변경 없음	"	283-8	전	15	15		15	춘천시					
31	변경 없음	"	284-6	전	55	55		55	춘천시					
32	변경 없음	"	284-2	도	261	261		261	춘천시					
33	변경 없음	"	291-14	전	55	50		50	춘천시					
34	변경 없음	"	269-41	대	4	4		4	춘천시					
35	변경 없음	"	269-36	대	5	5		5	춘천시					
36	변경 없음	"	117-29	도	9	9		9	건설부					
기정	합 계					2,425	353	2,778						
변경						2,429	353	2,782						

나. 지장물조사(변경)

일련 번호	구분	동 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종류	수량	단위	구조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우두동	117-28	한전주	1.0	EA		한국 전력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한전주	1.0	EA							
				한전주	1.0	EA							
				한전주	1.0	EA							
				통신주	1.0	EA		한국 통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통신주	1.0	EA							
				통신주	1.0	EA							
				통신맨홀	1.0	EA		CJ헬로비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19 상암디지털립타워				
				통신맨홀	1.0	EA		한국 통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통신맨홀	1.0	EA											
2	기정	"	278-34	통신주	1.0	EA		한국 통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대문	1.0	EA	2.5×H2.0	김병도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278-21				
				대문	1.0	EA	2.0×H1.8						
				차고	4.0	㎡	조립식						
				차고	1.0	EA	3.5×H2.0						

일련 번호	구분	동 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종류	수량	단위	구조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출입문									
				수목	1.0	주	W=40cm H=8.0m						
	변경	"	278-34	통신주	1.0	EA		한국통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3	기정	"	428-1	1층주택	134	m ²	철근콘트리트	이옥희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428-1				
				2층 사무실	134	m ²	철근콘트리트	안세현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428-1				
				컨테이너	1.0	EA	3.0×4.0	이옥희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428-1				
	변경	"	428-1	없음									
4	기정	"	428-11	대문	1.0	EA	1.5×H2.0	이옥희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428-1				
				차고 출입문	1.0	EA	3.5×H2.5						
	변경	"	428-11	없음									
5	기정	"	281-4	1층주택	123	m ²	벽돌조	염창욱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142번길 38-6(우두동)				
6	기정	"	278-12	통신주	1.0	EA		한국통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대문	1.0	EA	1.0×H2.0 2.5×H2.0	심상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7길 20, 101동 502호(서초동, 서초동풍림아이원아파트)				
				차고 출입문	1.0	EA	3.5×H2.7						
				대문	1.0	EA	1.5×H1.8 3.0×H1.8	우두동개발위원회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278-17				
	변경	"	278-12	통신주	1.0	EA		한국통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7		우두동	282-9	주차 차단기	1.0	EA		강원도 (교육감)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학교 보안관실	1.0	EA	2.5×2.5						
				컨테이너	1.0	EA	3.0×8.0						
				분리 수거장	1.0	EA	4.0×4.0						
				수목	1.0	EA	W=40cm H=5.0m						

일련 번호	구분	동 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종류	수량	단위	구조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수목	1.0	EA	W=40cm H=5.0m						
				수목	1.0	EA	W=40cm H=5.0m						
				수목	1.0	EA	W=40cm H=5.0m						
8	기정	"	277-10	대문	1.0	EA	1.5×H2.0 2.5×H2.0	조남일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142번길 13 (우두동)				
	변경	"	277-10	없음									
9	기정	"	269-3	차고	37.0	m ²	조립식	조남일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142번길 13 (우두동)				
	변경	"	269-3	없음									
10		"	283-6	CCTV	1.0	EA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옥천동)				
11			291-13	한전주	1.0	EA		한국 전력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한전주	1.0	EA							
12			269-18	비닐 하우스	28.0	m ²		이동찬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269-10				
				비닐 하우스	59.0	m ²							
				"	269-18	없음							
13			284-6	창고	5.0	m ²	슬레이트	윤상구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269-8				
			"	284-6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춘천시 공고 제2025-631호

춘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춘천성심병원)사업 완료 공고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한 춘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춘천성심병원)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춘 천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후평동 528-6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춘천성심병원)사업
 - 나. 명칭 :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연구동 증축공사
- 3. 면적 또는 규모
 - 가. 인가면적 : 3,063.41㎡
 - 나. 건축규모
 - 1)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증축 : 건축면적 294.41㎡, 연면적 2,608.33㎡, 주1, 지하2층~지상9층
 - 2) 의료시설(주차시설) 용도변경 : 건축면적 1,917.57㎡, 연면적 5,571.87㎡, 부속1, 지상3층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병원장 이재준
 -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77
-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03. 21.

춘천시 공고 제2025-634호

춘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열람공고

춘천시 삼천동 22-15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77호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춘 천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춘천시 삼천동 22-15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가. 사업의 종류: 춘천 도시계획시설(77호 주차장) 사업
 - 나. 사업의 명칭: 춘천시 삼천동 22-15번지 일원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신축공사
- 3.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가. 결정면적: 4,660㎡
 - 나. 인가면적: 4,660㎡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가. 성 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자 : 민관식)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 5. 사업의 기간 (변경)
 - 가. 착수일: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일
 - 기정: 2025. 3. 31.
 - 변경: 2025. 6. 30.
-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 2025. 3. 28. ~ 2025. 4. 11. (14일간)
 - 나. 장 소 : 춘천시청 도시계획과(☎033-250-4179)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가.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춘천시 삼천동	22-15	임	3,180	3,180	춘천시					
2	춘천시 삼천동	22-30	도	69	69	춘천시					
3	춘천시 삼천동	23-1	대	324	32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4	춘천시 삼천동	23-3	대	298	298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5	춘천시 삼천동	23-5	대	437	437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6	춘천시 삼천동	23-6	대	159	159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7	춘천시 삼천동	28-54	대	99	99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8	춘천시 삼천동	28-78	대	28	28	춘천시					
9	춘천시 삼천동	28-113	대	5	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0	춘천시 삼천동	28-114	대	9	9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춘천시 삼천동	28-115	대	5	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2	춘천시 삼천동	28-116	전	27	27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3	춘천시 삼천동	28-117	전	20	20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합계				4,660	4,66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조서 (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시설물	맨홀	D900	ea	6	
	빗물받이	540x440	ea	4	
	수로관	400x400	m	24	
	이중벽관	D400	m	200	
	이중벽관	D200	m	25	
	공작물 시설	-	식	1	주차장 시설
옹벽	축조블럭	-	식	1	L=70.0m
포장	아스콘 포장	-	m ²	698	
	경계석	200x250	m	51	

춘천시 공고 제2025-639호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부분준공) 공고

춘천시 고시 제2025-50호(2025.1.24.)로 개발계획 변경(21차)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14차) 인가 고시된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라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부분)준공검사를 이행하고,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춘 천 시 장

- 1. 사업의 명칭: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 2. 시 행 자: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대웅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60번지 일원
-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20,376.3㎡
 - 나. 용도별 면적 : 별첨1 참조
 - 다. 금회 공사 완료된 부분 : 별첨2 참조
- 5. (부분)준공일자: 2025. 3. 28.
-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금회 부분준공은 상업용지, 교육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에 한함.)

■ [별첨 1]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합 계	320,376.3	100.0	
주거용지	152,307.6	47.6	
공동주택	128,351.4	40.1	기 준공완료
단독주택	13,123.9	4.1	기 준공완료
준주거시설용지	10,832.3	3.4	
근린생활시설	10,832.3	3.4	기 준공완료
상업용지	8,896.6	2.8	금회 부분준공
공공업무용지	28,168.1	8.8	기 준공완료
기반시설용지	131,004.0	40.8	
공 원	7,975.2	2.5	
경관녹지	60,235.8	18.8	
완충녹지	5,817.4	1.8	
주차장	2,055.9	0.6	금회 부분준공
유수지(저류지)	5,272.1	1.7	기 준공완료
보행자전용도로	1,681.4	0.5	기 준공완료
도 로	34,707.5	10.8	기 준공완료
학 교	13,258.7	4.1	금회 부분준공

■ [별첨 2] 금회 공사 완료된 부분

구 분	면 적 (m ²)	획지수	비 고
계	24,211.2	8획지	
상업용지	8,896.6	6획지	
교육시설용지	13,258.7	1획지	
주차장용지	2,055.9	1획지	

원주시 고시 제2025-126호

원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23호:중앙근린공원(2구역)]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원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6항, 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원 주 시 장

□ 사업시행자(변경8차) 지정(국토계획법 제86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무실동 산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23호)사업
- 명칭: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원주시장 / 중앙근린공원개발 주식회사
-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 403호(무실동, 로얄타워)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336,581.1㎡(공원시설 262,496.1㎡, 비공원시설 74,085㎡)
- 규모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총 계	336,581.1	336,581.1		
공원시설	소 계	262,496.1	262,496.1	
	기반시설	25,244.0	25,244.0	도로, 광장, 주차장
	조경시설	3,016.0	3,016.0	트리아지트, 숲공작소 등

구 분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교양시설	742.0	742.0	어린이수목원 등
	휴양시설	7,888.0	7,888.0	숲속쉼터, 잔디광장 등
	운동시설	330.0	330.0	운동시설
	유희시설	637.0	637.0	자연놀이터
	편익시설	-	-	
	관리시설	350.0	350.0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녹지 및 기타	224,289.1	224,289.1	-
비공원시설	소 계	74,085.0	74,085.0	
	공동주택(도로포함)	65,789.0	65,789.0	
	어린이도서관	3,300.0	3,300.0	
	학교시설확장부지	4,996.0	4,996.0	

- 건축계획

구 분			면적(m ²)		연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3,319.12	3,319.12	7,164.93	7,164.93
소 계			3,319.12	3,319.12	7,164.93	7,164.93
공원시설	휴양시설	주차장	3,018.56	3,018.56	6,864.37	6,864.37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300.56	300.56	300.56	300.56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인가의 신청기일: 2025. 3. 18. (접수일)

□ 실시계획(변경8차)인가(국토계획법 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무실동 산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23호)사업
- 명칭: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원주시장 / 중앙근린공원개발 주식회사
-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 403호(무실동, 로얄타워)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336,581.1㎡(공원시설 262,496.1㎡, 비공원시설 74,085㎡)
- 규모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총 계	336,581.1	336,581.1		
공원시설	소 계	262,496.1	262,496.1	
	기반시설	25,244.0	25,244.0	도로, 광장, 주차장
	조경시설	3,016.0	3,016.0	트리아지트, 숲공작소 등
	교양시설	742.0	742.0	어린이수목원 등
	휴양시설	7,888.0	7,888.0	숲속쉼터, 잔디광장 등
	운동시설	330.0	330.0	운동시설
	유희시설	637.0	637.0	자연놀이터
	편익시설	-	-	
	관리시설	350.0	350.0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녹지 및 기타	224,289.1	224,289.1	-
비공원시설	소 계	74,085.0	74,085.0	
	공동주택(도로포함)	65,789.0	65,789.0	
	어린이도서관	3,300.0	3,300.0	
	학교시설확장부지	4,996.0	4,996.0	

- 건축계획

구 분		면적(m ²)		연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3,319.12	3,319.12	7,164.93	7,164.93	
소 계		3,319.12	3,319.12	7,164.93	7,164.93	
공원시설	휴양시설	주차장	3,018.56	3,018.56	6,864.37	6,864.37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300.56	300.56	300.56	300.56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기정)2020. 6. 19. ~ 2025. 3. 31.
- (변경)2020. 6. 19. ~ 2025. 4.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토지포함) 및 지하시설물 등

■ [붙임] 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 외의권리 의종류및 내용	
1	원주시명 륜동	849-6	공	5,930.3	5,930.3		원주시				
2	원주시무 실동	1-26	하	562.0	56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3	"	74	전	461.0	461.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4	"	75	전	1,428.0	1,42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5	"	76	전	407.0	407.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6	"	91	전	1,716.0	1,716.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7	"	91-2	임	3,377.0	3,377.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8	"	95	전	61.0	61.0		원주시				
9	"	96	과	3,089.0	3,089.0		원주시				
10	"	96-2	임	3,817.0	3,817.0		원주시				
11	"	104-2	답	58.0	58.0		국토교통부				
12	"	210	전	227.0	227.0		원주시				
13	"	242	전	755.0	755.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14	"	산15-5	임	9,700.0	9,700.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15	"	산15-6	임	1,331.0	1,331.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16	"	산15-8	임	5,752.0	5,75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17	"	산15-9	임	4,070.0	4,070.0		원주시				
18	"	산15-14	임	4,702.0	4,702.0		원주시				
19	"	산15-15	임	4,527.0	4,527.0		원주시				
20	"	산15-16	임	16,234.0	16,234.0		원주시				
21	"	산15-17	임	397.0	397.0		원주시				
22	"	산15-18	임	694.0	694.0		원주시				
23	"	산15-19	임	622.0	622.0		원주시				
24	"	산15-20	임	1,819.0	1,819.0		원주시				
25	"	산15-21	임	265.0	265.0		원주시				
26	"	산15-180	임	408.0	408.0		원주시				
27	"	산15-22	임	796.0	796.0		원주시				
28	"	산15-25	임	21,355.0	21,355.0		원주시				
29	"	산15-29	임	3,650.0	3,650.0		원주시				
30	"	산15-30	임	10,029.0	10,029.0		원주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 외의권리 의종류및 내용	
31	"	산15-31	임	4,701.0	4,701.0		원주시				
32	"	산15-182	임	7,105.0	7,105.0		원주시				
33	"	산15-183	임	7,856.0	7,856.0		원주시				
34	"	산15-57	임	3,517.0	3,517.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35	"	산15-60	임	124.0	124.0		원주시				
36	"	산15-64	임	536.0	536.0		원주시				
37	"	산15-68	묘	361.0	361.0		원주시				
38	"	산15-184	도	108.0	108.0		국토교통부				
39	"	산15-185	도	4,820.0	4,820.0		국토교통부				
40	"	산15-132	임	7,146.0	7,146.0		원주시				
41	"	산16-6	임	7.0	7.0		원주시				
42	"	산20	임	5,653.0	5,653.0		원주시				
43	"	산21-1	임	5,545.0	5,545.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44	"	산23	임	23,677.0	23,677.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45	"	산24	임	10,548.0	10,54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46	"	산25	임	617.0	617.0		원주시				
47	"	산37	임	9,187.0	9,187.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48	"	산38	임	15,472.0	15,47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49	"	산39	임	1,171.0	1,171.0		원주시				
50	"	산40	임	9,402.0	9,40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51	원주시관 부면	419-20	전	339.0	339.0		원주시				
52	"	419-21	전	1,399.0	1,399.0		원주시				
53	"	445-64	임	11,569.0	11,569.0		원주시				
54	"	535	전	724.0	724.0		원주시				
55	"	535-1	전	939.0	939.0		원주시				
56	"	산13-3	도	4,388.0	4,388.0		국토교통부				
57	"	산13-4	임	1,314.0	1,314.0		원주시				
58	"	산14	임	23,464.0	23,464.0		원주시				
59	"	산16	임	3,734.0	3,734.0		원주시				
60	"	산22-2	임	5,384.0	5,384.0		원주시				
61	"	산22-4	임	4,186.0	4,186.0		원주시				
62	"	산23-6	임	317.0	317.0		원주시				
63	"	산26-2	임	3,694.0	3,694.0		원주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 외의권리 의종류및 내용	
64	원주시무 실동	산15-186	임	553.0	553.0		원주시				
65	"	산15-187	임	569.0	569.0		원주시				
66	"	1819	공	589.9	589.9		원주시				
67	"	1819-1	공	982.6	982.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68	"	1819-2	공	219.6	219.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69	"	1824-1	공	1,904.0	1,904.0		원주시				
70	"	1824-2	공	178.2	178.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71	"	1824-3	공	4,956.7	4,956.7		원주시				
72	"	1824-4	공	1,879.1	1,879.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73	"	1864-1	공	179.7	179.7		원주시				
74	"	1864-2	공	1594.7	1594.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75	"	1864-3	공	3098.9	3098.9		원주시				
76	"	1867	공	3500.6	3500.6		원주시				
77	"	1867-1	공	991.7	991.7		원주시				
78	"	1870	공	4,426.9	4,426.9		원주시				
79	"	1872-1	공	13,857.7	13,857.7		원주시				
80	"	1869-1	도	89.1	89.1		원주시				
81	"	1865-1	도	315.8	315.8		원주시				
82	"	1818	공	3,417.9	3,417.9		원주시				
83	"	1818-1	공	83.0	8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신탁				
84	원주시명 륜동	853	공	1,077.1	1,077.1		원주시				
85	"	849-4	공	1,726.4	1,726.4		원주시				
86	"	849-14	공	3,146.2	3,146.2		원주시				
계		84필지		336,581.1	336,581.1						

원주시 고시 제2025-129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한라대학교) 세부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한라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대학)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원 주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시설:한라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03	한라대학교	대학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868-3번지 일원	505,841	감)14	505,827	강원도고시 제1997-172호 ('97.7.21)	

나.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03	학교	* 면적 : 감)14㎡ 505,841㎡ → 505,827㎡	●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세부시설 조성계획(토지이용계획)결정(경미한 변경)조서

구분	시 설 명	토 지 이 용 계 획					비 고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토지 이용 계획	학 교 (한라대학교)	계	505,841	감)14	505,827	100.0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건 축 부 지	121,652	-	121,652	24.1	
		운 동 장 부 지	18,662	-	18,662	3.7	
		도 로 부 지	57,876	감)14	57,862	11.4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주 차 장 부 지	36,872	-	36,872	7.3	
		녹 지 부 지	270,779	-	270,779	53.5	

■ 세부시설 조성계획(토지이용계획)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03	한라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부지 -57,876m² → 57,862m² 감)1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부지: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3. 세부시설 조성계획(건축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건 물 명	기 정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및연면적		
합 계		40,527.13	98,812.91	변경없음		
교육 기본 시설	①	본 관 동	13,576.55	42,257.86	-	
	⑤	교육연구시설	24.60	24.60	-	
	③	산 학 협 력 관	3,975.87	6,795.96	-	
	⑫	교 양 관	2,430.35	9,849.69	-	
	⑱	행정동 및 학생회관	4,000.00	8,200.00	-	
	⑲	경 영 관	2,444.55	6,173.26	-	
	㉑	대 학 원	870.00	870.00	-	
	㉕	학 술 정 보 관	800.00	800.00	-	
	소 계		28,121.92	74,971.37	-	
복지 시설	⑥	학생기숙사 A동	685.86	2,978.05	-	
	⑦	학생기숙사 B동	617.18	2,722.16	-	
	⑧	학생기숙사 관리동	32.49	435.33	-	
	⑩	학생기숙사 수위실	9.63	9.63	-	
	⑮	학생기숙사 C동	599.40	2,782.88	-	
	소 계		1,944.56	8,928.05	-	
사회 봉사 시설	⑪	창업보육센터1	389.41	678.84	-	
	⑰	창업보육센터2	1,250.00	3,900.00	-	
	⑳	기 념 관	995.55	995.55	-	
	㉒	평생교육원	564.73	564.73	-	
	㉓	산학연구지원센터	1,200.00	1,200.00	-	
	㉘	박 물 관	894.60	894.60	-	
	소 계		5,294.29	8,233.72	-	
체육 시설	⑯	운동장 본부석	242.11	341.24	-	
	㉖	체육관,수영장	2,253.60	2,253.60	-	
	소 계		2,495.71	2,594.84	-	
교육 연구 시설	⑭	복합발전센터	751.76	2,196.04	-	
	㉔	연 구 동(1)	1,200.00	1,200.00	-	
	㉗	연 구 동(2)	600.00	600.00	-	
	소 계		2,551.76	3,996.04	-	
기타 시설	②	경 비 실	32.52	32.52	-	
	④	폐유저장소	12.00	12.00	-	
	⑨	주차관리소1	3.04	3.04	-	
	⑬	옥외화장실	11.33	11.33	-	
	㉙	주차관리소2	60.00	30.00	-	
	소 계		118.89	88.89	-	

② 도시계획시설(대학) 세부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토지조서

1.도시계획시설(한라대학교)

가.토지조서 총괄표

(단위:필지수/ m²)

구 분	소유자별 편입 토지조서							
	합 계		국유지	공유지 (농어촌공사)	사유지	학교법인 배달학원	비고	
한라대학교	필지수	기정	51	4	1	2	43	변경없음
		변경	51	4	1	2	43	
	면적	기정	505,841	3,645	1,215	3,739	497,242	감)14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505,827	3,645	1,215	3,739	497,228	

나.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비 고
			공부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홍업면 홍업리		합계	515,109	505,841	505,827	감)14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	868-3	학	15,030	15,030	15,030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2	868-16	도	113	56	56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3	868-17	도	91	34	34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4	872-3	대	288	288	288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5	980	학	121,525	121,525	121,525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6	982	전	946	946	946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7	986	답	1,385	1,385	1,385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8	987	답	1,706	1,706	1,706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9	991-10	전	2,522	2,522	2,522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10	991-14	학	1,215	1,215	1,215	-	-	한국농어촌공사	
11	991-24	과	14,002	14,002	14,002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12	991-46	학	2,315	2,315	2,315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13	1345	학	314	314	314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14	1346	입	476	476	476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15	1347	답	3,299	3,299	3,299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16	1348	입	268	268	268	-	경성부 수창동 184	박승서	
17	1352	학	30,094	30,094	30,094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18	1366	학	16,924	16,924	16,924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19	1534-11	학	1,351	1,351	1,351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20	1534-12	학	1,198	1,198	1,198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21	1534-17	구	1,277	1,277	1,277	-	건설부	국		
22	1747	구	4,008	865	865	-	농림부	국		
23	1747-2	학	42,703	39,632	39,633	증1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24	1747-3	학	733	733	733	-	농림부	국		
25	기정	1755	학	5,998	2,069	0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1755-2		-	-	2,054	감15			
26	1759-1	도	170	170	170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27	1775	도	772	770	770	-	농림부	국		
28	산65-2	임	43	43	43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29	산65-3	임	50,932	50,932	50,932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30	산65-6	임	153	153	153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31	산65-10	임	47,297	47,297	47,297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32	산66	임	29,186	29,186	29,186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33	산66-1	임	708	708	708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34	산67-1	임	7,070	7,070	7,070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35	산67-2	임	4,364	4,364	4,364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36	산67-3	임	5,950	5,950	5,950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37	산67-4	임	3,471	3,471	3,471	-	서초구 서초동 1713-3 302호	반남박씨 도정공과문중		
38	산67-5	임	10,230	10,230	10,230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39	산67-6	임	6,260	6,260	6,260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40	산67-7	임	2,054	2,054	2,054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41	산67-8	임	6,553	6,553	6,553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42	산67-9	임	40,466	40,466	40,466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43	산68	임	8,430	8,430	8,430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44	산69	임	397	397	397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45	산70	임	3,947	3,922	3,922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46	산70-1	임	1,527	1,527	1,527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47	산70-2	임	1,468	1,468	1,468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48	산72-5	임	3,175	3,175	3,175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49	산72-7	임	5,773	5,773	5,773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50	산72-8	목	4,158	4,158	4,158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51	산72-10	임	1,790	1,790	1,790	-	홍업리 산66	학교법인배달학원		

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대학)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고시: 실음 생략

원주시 공고 제2025-758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76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원주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원 주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무실동 1863-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76호)사업
 - 명칭: 솔샘초등학교(확장부지) 학교용지의 조성 및 교사동 등 증축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중앙근린공원개발(주) 대표이사 표용현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 403호(무실동. 로알타워)
-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대지면적: 19,966.90㎡
 - 건축면적

구 분		면 적(㎡)
초등학교76호	건축면적	4,926.63
	건축연면적	14,187.88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23. 9. 14. ~ 2025. 12. 31.
-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원주시 공고 제2025-803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26호)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원주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8일

원 주 시 장

□ 사업시행자(변경2차) 지정(국토계획법 제86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관설동 1281-2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26호)사업

○ 명칭: 원주시 관설동 1281-2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26호) 일부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관설개발주식회사 대표 이택수, 이상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501호(여의도동, 하남빌딩)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완충녹지

구분	금회시행(㎡)	비고
완충녹지26호	98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인가의 신청기일: 2025. 3. 21.(접수일)

실시계획(변경2차)인가(국토계획법 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관설동 1281-2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26호)사업

명칭: 원주시 관설동 1281-2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26호) 일부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관설개발주식회사 대표 이택수, 이상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501호(여의도동, 하남빌딩)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완충녹지

구분	금회시행(㎡)	비고
완충녹지26호	98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기정)2022.12.30. ~ 2025. 8. 31.

(변경)2022.12.30. ~ 2025. 10. 20.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일시: 2025. 3. 28. ~ 2025. 4. 11.

장소: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붙임)(변경있음)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토지포함) 및 지하시설물 등

■ 토지조서
(기정)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81-28	전	26	26	강원도특별자치도 동해시 효자로 586, 102동 802호 (쇄운동, 동해석미모닝파크)	이종민	1/2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88-12, 102동 801호 (호평동, 오네뜨센트럴)	이종익	1/2				
2	원주시 관설동	1283-4	전	65	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22, 103동 305호 (단구동,현진에버빌1)	안상훈	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22, 103동 305호 (단구동,현진에버빌1)	한혜숙	1/2				
3	원주시 관설동	1285-5	전	100	100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32번길 10, 205동 504호 (원동,오산역e-편한 세상아파트)	이영자	-				
4	원주시 관설동	1286	전	420	3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367-18 (관설동)	배양순	-				
5	원주시 관설동	1287-6	전	121	121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도호길 112	김진광	-				
6	원주시 관설동	1287-10	전	200	2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개운로 30, 107동 602호 (개운동,휴먼시아원 주개운1단지아파트)	이연순	-				
7	원주시 관설동	1300-18	전	903	115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295-268 (화산리)	박종용	1/3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안로 211	장익수	1/3				
						경상북도 경주시 능원길 22, 104동 402호(도지동,코아 루그랑블)	장태수	1/3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8	원주시 관설동	1301-7	답	176	176	강원도특별자치도 동해시 효자로 586, 102동 802호 (쇄운동, 동해석미모닝파크)	이종민	1/2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88-12, 102동 801호 (호평동, 오네뜨센트럴)	이종익	1/2				
9	원주시 관설동	산169-6	임	1,652	11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578-4	재단법인 선교유지 재단	-				
10	원주시 관설동	산169-14	임	2,429	120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142번길 20, 205동 1102호 (휴천동,남산현대아 파트)	강명구	-				
11	원주시 관설동	산169-28	임	992	11	경남 마산시 월영동 602-12 월영라이프타운 1404	신승희	248 / 909				
						마산시 월영동 602-12 월영라이프타운 1404	신승희	661 / 909				
12	원주시 관설동	1288-7	답	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한국자산 신탁주식 회사	-				
계				7,085	985							

(변경)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81-28	전	26	26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2	원주시 관설동	1283-4	전	65	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22, 103동 305호 (단구동,현진에버빌1)	안상훈	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22, 103동 305호 (단구동,현진에버빌1)	한혜숙	1/2				
3	원주시 관설동	1285-5	전	100	1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				
4	원주시 관설동	1286-3	전	39	3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				
5	원주시 관설동	1287-6	전	121	12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				
6	원주시 관설동	1287-10	전	200	2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				
7	원주시 관설동	1300-24	전	115	11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				
8	원주시 관설동	1301-7	답	176	176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				
9	원주시 관설동	1286-1	임	11	1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				
10	원주시 관설동	1286-6	임	120	12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				
11	원주시 관설동	1286-2	임	11	1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12	원주시 관설동	1288-7	답	1	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				
계				985	985							

■ 지장물조서(변경사항없음)

순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 내용	
1	관설동 1300-18	화력주	-	1	EA	우산로 122	한국전력공사				

원주시 공고 제2025-804호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1-4호,대로3-10호,중로2-113호,소로2-618호,

완충녹지26호)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8일

원 주 시 장

□ 사업시행자(변경6차) 지정(국토계획법 제86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관설동 130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 명칭: 원주시 관설동 1298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관설개발주식회사 대표 이택수, 이상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501호(여의도동, 하남빌딩)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금회시행		비고
	폭원	연장	
대로1-4호	2.4~2.9m	272m	가감속차로
대로3-10호	25m	190m	
중로2-113호	15m	401m	
소로2-618호	8m	5m	
완충녹지26호	589㎡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2025. 3. 21.(접수일)

실시계획(변경6차)인가(국토계획법 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관설동 130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 명칭: 원주시 관설동 1298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관설개발주식회사 대표 이택수, 이상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501호(여의도동, 하남빌딩)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금회시행		비고
	폭원	연장	
대로1-4호	2.4~2.9m	272m	가감속차로
대로3-10호	25m	190m	
중로2-113호	15m	401m	
소로2-618호	8m	5m	
완충녹지26호	589㎡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기정)2022. 9. 5. ~ 2025. 8. 31.
- (변경)2022. 9. 5. ~ 2025. 10. 20.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 3. 28. ~ 2025. 4. 11.
- 장소: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변경있음)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대로1-4호,대로3-10호,중로2-113호,소로2-618호,완충녹지26호) 기반시설(토지포함) 및 지하시설물 등

■ 토지조서

1) 대로1-4호 (변경)

(기정)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97-10 4	창	53	5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2	원주시 관설동	1297-5	대	13	1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3	원주시 관설동	1297-7	대	47	4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4	원주시 관설동	1297-9	대	11	1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5	원주시 관설동	1297-10 7	전	22	2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6	원주시 관설동	1297-94	답	1	1	공유지	원주시	-				
7	원주시 관설동	1297-10 9	도	93	93	공유지	원주시	-				
8	원주시 관설동	1297-95	구	13	13	국유지	농림축산식 품부	-				
9	원주시 관설동	1297-11 0	구	2	2	국유지	농림축산식 품부	-				
10	원주시 관설동	1297-11 2	구	1	1	국유지	농림축산식 품부	-				
11	원주시 관설동	1297-11 3	구	1	1	국유지	농림축산식 품부	-				
12	원주시 관설동	1297-11 1	대	55	5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3	원주시 관설동	1297-75	답	17	17	국유지	기획 재정부	-				
14	원주시 관설동	1299-6	대	31	3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5	원주시 관설동	1299-7	창	75	7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6	원주시 관설동	1299-9	답	121	12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7	원주시 관설동	1299-10	창	13	1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8	원주시 관설동	1299-11	창	1	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9	원주시 관설동	1329-4	도	1	1	공유지	원주시	-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20	원주시 관설동	1332-17	도	25	25	공유지	원주시	-				
21	원주시 관설동	1281-4	전	8	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효자로 586, 102동 802호(쇄운동, 동해석미모닝파크)	이종민	1/2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88-12, 102동 801호(호평동, 오네뜨센트럴)	이종익	1/2				
22	원주시 관설동	1301-4	답	18	1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57, 105동 601호 (단구동,단구신성미소 지움아파트)	김경숙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857-2	원주농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계				622	622							

(변경)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97-10 4	창	53	5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2	원주시 관설동	1297-5	대	13	1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3	원주시 관설동	1297-7	대	47	4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4	원주시 관설동	1297-9	대	11	1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5	원주시 관설동	1297-10 7	전	22	2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6	원주시 관설동	1297-94	답	1	1	공유지	원주시	-				
7	원주시 관설동	1297-10 9	도	93	93	공유지	원주시	-				
8	원주시 관설동	1297-95	구	13	13	국유지	농림축산식 품부	-				
9	원주시 관설동	1297-11 0	구	2	2	국유지	농림축산식 품부	-				
10	원주시 관설동	1297-11 2	구	1	1	국유지	농림축산식 품부	-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11	원주시 관설동	1297-11 3	구	1	1	국유지	농림축산식 품부	-				
12	원주시 관설동	1297-11 1	대	55	5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3	원주시 관설동	1297-75	답	17	17	국유지	기획 재정부	-				
14	원주시 관설동	1299-6	대	31	3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5	원주시 관설동	1299-7	창	75	7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6	원주시 관설동	1299-9	답	121	12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7	원주시 관설동	1299-10	창	13	1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8	원주시 관설동	1299-11	창	1	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9	원주시 관설동	1329-4	도	1	1	공유지	원주시	-				
20	원주시 관설동	1332-17	도	25	25	공유지	원주시	-				
21	원주시 관설동	1281-4	전	8	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22	원주시 관설동	1301-4	답	18	1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계				622	622							

2) 대로3-10호 (변경)

(기정)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81-27	전	105	10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효자로 586, 102동 802호(쇄운동, 동해석미모닝파크)	이종민	1/2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88-12, 102동 801호(호평동, 오네뜨센트럴)	이종익	1/2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2	원주시 관설동	1283-5	전	31	3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22, 103동 305호 (단구동,현진에버빌1)	안상훈	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22, 103동 305호 (단구동,현진에버빌1)	한혜숙	1/2				
3	원주시 관설동	1285-4	전	394	394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32번길 10, 205동 504호 (원동,오산역e-편한세 상아파트)	이영자	-				
4	원주시 관설동	1286	전	420	2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367-18(관설동)	배양순	-				
5	원주시 관설동	1287-5	전	24	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6	원주시 관설동	1287-8	전	1,183	1,183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도호길 112	김진광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521(관설동)	관부농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자	
7	원주시 관설동	1287-9	전	15	15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도호길 112	김진광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521(관설동)	관부농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자	
8	원주시 관설동	1287-11	전	270	27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개운로 30, 107동 602호 (개운동,휴먼시아원주 개운1단지아파트)	이연순	-				
9	원주시 관설동	1288-3	답	639	63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0	원주시 관설동	1288-9	답	129	12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1	원주시 관설동	1300-18	전	903	624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295-268(화산리)	박종웅	1/3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안로 211	장익수	1/3				
						경상북도 경주시 능원길 22, 104동 402호(도지동,코아루 그랑블)	장태수	1/3				
12	원주시 관설동	1301-6	답	644	64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효자로 586, 102동	이종민	1/2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802호(쇄운동, 동해석미모닝파크)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88-12, 102동 801호(호평동, 오네뜨센트럴)	이종익	1/2				
13	원주시 관설동	1301-9	답	316	31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57, 105동 601호 (단구동,단구신성미소 지움아파트)	김경숙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857-2	원주농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14	원주시 관설동	산169-1 4	임	2,429	431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142번길 20, 205동 1102호 (휴천동,남산현대아파 트)	강명구	-				
계				7,502	4,829							

(변경)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81-27	전	105	10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2	원주시 관설동	1283-5	전	31	3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22, 103동 305호 (단구동,현진에버빌1)	안상훈	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22, 103동 305호 (단구동,현진에버빌1)	한혜숙	1/2				
3	원주시 관설동	1285-4	전	394	39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4	원주시 관설동	1286-4	전	24	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5	원주시 관설동	1287-5	전	24	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6	원주시 관설동	1287-8	전	1,183	1,18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7	원주시 관설동	1287-9	전	15	1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8	원주시 관설동	1287-11	전	270	27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9	원주시 관설동	1288-3	답	639	63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0	원주시 관설동	1288-9	답	129	12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1	원주시 관설동	1300-23	전	624	6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2	원주시 관설동	1301-6	답	644	64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3	원주시 관설동	1301-9	답	316	316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4	원주시 관설동	1286-5	임	431	43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계				4,829	4,829							

3) 중로2-113호 (변경)

(기정)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85-3	전	143	143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32번길 10, 205동 504호 (원동,오산역e-편한세 상아파트)	이영자	-				
2	원주시 관설동	1287-4	전	445	44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3	원주시 관설동	1287-7	전	2	2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도호길 112	김진광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521(관설동)	관부농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자	
4	원주시 관설동	1288-2	답	331	33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5	원주시 관설동	1289-1	답	119	11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6	원주시 관설동	1291-3	답	1,283	1,28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7	원주시 관설동	1293	전	137	13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8	원주시 관설동	1294-3	답	361	36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9	원주시	1295-5	대	14	14	부산광역시 남구	주택도시보	-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관설동					문현금융로 40	증공사					
10	원주시 관설동	1339	답	563	56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1	원주시 관설동	1339-7	도	89	89	공유지	원주시	-				
12	원주시 관설동	1340	답	441	44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3	원주시 관설동	1340-8	답	195	19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4	원주시 관설동	1341-4	답	238	23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5	원주시 관설동	산169-1 4	임	2,429	3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142번길 20, 205동 1102호 (휴천동,남산현대아파 트)	강명구	-				
16	원주시 관설동	1294-1	임	1,020	1,02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7	원주시 관설동	1294-2	임	1,045	1,04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8	원주시 관설동	1339-6	답	4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카이트타워)	한국자산신 탁주식회사	-				
19	원주시 관설동	1340-7	답	911	6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카이트타워)	한국자산신 탁주식회사	-				
계				9,770	6,498							

(변경)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85-3	전	143	14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2	원주시 관설동	1287-4	전	445	44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3	원주시 관설동	1287-7	전	2	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4	원주시 관설동	1288-2	답	331	33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5	원주시 관설동	1289-1	답	119	11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6	원주시 관설동	1291-3	답	1,283	1,28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7	원주시 관설동	1293	전	137	13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8	원주시 관설동	1294-3	답	361	36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9	원주시 관설동	1295-5	대	14	1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0	원주시 관설동	1339	답	563	56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1	원주시 관설동	1339-7	도	89	89	공유지	원주시	-				
12	원주시 관설동	1340	답	441	44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3	원주시 관설동	1340-8	답	195	19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4	원주시 관설동	1341-4	답	238	23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5	원주시 관설동	1286-7	임	3	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6	원주시 관설동	1294-1	임	1,020	1,02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7	원주시 관설동	1294-2	임	1,045	1,04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8	원주시 관설동	1339-6	답	4	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19	원주시 관설동	1340-7	답	911	6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계				7,344	6,498							

4) 소로2-618호 (변경없음)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88-5	답	40	4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계				40	40							

5) 완충녹지26호 (변경)

(기정)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88-4	답	237	23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2	원주시 관설동	1288-6	답	14	1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3	원주시 관설동	1288-10	답	77	7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4	원주시 관설동	1300-22	전	112	11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읍지마을길 20-30	엄정태	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설동 1494-12	관부농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3번길 77-16 (정발산동)	공정남	1/2				
5	원주시 관설동	1301-8	답	5	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효자로 586, 102동 802호(쇄운동, 동해석미모닝파크)	이종민	1/2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88-12, 102동 801호(호평동, 오네뜨센트럴)	이종익	1/2				
6	원주시 관설동	1301-10	답	144	14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57, 105동 601호 (단구동, 단구신성미소 지움아파트)	김경숙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857-2	원주농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계				589	589							

(변경)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88-4	답	237	23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2	원주시 관설동	1288-6	답	14	1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3	원주시 관설동	1288-10	답	77	7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4	원주시 관설동	1300-22	전	112	11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읍지마을길 20-30	엄정태	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설동 1494-12	관부농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3번길 77-16 (정발산동)	공정남	1/2				
5	원주시 관설동	1301-8	답	5	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6	원주시 관설동	1301-10	답	144	14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				
계				589	589							

■ 지장물조사

1) 대로1-4호 (변경없음)

순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 내용	
1	관설동 1297-5	화력주	-	1	EA	우산로122	한국전력공사				
2	관설동 1297-14	화력주	-	1	EA	우산로 122	한국전력공사				
3	관설동 1297-14	통신주	-	1	EA		한국통신				
4	관설동 1297-39	통신주	-	1	EA		한국통신				
5	관설동 1297-42	가로등	-	1	EA						
6	관설동 1299-1	통신주	-	1	EA		한국통신				
7	관설동 1299-2	통신주	-	1	EA		한국통신				
8	관설동 1302-1	가로등	-	1	EA						
9	관설동 1333-1	통신주	-	1	EA		한국통신				
10	관설동 1333-1	가로등	-	3	EA						
11	관설동 1333-1	화력주	-	2	EA	우산로 122	한국전력공사				

2) 증로2-113호 (변경없음)

순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 내용	
1	관설동 산169-43	화력주	-	1	EA	우산로 122	한국전력공사				
2	관설동 산169-43	통신주	-	1	EA		한국통신				
3	관설동 산169-44	통신주	-	1	EA		한국통신				

강릉시 고시 제2025-101호

강릉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신원아침도시~안목간 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 중로1-7호선) 사업(2공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76-37호(1976. 03. 27.), 강원도 고시 제1988-140호(1988.12.03.)로 최초 결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견소동 215-4 일원 “신원아침도시~안목간 도시계획도로(도로: 중로2-1호선, 중로1-7호선) 사업(2공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9일

강릉시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로2-1호선)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2~15	보조 간선 도로	8,460	대1-4 홍제동 761-16	중1-7 견소동 215-4	일반 도로	-	1976. 3. 27		
변경	중로	2	1	12~15 (15)	보조 간선 도로	8,460 (585.9)	대1-4 홍제동 761-16	중1-7 견소동 215-4	일반 도로	-	1976. 3. 27	도로선형, 모퉁이 변경	

주 : ()는 금회 변경되는 폭원 및 연장임

2)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로2-1호선)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호선	도로선형 및 모퉁이변 변경	공항대로 교차지점과 순두부젤라또 삼거리지점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선형 및 모퉁이변 변경

3) 강릉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로2-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읍생략

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견소동 215-4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호선, 중로1-7호선)사업
- 2) 명 칭: 신원아침도시~안목간 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 중로1-7호선)사업(2공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중로2-1호선: L=585.9m, B=7.5~9.5m, A=6,484㎡
- 중로1-7호선: L=166m, B=3m, A=62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시 점	중 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총 연장	금회 시행	미 시행				
도로	중로	2	1	12~15 (7.5~9.5)	보조 간선 도로	8,460	585.9	-	견소동 215-4	견소동 215-4	건설부 고시 제1976-37호 (1976. 03. 27.)	
도로	중로	1	7	20 (3)	보조 간선 도로	554	166	-	견소동 215-4	견소동 215-4	강릉시 고시 제1988-140호 (1988. 12. 03.)	

주) ()는 금회 시행되는 폭원임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6층(삼성동, 연당빌딩)
- 2) 성 명: (주)도원강릉개발 대표이사 이병권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026년 2월 28일

바. 자금조달계획

- 1) 총사업비: 8,328백만원

구 분	소 요 자 금(백만원)	비 고
합 계	8,328	자기자본 100%
토지매입비	599	
개설공사비	7,687	
지장물보상비	42	

- 2) 자금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중로2-1호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89,641	6,484	-				
1	견소동	190-1	전	3,303	123	사○식	속초시 만리공원길	강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
						김○이	강릉시 경강로			1/2
2	견소동	190-76	잡	3,124	180	유○황	강릉시 선수천로	강릉 ○○ 협동조합	강릉시 용지로	15/100
						최○인	강릉시 선수천로			15/100
						강릉○○ 주식회사	강릉시 강릉대로			50/100
						강릉○○ 주식회사	강릉시 강변로			1/5
3	견소동	190-79	전	6,424	211	최○기	강릉시 강릉대로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4/5
						최○철	강릉시 경강로			1/5
4	견소동	190-80	도	3,997	231	강릉시	-	-	-	-
5	견소동	190-82	대	508	4	김○준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6	견소동	190-85	전	2	2	김○준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	-	-
7	견소동	215-4	제	44,562	5,718	국 (환경부)	-	-	-	-
8	견소동	223-1	대	27,721	15	국 (경찰청)	-	-	-	-

2) 중로1-7호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44,562	629	-				
1	견소동	215-4	제	44,562	629	국 (환경부)	-	-	-	-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시설내용	면적(㎡)	비고
도로	소 계	B=3~9.5m, L=751.9m	7,113	도로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중로2-1호선	B=7.5~9.5m, L=585.9m	6,484	
	중로1-7호선	B=3m, L=166m	629	

2) 무상귀속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41,082	535	-				
1	견소동	190-1	전	3,303	123	사○식	속초시 만리공원길	강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
						김○이	강릉시 경강로			1/2
2	견소동	190-76	잡	3,124	180	유○황	강릉시 선수천로	강릉 ○○ 협동조합	강릉시 용지로	15/100
						최○인	강릉시 선수천로			15/100
						강릉○○ 주식회사	강릉시 강릉대로			50/100
						강릉○○ 주식회사	강릉시 강변로			1/5
3	견소동	190-79	전	6,424	211	최○기	강릉시 강릉대로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4/5
						최○철	강릉시 경강로			1/5
4	견소동	190-82	대	508	4	김○준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5	견소동	190-85	전	2	2	김○준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	-	-
6	견소동	223-1	대	27,721	15	국 (경찰청)	-	-	-	-

강릉시 고시 제2025-106호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75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70, 71호(1977.4.19.)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교동 108-8번지 일원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75호선) 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강릉시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강릉시 교동 108-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75호선) 사업
- 2) 명 칭: 강릉 도시계획도로(중로2-75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중로	2	75	15	보조 간선도로	85	대로3-3 포남동 983	중로1-34 교동 108-16대	강원도 고시 제70,71호 (1977.4.19.)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285, 219호(교동,강릉역블루핀)
- 2) 성 명: 주식회사 베스트엔비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025. 12. 31.

바. 자금조달계획

- 1) 총사업비: 126,720,000원
- 2) 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자 100%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시설내용	면 적 (㎡)	비 고
도로	중로2-75호선	L=85m, B=15m	1,359	도시계획도로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 계				6,570	1,359			-	-	
1	교동	108-8	철	11	11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	-	
2	교동	109-3	대	13	13	국	국토교통부	-	-	
3	교동	112-4	대	7	7	국	국토교통부	-	-	
4	교동	112-6	대	1	1	국	국토교통부	-	-	
5	교동	112-14	대	109	1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	-	
6	포남동	838-7	잡	26	26	국	기획재정부	-	-	
7	포남동	851-9	철	96	96	국	기획재정부	-	-	
8	포남동	852-17	대	2	2	강릉시	-	-	-	
9	포남동	983	도	6,282.5	1,166	강릉시	-			
10	포남동	1042-4	철	22	22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강릉시 고시 제2025-107호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8호선,중로2-16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릉시 고시 제2015-159(2015.6.2.)호 및 강릉시 고시 제2010-89(2010.8.25.)호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송정동 산 30번지 일원의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8호선, 중로2-16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1

강릉시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강릉시 송정동 산3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8호선, 중로2-16호선)사업

2) 명 칭: 강릉 도시계획도로(대로2-8호선, 중로2-16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중 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총연장	금회시행				
도로	대로	2	8	30	보조간선도로	4,846	100	대로3-1 강문294유	중로1-7 견소196-1대	강릉시고시 제2015-159호 (2015.6.2.)	-
도로	중로	2	16	15	집산도로	530	60	대로3-5 송정185-2	도립공원 구역계 송정 산30-3	강릉시고시 제2010-89호 (2010.8.25.)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용지로 20(입암동)

2) 성 명: 강릉축산농업협동조합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025. 12. 31.

바. 자금조달계획

- 1) 총사업비: 119,670,000원
- 2) 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자 100%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시설내용	면 적 (㎡)	비 고
도로	대로2-8호선	L=100m, B=5~8m	589	도시계획도로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도로	중로2-16호선	L=60m, B=8m	625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도로 (2-8)						도로 (2-16)
합 계					1,214	589	625	-	-	-	-	
1	송정동	산27-1	임	20,448	228	228	-	강릉시		-	-	
2	송정동	산31	임	118	9	9	-	강릉축산협동조합	강릉시 용지로	-	-	
3	송정동	산31-1	도	180	66	66	-	강릉시		-	-	
4	송정동	산30	임	9,285	648	180	468	강릉축산협동조합	강릉시 용지로	-	-	
5	송정동	산30-3	도	1,321	242	106	136	강릉시		-	-	
6	송정동	306-9	도	113	3	-	3	강릉시		-	-	
7	송정동	306-10	도	47	8	-	8	강릉시		-	-	
8	송정동	306-13	도	375	10	-	10	강릉시		-	-	

강릉시 고시 제2025-109호

강릉 도시관리계획(건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1. 강릉시 고시 제2025-79호(2025. 3. 4.)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되어 의제 처리된 강릉 도시관리계획(건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e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강릉시장

1. 고시 취지 : 강릉시 고시 제2025-79호(2025. 3. 4.)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되어 의제 처리된 강릉 도시관리계획(건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지형도면 고시 하고자 함
 ※ 강릉시 고시 제2025-79(2025. 3. 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공간정보 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면적 변경(지적 분할) 사항을 반영
2. 위 치 : 강릉시 건소동 244-2번지 일원
3. 강릉 도시관리계획(건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없음)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①	건소지구	강릉시 건소동 244-2 일원	38,887	-	38,887	강릉시 고시 제2021-359호 (2021. 12. 29.)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38,887	-	38,887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① 도로 총괄표(변경)

유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	5,159 (248)	20,237 (1,368)	-	-	-	1	4,846 (142)	15,595 (384)	1	313 (106)	4,642 (984)
	변경	2	5,159 (248)	20,237 (1,352)	-	-	-	1	4,846 (142)	15,595 (370)	1	313 (106)	4,642 (982)
대로	기정	1	4,846 (142)	15,595 (384)	-	-	-	1	4,846 (142)	15,595 (384)	-	-	-
	변경	1	4,846 (142)	15,595 (370)	-	-	-	1	4,846 (142)	15,595 (370)	-	-	-
중로	기정	1	313 (106)	4,642 (984)	-	-	-	-	-	-	1	313 (106)	4,642 (984)
	변경	1	313 (106)	4,642 (982)	-	-	-	-	-	-	1	313 (106)	4,642 (982)

주) ()는 사업대상지내 연장 및 면적임

②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8	30~33 (3)	보조 간선 도로	4,846 (142)	대로3-1 강문294유	중로1-7 견소196-1대	일반 도로	-	강릉시 고시 제2015-159호 (2015.6.2.)	
변경	대로	2	8	30~33 (3)	보조 간선 도로	4,846 (142)	대로3-1 강문294유	중로1-7 견소196-1대	일반 도로	-	강릉시 고시 제2015-159호 (2015.6.2.)	면적 변경
기정	중로	3	13	12~23 (6~11)	집산 도로	313 (106)	대로3-5	대로2-8	일반 도로	-	강릉시 고시 제88-140호 (1988.12.3.)	
변경	중로	3	13	12~23 (6~11)	집산 도로	313 (106)	대로3-5	대로2-8	일반 도로	-	강릉시 고시 제88-140호 (1988.12.3.)	면적 변경

주) ()는 사업대상지내 개설하는 폭원 및 연장임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합 계	38,887	38,887	-	-	38,887	38,887	
소 계	37,519	37,535	-	-	37,519	37,535	
1	37,519	37,535	1-1	강릉시 견소동 244-2번지 일원	37,519	37,53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소 계	1,368	1,352	-	-	1,368	1,352	
2	1,368	1,352	2-1	강릉시 견소동 245번지 일원	384	370	• 변속차로 (대로2-8호선)
			2-2	강릉시 견소동 198번지 일원	984	982	• 도로확장 및 변속차로 (중로3-13호선)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1	강릉시 견소동 244-2 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48% 이하	
		높 이	• 17층 이하	
		배 치	• 지형, 일조, 경관 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주동은 경관적 측면을 고려 한 방향으로 75m 이하로 권장	
		색 채	• 강릉시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가이드라인 준용	
		건축선	•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물의 벽면이 건축한계선을 넘을 수 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없음)

①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가구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	<p>■ 교통처리</p> <p>단지 내 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이 되도록 설치 - 보행공간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의 비율을 최대한 확보 -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연결성이 용이하도록 설치 <p>주차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p>■ 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 대지 또는 인접도로의 소음저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형 단차 극복, 안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으며, 투시형 또는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마감하는 것을 권장 <p>■ 단지 내 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 면적은 관련 법규상 기준 면적 이상 충분히 확보 - 상징적 주제공원은 1개소 이상 조성할 것을 권장 <p>■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주요 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수집공간을 설치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 - 사업시행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안내판, 포장패턴 및 가로시설물 등 종합적인 디자인계획을 가능한 수립하여 설치 	

② 구역 밖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	<p>■ 구역 밖 기반시설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1개 노선(기부채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2-8호선(안목사거리~신도브레뉴 삼거리까지 폭 30m 완전개설) 2. 공용주차장 조성 비용 현금납부 	

4. 강릉 도시관리계획(건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 실음 생략

강릉시 고시 제2025-113호

강릉 향호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8-7(향호호수) 일원 「강릉 향호정원 편입 예정부지」에 대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릉 향호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강릉시장

1.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강릉 향호정원 예정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위 치 :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8-7(향호호수) 일원
- 면 적 : 1,035,335㎡

2. 지정목적

- 강릉 북부권 관광휴양지 조성계획과 병행한 주문진 향호(香湖)에 정원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정원 문화·관광 거점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고
- 시·군 인접지역의 친해 관광자원을 활용한 신규 콘텐츠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강릉만의 특화된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3. 지정기간 : 2025. 3. ~ 2029. 12.

4 토지의 지번·지목별 내역 : “별첨”

5. 지형도면 : “별첨”

6.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강릉시청 녹지과☎(033-640-5901)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편입토지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합계		437필지		1,195,596	1,035,335		
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2	철	324	324	건설교통부	
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3	도	1,455	1,455	건설부	
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	도	50	50	건설부	
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7	철	33	33	건설교통부	
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8	전	43	43	김O규	
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9	도	112	63	건설부	
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2-1	철	145	145	건설교통부	
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3-3	철	48	48	국토교통부	
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3-4	철	392	151	국토교통부	
1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3-7	도	2,001	2,001	건설부	
1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3-10	도	67	67	건설부	
1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4-4	도	3,542	3,542	강릉시	
1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44-3	구	50	50	한국농어촌공사	
1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45-6	구	64	64	미등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1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46-1	전	79	79	서0수	
1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46-4	구	67	67	강릉시	
1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47-1	전	683	683	서0수	
1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47-2	도	158	158	강릉시	
1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47-5	구	371	371	한국농어촌공사	
2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47-6	구	29	29	강릉시	
2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65-1	구	44	44	한국농어촌공사	
2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66-1	구	68	68	십0섭외2인	
2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66	답	348	348	십0승	
2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67-1	구	35	35	허0행외2인	
2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69-1	구	63	63	허0태외2인	
2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0	전	2,788	2,788	전0희	
2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2-1	전	1,512	1,512	건설교통부, 강릉시	
2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2-7	전	16	16	신0남	
2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2-9	전	604	604	강릉시	
3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2-10	전	4,241	4,241	강릉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3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2-11	전	1,613	1,613	강O자외1인	
3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2-12	전	65	65	건설교통부, 강릉시	
3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3	잡	419	419	이O용	
3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4	잡	1,171	325	국방부	
3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5	잡	352	352	국방부	
3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6	전	625	625	강릉시	
3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9	잡	396	396	이O용	
3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10	잡	4,456	4,456	이O용	
3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11	전	2,390	374	황O원외2인	
4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17	잡	2,020	589	국방부	
4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20	도	502	502	이O용	
4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21	도	3,412	3,412	이O용	
4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22	잡	945	945	이O용	
4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23	도	430	430	이O용	
4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24	전	40	40	강릉시, 이O성	
4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28	잡	16	16	국방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4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33	잡	772	128	이O용	
4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34	잡	3,142	3,142	이O용	
4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36	잡	2,051	2,051	국방부	
5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38	잡	314	314	강릉시	
5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39	구	780	780	강릉시	
5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40	잡	17,175	17,175	강릉시	
5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41	유	1,276	1,276	강릉시	
5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42	잡	13,945	13,945	강릉시	
5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54	철	13,418	759	국토교통부	
5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55	철	388	388	국토교통부	
5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80-8	잡	440	440	국방부	
5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80-10	잡	892	892	국방부	
5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82-1	도	112	112	이O섭	
6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82-3	도	178	178	강릉시	
6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82-4	잡	552	552	국방부	
6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82-5	도	26	26	국방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6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82-6	답	668	668	강릉시	
6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95-1	도	142	142	이O섭	
6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96-2	도	317	317	이O섭	
6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96-4	도	129	129	이O섭	
6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96-5	임	679	299	국방부	
6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98-4	도	33	33	이O만	
6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98-7	전	11	11	최O자	
7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99-1	도	60	60	황O호	
7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00	전	1,002	18	황O호	
7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00-1	도	36	36	황O호	
7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08-1	도	126	126	이O섭	
7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09	답	99	99	이O봉	
7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09-7	도	175	175	이O극	
7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09-8	답	146	146	이O봉	
7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2-1	답	472	472	박O훈	
7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3	대	1,338	1,338	강릉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7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3-1	대	811	811	강릉시	
8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4	전	949	949	미등기	
8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5	대	608	608	정O철	
8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6	답	4,942	4,942	정O호	
8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6-1	전	367	367	정O호	
8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6-2	전	149	149	정O호	
8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8	전	2,238	2,238	정O호	
8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9	답	2,740	2,740	정O조	
8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20-1	전	3,484	3,484	김O옥	
8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20-2	대	436	436	정O호	
8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20-3	대	446	446	정O조	
9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21	대	231	231	정O호	
9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21-1	대	549	549	미등기	
9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22-1	답	138	138	김O시	
9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22-4	답	31	31	김O시	
9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23	답	90	90	정O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9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31-4	답	259	259	정0하	
9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32-3	답	26	26	이0기	
9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1-1	전	1,798	1,798	정0조	
9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1-2	대	350	350	정0조	
9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1-3	대	198	198	정0조	
10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2	답	1,217	1,217	정0호	
10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2-2	답	724	724	정0호	
10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3	답	3,040	3,040	정0호	
10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6	답	3,203	3,203	정0호	
10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64	답	184	184	이0연	
10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497	답	882	882	박0식	
10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02-4	도	152	152	이0봉	
10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15	답	395	395	주0철	
10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15-1	전	1,137	1,137	미등기	
10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16	전	202	202	미등기	
11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16-1	전	1,201	1,201	미등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11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16-2	구	2	2	기재부	
11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22-1	구	1,050	1,050	한국농어촌공사	
11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22-2	구	95	95	정0연	
11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23-1	전	1,531	1,531	김0화	
11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23-2	구	425	425	정0철	
11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23-3	전	230	230	김0화	
11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23-5	구	3,189	3,189	한국농어촌공사	
11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24	도	179	179	이0수	
11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25-1	도	261	261	이0수	
12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25-2	전	280	280	이0수	
12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35-1	도	218	218	강릉시	
12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36	전	16	16	이0섭	
12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36-1	도	93	93	이0섭	
12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37	전	87	87	이0섭	
12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38	도	242	242	최0규	
12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41-1	도	314	314	이0춘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12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41-3	도	16	16	이O춘	
12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55-1	도	86	86	김O고	
12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55-2	도	63	63	김O고	
13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58-2	도	60	60	이O억	
13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58-3	전	238	238	윤O길	
13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58-4	도	188	188	강릉시	
13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58-5	전	233	233	이O섭	
13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59-3	도	40	40	정O윤	
13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59-4	도	33	33	정O윤	
13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69-3	도	3	3	초계정씨경방파신리 종중	
13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69-4	도	208	208	초계정씨경방파신리 종중	
13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70-1	도	7	7	이O철	
13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71-3	도	492	492	최O길	
14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71-5	도	7	7	최O길	
14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72-2	도	13	13	최O규	
14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72-3	도	350	350	최O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14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73-4	답	97	97	이O섭	
14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73-10	답	1,420	1,420	이O섭	
14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74-4	답	2,721	2,721	심O섭	
14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74-6	구	144	144	이O덕	
14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75	답	1,442	1,442	이O권	
14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582-1	도	360	360	이O호	
14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622-1	답	2,195	2,195	최O자	
15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623	전	1,107	1,107	정O진	
15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624	답	549	549	장O자	
15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625	전	692	692	정O하	
15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86	도	413	413	건설부	
15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87	도	11,069	800	건설부	
15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89-1	구	517	517	건설부	
15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89-2	도	96	96	건설부	
15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89-3	구	72	72	건설부	
15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90-6	천	1,632	1,632	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15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96-2	도	586	586	건설부	
16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96-3	도	622	622	건설부	
16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96	도	617	617	건설부	
16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98	천	11,228	128	건설부	
16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99	도	1,614	32	건설부	
16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99-1	도	972	187	건설부	
16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99-2	도	62	62	건설부	
16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99-3	도	2,602	812	건설부	
16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06	답	1,980	1,980	김O섭	
16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07	답	2,300	2,300	김O섭	
16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08	답	2,558	2,558	김O섭	
17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09	답	2,557	2,557	김O자	
17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10	답	2,431	2,431	이O정	
17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11	답	2,467	2,467	이O연	
17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12	답	2,643	2,643	이O연	
17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13	답	2,810	2,810	이O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17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14	답	1,519	1,519	이O규	
17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15	도	9,250	3,038	농림축산식품부	
17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15-1	도	8	8	농림수산부	
17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15-2	도	2,139	2,139	농림수산부	
17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15-3	도	27	27	농림수산부	
18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15-4	도	26	26	농림수산부	
18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15-5	도	45	45	농림수산부	
18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15-6	도	621	621	농림수산부	
18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15-7	도	10	10	농림수산부	
18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15-8	도	192	192	농림수산부	
18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25	도	2,155	2,155	농림축산식품부	
18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26	답	1,705	1,705	이O연	
18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27	답	1,055	1,055	박O경외3인	
18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28	답	1,332	1,332	박O경외3인	
18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29	답	2,643	2,643	박O경외3인	
19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30	답	2,973	2,973	김O민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19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31	답	1,306	1,306	김O민	
19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32	답	1,258	1,258	함O임	
19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32-1	답	152	152	함O임	
19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32-2	답	9	9	함O임	
19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32-3	답	1	1	함O임	
19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33	답	2,166	2,166	정O호	
19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34	답	1,598	1,598	김O식	
19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35	답	1,454	1,454	신O출	
19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36	답	2,771	2,771	신O출	
20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36-1	답	87	87	한국농어촌공사	
20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38	구	705	661	농림축산식품부	
20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39	답	2,402	2,402	남O현	
20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40	답	1,959	1,959	정O시	
20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41	답	1,001	1,001	최O문	
20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42	답	3,004	3,004	최O문	
20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43	답	2,585	2,585	김O숙외1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20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43-1	답	355	355	한국농어촌공사	
20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44	도	575	575	농림축산식품부	
20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45	구	345	345	농림축산식품부	
21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45-1	구	31	31	농림수산부	
21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46	도	720	720	농림축산식품부	
21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46-1	도	586	586	농림수산부	
21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47	답	638	638	강릉시	
21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47-1	답	368	368	한국농어촌공사	
21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48	답	1,937	1,937	강릉시	
21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49	답	2,942	2,942	강릉시	
21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50	답	1,980	1,980	김O원	
21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51	답	1,013	1,013	강릉시	
21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52	답	1,844	1,844	강릉시	
22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53	답	2,714	2,714	강릉시	
22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55	구	677	677	농림축산식품부	
22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55-1	구	41	41	농림수산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22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56	답	2,389	2,389	심O승	
22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57	답	1,498	1,498	최O규	
22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58	답	2,971	2,971	강릉시	
22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59	답	1,972	1,972	최O열	
22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60	답	1,027	1,027	최O인	
22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61	답	955	955	최O인	
22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62	답	3,990	3,990	정O진	
23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63	답	532	532	정O현	
23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63-1	답	382	382	한국농어촌공사	
23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64	도	516	516	농림축산식품부	
23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65	도	137	137	농림축산식품부	
23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65-1	도	10	10	농림수산부	
23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65-2	도	3,671	3,671	농림수산부	
23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66	답	1,307	1,307	기재부	
23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67	답	1,963	1,963	이O자	
23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67-1	답	169	169	한국농어촌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23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68	답	1,200	1,200	김O숙외1인	
24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69	답	2,050	2,050	김O시	
24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69-1	답	353	353	한국농어촌공사	
24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70	답	3,921	3,921	정O하	
24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71	답	2,395	2,395	이O기	
24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72	답	1,378	1,378	기재부	
24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73	답	2,902	2,902	기재부	
24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74	답	994	994	심O배	
24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75	답	982	982	심O배	
24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76	답	988	988	이O호외18인	
24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77	답	1,320	1,320	기재부	
25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78	답	1,666	1,666	장O자	
25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79	답	2,402	2,402	김O자	
25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80	답	592	592	정O하	
25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80-1	답	500	500	재무부	
25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81	도	899	899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25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82	답	562	562	기재부	
25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82-1	답	160	160	한국농어촌공사	
25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83	답	1,413	1,413	정O기	
25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84	답	978	978	기재부	
25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85	답	2,299	2,299	김O식	
26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86	답	1,774	1,774	김O식	
26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87	전	3,877	3,877	이O옥	
26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88	답	2,620	2,620	김O섭	
26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89	답	862	862	김O섭	
26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0	전	2,253	2,253	김O규	
26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1	답	2,512	2,512	기재부	
26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1-1	답	399	399	한국농어촌공사	
26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2	제	993	993	농림축산식품부	
26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2-1	제	11	11	농림수산부	
26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3	도	418	418	농림축산식품부	
27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3-1	도	8	8	농림수산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27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3-2	도	1,178	1,178	농림수산부	
27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4	계	1,573	1,573	농림축산식품부	
27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5	답	378	378	기재부	
27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5-1	답	342	342	기재부	
27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6	답	1,437	1,437	기재부	
27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6-1	답	211	211	한국농어촌공사	
27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7	답	1,433	1,433	기재부	
27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7-1	답	116	116	한국농어촌공사	
27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8	답	1,484	1,484	기재부	
28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499	답	2,329	2,329	기재부	
28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00	답	1,649	1,649	기재부	
28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01	답	1,138	1,138	기재부	
28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02	답	2,685	2,685	기재부	
28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03	답	2,689	2,689	기재부	
28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04	답	2,477	2,477	기재부	
28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04-1	답	589	589	기재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28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05	도	464	464	농림축산식품부	
28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05-1	도	16	16	농림수산부	
28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06	답	2,240	2,240	기재부	
29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06-1	답	74	74	기재부	
29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07	도	987	987	농림축산식품부	
29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08	도	543	543	농림축산식품부	
29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08-1	도	468	468	농림수산부	
29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09	계	877	877	농림축산식품부	
29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10	답	1,667	1,667	기재부	
29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11	답	2,222	2,222	기재부	
29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12	답	1,908	1,908	기재부	
29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13	답	490	490	기재부	
29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14	답	2,410	2,410	기재부	
30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15	답	3,088	3,088	기재부	
30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15-1	답	912	912	한국농어촌공사	
30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16	구	538	538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30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16-1	구	33	33	농림수산부	
30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17	천	33,254	10,534	농림축산식품부	
30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19	구	4,323	4,323	농림축산식품부	
30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19-1	구	13	13	농림수산부	
30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20	답	1,000	1,000	기재부	
30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20-1	답	2,454	2,454	이O만	
30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21	천	9,098	9,098	농림수산부	
31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22	도	1,149	1,149	농림축산식품부	
31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23	전	983	983	이O만	
31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24	전	2,436	2,436	이O만	
31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25	답	1,045	1,045	홍O원	
31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26	답	831	831	이O섭	
31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27	구	469	469	농림축산식품부	
31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28	답	2,203	2,203	조O현	
31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29	답	2,334	2,334	이O섭	
31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30	답	1,210	1,210	이O섭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31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31	답	1,568	1,568	김O화	
32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32	답	3,282	3,282	이O기	
32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33	답	1,568	1,568	최O화	
32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34	도	477	477	농림축산식품부	
32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35	답	2,247	2,247	이O기	
32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36	답	309	309	이O덕	
32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36-1	답	18	18	한국농어촌공사	
32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37	구	101	101	농림축산식품부	
32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38	답	634	634	이O덕	
32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38-1	답	267	267	한국농어촌공사	
32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39	답	2,086	2,086	이O덕	
33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40	답	2,050	2,050	윤O길	
33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41	전	897	897	윤O길	
33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41-1	전	109	109	한국농어촌공사	
33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42	답	1,270	1,270	이O섭	
33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43	도	1,299	1,299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33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44	답	1,000	1,000	기재부	
33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44-1	답	2,999	2,999	최O화	
33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45	답	3,164	3,164	정O관	
33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46	답	2,412	2,412	정O시	
33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47	구	4,986	3,765	농림축산식품부	
34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48	도	1,160	1,160	농림축산식품부	
34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49	답	2,179	2,179	김O옥	
34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50	답	900	900	기재부	
34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50-1	답	3,457	3,457	박O원	
34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51	구	185	185	농림축산식품부	
34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52	답	778	778	김O옥	
34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53	답	300	300	기재부	
34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53-1	답	872	872	박O원	
34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54	답	2,144	2,144	정O길	
34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55	답	578	578	기재부	
35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56	답	1,753	1,753	이O섭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35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57	답	2,466	2,466	이O섭	
35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58	도	3,422	3,422	농림축산식품부	
35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59	답	2,171	2,171	정O시	
35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64	답	880	880	기재부	
35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64-1	답	362	362	한국농어촌공사	
35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65	답	2,442	2,442	이O호	
35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66	답	1,583	1,583	이O봉	
35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67	답	1,997	1,997	정O환	
35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68	도	454	454	농림축산식품부	
36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68-1	도	16	16	농림수산부	
36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69	답	2,343	2,343	선O영	
36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69-1	답	425	425	한국농어촌공사	
36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70	답	1,838	1,838	강릉시	
36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71	답	3,437	3,437	강릉시	
36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72	답	3,194	3,194	이O만	
36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73	답	1,879	1,879	이O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36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74	답	1,138	1,138	기재부	
36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75	답	2,779	2,779	기재부	
36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76	답	1,389	1,389	정O환	
37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77	답	1,479	1,479	전의이씨시정공파향 호종중	
37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78	답	1,473	1,473	전의이씨시정공파향 호종중	
37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79	답	3,358	3,358	이O섭	
37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80	답	3,344	3,344	권O식	
37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81	답	1,469	1,469	권O식	
37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82	답	1,941	1,941	홍O춘	
37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83	답	3,302	3,302	박O식	
37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84	답	1,203	1,203	박O식	
37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85	답	2,044	2,044	조O환	
37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86	답	2,552	2,552	이O봉	
38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87	답	1,827	1,827	전의이씨선전공파향 호종중회	
38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88	답	1,370	1,370	신O숙	
38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89	답	2,914	2,914	기재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38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90	답	2,318	2,318	장O자외1인	
38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91	답	2,096	2,096	기재부	
38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92	답	1,364	1,364	기재부	
38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94	답	2,522	2,522	기재부	
38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3-1	도	198	198	건설부	
38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3	임	2,479	2,479	강릉시	
38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6	임	3,471	3,471	산림청	
39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7	임	4,760	4,760	김해김씨안경공파회 유조종중	
39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8-1	임	5,455	5,455	강릉시	
39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4-5	임	9,730	9,730	김O덕외4인	
39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5-3	도	198	143	건설교통부	
39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8-1	임	22,175	22,175	강릉시	
39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8-3	도	2,479	705	건설교통부	
39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8-5	도	6,248	6,248	기재부	
39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8-7	유	351,225	351,225	기재부	
39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8-8	임	10,538	263	강릉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39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8-13	임	1,033	1,033	강릉시	
40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8-14	유	270	270	기재부	
40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9-18	도	595	595	이O섭	
40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9-19	임	1,190	1,190	강릉시	
40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9-20	도	1,190	1,190	이O섭	
40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9-28	임	120	120	강릉시	
40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9-29	임	3,188	3,188	강릉시	
40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65-13	임	29,012	776	최O식	
40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65-3	임	2,083	116	이O섭	
40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65-4	임	7,041	171	이O섭	
40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71	임	3,862	19	허O회	
41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71-1	도	2,409	1,743	허O회	
41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71-3	임	791	38	허O회	
41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78	임	14,975	157	김O기외3인	
41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78-1	도	198	198	이O섭	
41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79-1	도	298	298	건설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41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79-2	임	133	133	강릉시	
41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98-1	임	41,884	41,884	이0덕	
41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99-3	임	793	793	정0연	
41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99-4	임	120	120	이0덕	
41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00	임	1,110	1,110	이0섭	
42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01-1	임	1,388	1,388	정0연	
42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01-2	임	860	860	정0연	
42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01-3	임	672	672	황0진	
42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01-4	임	1,245	1,245	정0환	
42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03-1	도	16,962	719	건설부	
42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36	임	3,570	3,570	정0조	
42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37	임	18,326	18,326	정0조	
42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38	임	370	370	권0의	
42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38-1	임	194	194	권0의	
42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39	임	992	992	최0자	
43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40	임	26,182	26,182	최0자외2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지 분]	주 소
43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41	임	8,231	8,231	김O인	
43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43	임	893	893	정O호	
433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44	임	1,884	1,884	최O호외1인	
434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147	임	16,661	16,661	정O조	
435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미등기	미등기	-	197	미등기	
436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미등기	미등기	-	15	미등기	
437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산9	임	5,355	5,355	산림청	

(붙임 2)



강릉시 공고 제2025-566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1. 강릉시 고시 제2014-268(2014. 9. 19.)호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 등)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 2. 구정리 산100 일원에 대중제 골프장 18홀 및 관광휴양시설 등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강릉시장

가. 열람목적: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나. 계획의 개요

- 1). 건 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안)
- 2). 위 치: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0 일원
- 3). 변경사유: 대중제 골프장 18홀 및 관광휴양시설을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당초 복합형(주거형, 관광·휴양형) 계획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변경 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하고자 함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상세 결정조서(안) “붙임” 참고

라.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 1). 열람 기간 : 2025. 3. 20. ~ 2025. 4. 3.(14일 이상)
- 2). 열람 장소 : 강릉시청 도시과(6층)
- 3). 의견 제출 : 열람 공고 기간 내 강릉시 도시과에 의견서 서면 제출

마.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바.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강릉시 도시과(☎033-640-5369)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안)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44,145	-	1,044,145	100.00	
관 리 지 역	계	1,022,327	증)21,818	1,044,145	100.00	
	계획관리지역	1,018,029	증)26,116	1,044,145	100.00	
	보전관리지역	4,298	감)4,298	-	0.00	
농림지역		21,818	감)21,818	-	0.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m ²)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2-4	보전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2,645	100이하	○18홀 대중제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2-5	보전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1,653	100이하	○18홀 대중제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1-3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1,818	100이하	○18홀 대중제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1	구정 골프&리조트	계	구정면 구정리 산100번지일원	1,002,909	증)41,236	1,044,145	강릉시고시 제2014-268호	
			주거형	구정면 구정리 37-84번지일원	438,125	감)438,125	-	강릉시고시 제2014-268호	
			관광·휴양형	구정면 구정리 산66번지일원	564,784	증)479,361	1,044,145	강릉시고시 제2014-268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구정 관광·휴양형 (골프&리조트)	◦복합형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변경: 1,002,909㎡ → 1,044,145㎡ 증) 41,236㎡	◦ 18홀 대중제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을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당초 복합형(주거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관광·휴양형 계획으로 변경 하고자 함.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문화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도서관	구정리 37-34 번지 일원	4,300	감)4,300	-	강릉시고시 제2014-268호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도서관	◦ 도시계획시설 폐지 : 4,300㎡	◦ 당초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은 거주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금번 관광·휴양형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폐지.

2) 방재시설

가) 하천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중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②	하천	소하천 (구정천)	구정리 산43-1번지 일원	구정리 산43-1번지 일원	강릉복합 단지	480 (4,420)	4~22	5,317 (3,660,000)	-	
변경	②	하천	소하천 (구정천)	구정리 28-16번지 일원	구정리 산43-1번지 일원	구정골프앤리 조트	550 (2,900)	4~22	11,565 (49,708)	-	

※주의 : ()는 구정천 총 연장 및 면적임.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 변경 - L=480m → 550m - A=5,317㎡ → 11,5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시 고시 제2016-364(2016.12.30.)호 소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반영.

나)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유수지	유수시설	구정리 산44-13번지 일원	1,750	감)1,750	-	강릉시 고시 제2014-268호	-
폐지	②	유수지	유수시설	구정리 37-107번지 일원	4,100	감)4,100	-	강릉시 고시 제2014-268호	-
폐지	③	유수지	유수시설	구정리 37-13번지 일원	1,850	감)1,850	-	강릉시 고시 제2014-268호	-
폐지	④	유수지	유수시설	구정리 37-25번지 일원	1,200	감)1,200	-	강릉시 고시 제2014-268호	-
폐지	⑤	유수지	유수시설	구정리 37-94번지 일원	3,840	감)3,840	-	강릉시 고시 제2014-268호	-
폐지	⑥	유수지	유수시설	구정리 37-30번지 일원	3,400	감)3,400	-	강릉시 고시 제2014-268호	-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유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 폐지 : 1,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유수지 기능 상실로 폐지하고자 함.
②	유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 폐지 : 4,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유수지 기능 상실로 폐지하고자 함.
③	유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 폐지 : 1,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유수지 기능 상실로 폐지하고자 함.
④	유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 폐지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유수지 기능 상실로 폐지하고자 함.
⑤	유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 폐지 : 3,8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유수지 기능 상실로 폐지하고자 함.
⑥	유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 폐지 : 3,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유수지 기능 상실로 폐지하고자 함.

3)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2	1	15	집산 도로	966	구정리 37-97 번지일원	구정리 28-5 번지일원	일반도로	-	강릉시 고시 제2014-268호	-
폐지	중로	2	2	15	집산 도로	215	구정리 37-34 번지일원	구정리 37-115 번지일원	일반도로	-	강릉시 고시 제2014-268호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호선	-	◦ 도로 폐지	◦ 당초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도로 계획으로 관광·휴양형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중로 2-2호선	-	◦ 도로 폐지	◦ 당초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도로 계획으로 관광·휴양형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4) 공간시설

가) 광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①	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구정리 37-37 번지일원	9,900	감)9,900	-	강릉시 고시 제2014-268호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광장	◦ 도시계획시설 폐지 : 9,900m ²	◦ 당초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광장 기능을 위한 시설로서 금번 관광·휴양형 계획으로 변경되어 폐지하고자 함.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①	공원	근린 공원	구정리산44-11번지 일원	75,760	감)75,760	-	강릉시 고시 제2014-268호	-
폐지	②	공원	어린이 공원	구정리 28-23 번지 일원	3,400	감)3,400	-	강릉시 고시 제2014-268호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 도시계획시설 폐지 : 75,760㎡	◦ 당초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의 거주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금번 관광·휴양형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
②	공원	◦ 도시계획시설 폐지 : 3,400㎡	◦ 당초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의 거주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금번 관광·휴양형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정 토지이용계획

구 분		합 계		관 광 · 휴 양 형		주 거 형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1,002,909	100.00	564,784	100.00	438,125	100.00		
1	단독주택	14,279	1.42	-	0.00	14,279	3.26		
2	연립주택	70,300	7.01	-	0.00	70,300	16.05	급수시설(535)	
3	아파트	106,860	10.66	-	0.00	106,860	24.39	오수처리시설(1,000) 급수시설(1,500)	
4	관광휴양시설	116,000	11.57	116,000	20.54	-	0.00	급수시설(2,300)	
5	도서관	4,300	0.43	-	0.00	4,300	0.98		
6	단지내도로	68,755	6.86	-	0.00	68,755	15.69		
7	유수지	16,140	1.61	3,400	0.60	12,740	2.91		
8	급수시설	-	0.00	-	0.00	-	0.00	4,435	
9	오수처리시설	-	0.00	-	0.00	-	0.00	4,540	
10	공 원	공원	1,699	0.17	-	0.00	1,699	0.39	오수처리시설(1,740) 급수시설(100)
11		근린공원	75,760	7.55	-	0.00	75,760	17.29	
12		어린이공원	3,400	0.34	-	0.00	3,400	0.78	
13		어린이놀이터	4,850	0.48	-	0.00	4,850	1.11	
14		커뮤니티광장	2,600	0.26	-	0.00	2,600	0.59	
15		건축물부설광장	9,900	0.99	9,900	1.75	-	0.00	
16		주민운동시설	4,000	0.40	-	0.00	4,000	0.91	
17		조성녹지	16,851	1.68	1,497	0.27	15,354	3.50	오수처리시설(1,800)
18	원지형보전녹지	487,215	48.57	433,987	76.84	53,228	12.15		

□ 변경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1,044,145	100.00	-
관광·휴양시설 용지	24,202	2.32	-
숙박시설1	9,570	0.92	골프텔(지하 2층, 지상 5층)
숙박시설2	10,654	1.02	단독형숙박시설(지상2층)
숙박시설3	3,978	0.38	테라스형 숙박시설 (지하1층, 지상4층)
체육시설 용지	367,105	35.16	18홀
골프코스	284,624	27.26	-
티	7,117	0.68	-
그린	16,704	1.60	-
페어웨이	136,911	13.11	-
러프	105,938	10.15	-
벙커	17,954	1.72	-
클럽하우스	6,599	0.63	-
예지물창고및직원숙소	5,339	0.51	-
그늘집	142	0.01	-
저류지	40,740	3.90	-
카트로	29,661	2.84	-
공공시설 용지	15,574	1.49	-
도로	15,574	1.49	-
녹지 용지	637,264	61.03	-
조성녹지	308,801	29.57	-
원형보전녹지	328,463	31.46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분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A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정리37-41번지일원	564,784	증)479,361	1,044,145	
①	관광휴양시설용지		116,000	감)49,531	66,469	
①-1	숙박시설용지	학산리산171번지일원	116,000	감)57,346	58,654	
①-2	부대시설용지	구정리28-16번지일원	-	증)7,815	7,815	
②	공공시설용지		13,300	감)3,077	10,223	

도면 표시 번호	구분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②-1	건축물부설광장	구정리37-37번지일원	9,900	감)9,900	-	
②-2	유수지6	구정리37-30번지일원	3,400	감)3,400	-	
②-3	도로	구정리37-98번지일원		증)10,223	10,223	
③	녹지용지		435,484	감)104,306	331,178	
③-1	조성녹지	구정리 37-100번지 일원	1,497	증)1,218	2,715	
③-2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37-101번지 일원	93,319	감)91,795	1,524	
③-3	원지형보전녹지	학산리 산166-5번지 일원	3,042	감)356	2,686	
③-4	원지형보전녹지	학산리 산166-2번지 일원	100	증)1,093	1,193	
③-5	원지형보전녹지	학산리 산171번지 일원	337,526	감)314,301	23,225	
③-6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37-114번지 일원	-	증)243,273	243,273	
③-7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37-123번지 일원	-	증)1,043	1,043	
③-8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37-107번지 일원	-	증)30,368	30,368	
③-9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37-123번지 일원	-	증)1,354	1,354	
③-10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37-57번지 일원	-	증)1,894	1,894	
③-11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37-114번지 일원	-	증)2,783	2,783	
③-12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28-18번지 일원	-	증)465	465	
③-13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산44-11번지 일원	-	증)5,278	5,278	
③-14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산66번지 일원	-	증)226	226	
③-15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산68-21번지 일원	-	증)1,628	1,628	
③-16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산101-2번지 일원	-	증)2,145	2,145	
③-17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산68-13번지 일원	-	증)518	518	
③-18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산101-1번지 일원	-	증)8,860	8,860	
④	체육시설용지		-	증)636,275	636,275	
④-1	체육시설용지-1	구정리37-84번지일원	-	증)335,229	335,229	
④-2	체육시설용지-2	구정리37-84번지일원	-	증)292,571	292,571	
④-3	체육시설용지-3	학산리산166-5번지일원	-	증)8,475	8,475	

※ 관광휴양시설용지내 조성녹지 36,916㎡, 체육시설용지(골프장)내 조성녹지 269,170㎡는 가구 및 획지상 포함된 면적임.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

도면 표시 번호	구 분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B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38,125	감)438,125	-	
①	주거용지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03,299	감)403,299	-	
①-I	단독주택용지	구정리 28-19번지 일원	23,478	감)23,478	-	
①-I-1	소 계	구정리 28-19번지 일원	14,279	감)14,279	-	
①-I-1-1	단독주택	구정리 28-19번지 일원	500	감)500	-	
①-I-1-2	단독주택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74	감)474	-	
①-I-1-3	단독주택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65	감)465	-	
①-I-1-4	단독주택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68	감)468	-	
①-I-1-5	단독주택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74	감)474	-	
①-I-1-6	단독주택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63	감)463	-	
①-I-1-7	단독주택	구정리 28-14번지 일원	463	감)463	-	
①-I-1-8	단독주택	구정리 28-3번지 일원	475	감)475	-	
①-I-1-9	단독주택	구정리 28-3번지 일원	475	감)475	-	
①-I-1-10	단독주택	구정리 28-3번지 일원	465	감)465	-	
①-I-1-11	단독주택	구정리 28-3번지 일원	475	감)475	-	
①-I-1-12	단독주택	구정리 28-13번지 일원	475	감)475	-	
①-I-1-13	단독주택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75	감)475	-	
①-I-1-14	단독주택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75	감)475	-	
①-I-1-15	단독주택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75	감)475	-	
①-I-1-16	단독주택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84	감)484	-	
①-I-1-17	단독주택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75	감)475	-	
①-I-1-18	단독주택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75	감)475	-	
①-I-1-19	단독주택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96	감)496	-	
①-I-1-20	단독주택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64	감)464	-	
①-I-1-21	단독주택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64	감)464	-	
①-I-1-22	단독주택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54	감)454	-	
①-I-1-23	단독주택	구정리 28-14번지 일원	475	감)475	-	
①-I-1-24	단독주택	구정리 28-14번지 일원	475	감)475	-	
①-I-1-25	단독주택	구정리 28-14번지 일원	463	감)463	-	
①-I-1-26	단독주택	구정리 28-14번지 일원	488	감)488	-	
①-I-1-27	단독주택	구정리 28-14번지 일원	488	감)488	-	
①-I-1-28	단독주택	구정리 28-14번지 일원	483	감)483	-	

①- I -1-29	단독주택	구정리 28-18번지 일원	488	감)488	-	
①- I -1-30	단독주택	구정리 28-18번지 일원	510	감)510	-	
①- I -2	공공시설 소계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965	감)4,965	-	
①- I -2-1	단지내도로	구정리 28-19번지 일원	4,965	감)4,965	-	
①- I -3	녹지 소계	구정리 28-3번지 일원	4,234	감)4,234	-	
①- I -3-1	조성녹지	구정리 28-3번지 일원	1,260	감)1,260	-	
①- I -3-2	조성녹지(공원)	구정리 28-3번지 일원	700	감)700	-	
①- I -3-3	조성녹지(공원)	구정리 28-3번지 일원	280	감)280	-	
①- I -3-4	조성녹지(공원)	구정리 28-3번지 일원	257	감)257	-	
①- I -3-5	조성녹지(공원)	구정리 28-3번지 일원	257	감)257	-	
①- I -3-6	조성녹지(공원)	구정리 28-3번지 일원	102	감)102	-	
①- I -3-7	조성녹지(공원)	구정리 28-3번지 일원	103	감)103	-	
①- I -3-8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28-14번지 일원	140	감)140	-	
①- I -3-9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28-14번지 일원	1,135	감)1,135	-	
①- II	연립주택용지	구정리 28-2번지 일원	118,507	감)118,507	-	
①- II -1	연립주택 소계	구정리 28-2번지 일원	87,403	감)87,403	-	
	연립주택	구정리 28-2번지 일원	70,300	감)70,300	-	
	조성녹지	구정리 28-2번지 일원	10,453	감)10,453	-	
	단지내도로	구정리 28-2번지 일원	6,650	감)6,650	-	
①- II -2	공공시설용지 소계	구정리 28-4번지 일원	5,150	감)5,150	-	
①- II -2-1	유수지1	구정리 산44-13번지 일원	1,750	감)1,750	-	
①- II -2-2	어린이공원	구정리 28-23번지 일원	3,400	감)3,400	-	
①- II -3	원지형보전녹지	구정리 산44-11번지 일원	25,954	감)25,954	-	
①- III	아파트용지	구정리 37-84번지 일원	261,314	감)261,314	-	
①- III -1	아파트 소계	구정리 37-84번지 일원	158,550	감)158,550	-	
	아파트		106,860	감)106,860	-	
	단지내도로		38,040	감)38,040	-	
	어린이놀이터		4,850	감)4,850	-	
	조성녹지		2,200	감)2,200	-	
	커뮤니티광장		2,600	감)2,600	-	
	주민운동시설		4,000	감)4,000	-	
①- III -2	공공시설용지	구정리 37-107번지 일원	87,750	감)87,750	-	
①- III -2-1	유수지4	구정리 37-25번지 일원	1,200	감)1,200	-	
①- III -2-2	유수지5	구정리 37-94번지 일원	3,840	감)3,840	-	

①-Ⅲ-2-3	유수지3	구정리 37-13번지 일원	1,850	감)1,850	-	
①-Ⅲ-2-4	유수지2	구정리 37-107번지 일원	4,100	감)4,100	-	
①-Ⅲ-2-5	근린공원	구정리 산44-11번지 일원	75,760	감)75,760	-	
①-Ⅲ-3	녹 지 소 계	구정리 37-123번지 일원	16,014	감)16,014	-	
①-Ⅲ-3-1	원지정보전녹지	구정리 37-104번지 일원	841	감)841	-	
①-Ⅲ-3-2	원지정보전녹지	구정리 산41-62번지 일원	3,273	감)3,273	-	
①-Ⅲ-3-3	원지정보전녹지	구정리 산41-2번지 일원	4,633	감)4,633	-	
①-Ⅲ-3-4	원지정보전녹지	구정리 37-123번지 일원	7,267	감)7,267	-	
②	공공시설용지	구정리 37-34번지 일원	23,400	감)23,400	-	
②-1	중로2-1	구정리 37-97번지 일원	15,300	감)15,300	-	
②-2	중로2-2	구정리 37-34번지 일원	3,800	감)3,800	-	
②-3	작은도서관	구정리 37-34번지 일원	4,300	감)4,300	-	
③	녹지용지	구정리 산100번지 일원	11,426	감)11,426	-	
③-1	조성녹지	구정리 100번지 일원	1,441	감)1,441	-	
③-2	원지정보전녹지	구정리 37-115번지 일원	9,985	감)9,985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항 목	계 획 내 용		비 고		
폐지	A-①	구정면 구정리 37-41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항의 관광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관광숙박업 내지 제7호의 관광편의 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관광객이용시설업 내지 제7호의 관광편의 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이하 (25,279.00㎡/116,000.00㎡)		
					용적률	100%이하 (54,771.00㎡/116,000.00㎡)		
					최고높이	10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유선형 형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B-②-3	구정면 구정리 37-34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번지일원		권장용도	• 작은도서관, 갤러리, 사설우체국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240.00㎡/4,300.00㎡)		
			용적률	100% 이하 (575.00㎡/4,300.00㎡)		
			최고높이	3 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박봉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3.0m(도면참조)		
신설	①-1	구정면 학산리 산171 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최고높이	10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신설	①-2	구정면 구정리 28-16 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3호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높이	10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신설	④-1	구정면 구정리 37-84 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골프장 시설, 동 법 제10조에 의한 골프장업을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 운동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고높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신설	④-2	구정면 구정리 37-84 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골프장시설, 동 법 제10조에 의한 골프장업을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3호 운동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고높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신설	④-3	구정면 학산리 산166-5 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고높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항 목	계 획 내 용		비 고	
				허용용도	권장용도		
폐지	I-1-1	구정면 구정리 28-19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500.00㎡)			
			용적률	80% 이하 (203.33㎡/500.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2	구정면 구정리 28-19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74.00㎡)		
			용적률	80% 이하 (203.33㎡/474.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3	구정면 구정리 28-19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65.00㎡)		
			용적률	80% 이하 (203.33㎡/465.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4	구정면 구정리 28-19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68.00㎡)		
			용적률	80% 이하 (203.33㎡/468.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5	구정면 구정리 28-19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74.00㎡)					
			용적률	80% 이하 (203.33㎡/474.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6	구정면 구정리 28-19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63.00㎡)		
						용적률	80% 이하 (203.33㎡/463.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7	구정면 구정리 28-14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63.00㎡)		
						용적률	80% 이하 (203.33㎡/463.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8	구정면 구정리 28-3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75.00㎡)		
						용적률	80% 이하 (203.33㎡/475.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9	구정면 구정리 28-3 번지일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75.00㎡)		
			용적률	80% 이하 (203.33㎡/475.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경사지붕 권장		
			색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10	구정면 구정리 28-3 번지일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65.00㎡)		
			용적률	80% 이하 (203.33㎡/465.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경사지붕 권장		
			색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11	구정면 구정리 28-3 번지일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75.00㎡)		
			용적률	80% 이하 (203.33㎡/475.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경사지붕 권장		
			색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12	구정면 구정리 28-13 번지일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75.00㎡)		
			용적률	80% 이하 (203.33㎡/475.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13	구정면 구정리 28-19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75.00㎡)		
			용적률	80% 이하 (203.33㎡/475.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14	구정면 구정리 28-19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75.00㎡)		
			용적률	80% 이하 (203.33㎡/475.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 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15	구정면 구정리 28-19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75.00㎡)		
			용적률	80% 이하 (203.33㎡/475.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16	구정면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구정리 28-19 번지일원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84.00㎡)		
			용적률	80% 이하 (203.33㎡/484.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 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17	구정면 구정리 28-19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75.00㎡)		
			용적률	80% 이하 (203.33㎡/475.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18	구정면 구정리 28-19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75.00㎡)		
			용적률	80% 이하 (203.33㎡/475.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19	구정면 구정리 28-19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96.00㎡)		
			용적률	80% 이하 (203.33㎡/496.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 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20	구정면 구정리 28-19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64.00㎡)			
			용적률	80% 이하 (203.33㎡/464.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 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21	구정면 구정리 28-19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64.00㎡)			
			용적률	80% 이하 (203.33㎡/464.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22	구정면 구정리 28-19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54.00㎡)			
			용적률	80% 이하 (203.33㎡/454.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 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23	구정면 구정리 28-14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번지일원	건폐율	40% 이하 (176.00㎡/475.00㎡)					
		번지일원	용적률	80% 이하 (203.33㎡/475.00㎡)					
		번지일원	최고높이	2층 이하					
		번지일원	배 치	도면참조					
		번지일원	형 태	경사지붕 권장					
		번지일원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 내 색채계획에 따름					
		번지일원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24	구정면 구정리 28-14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75.00㎡)		
						용적률	80% 이하 (203.33㎡/475.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25	구정면 구정리 28-14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63.00㎡)		
						용적률	80% 이하 (203.33㎡/463.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 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26	구정면 구정리 28-14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88.00㎡)		
						용적률	80% 이하 (203.33㎡/488.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 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27	구정면 구정리 28-14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88.00㎡)		
			용적률	80% 이하 (203.33㎡/488.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28	구정면 구정리 28-14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83.00㎡)		
			용적률	80% 이하 (203.33㎡/483.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29	구정면 구정리 28-18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488.00㎡)		
			용적률	80% 이하 (203.33㎡/488.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I-1-30	구정면 구정리 28-18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76.00㎡/510.00㎡)		

			용적률	80% 이하 (203.33㎡/510.00㎡)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도면참조)			
폐지	Ⅱ-1-1	구정면 구정리 28-2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나항의 연립주택		
				권장용도	• 연립주택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18,152.64㎡/87,403.00㎡)			
			용적률	100% 이하 (40,301.74㎡/87,403.00㎡)			
			최고높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3.0m(도면참조)			
폐지	Ⅲ-1-1	구정면 구정리 37-84 번지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중 가항의 아파트		
				권장용도	• 아파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21,602.95㎡/158,550.00㎡)			
			용적률	100% 이하 (128,247.52㎡/158,550.00㎡)			
			최고높이	평균 10층 이하(7~12층이하 권고)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강릉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3.0m(도면참조)						

의 견 서

①전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②공람의견 관련토지	토 지 소 재 지		지적
			지목
③의견제출인	성 명	(인)	소유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④의 견			

강릉시 공고 제2025-571호

강릉 도시계획시설(소로2-164호선 외 2개소)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열람 · 공고

1. 강릉시 고시 제2022-308호(2022.11.22.)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강릉시 입암동 589번지 일원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강릉 도시계획시설(소로2-164호선, 소로2-167호선, 소로2-168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1일

강릉시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입암동 58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소로2-164호선 외 2개소) 사업

2) 명 칭: 강릉 도시계획시설(소로2-164호선, 소로2-167호선, 소로2-168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편입면적(㎡)	기 점	중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계						5,579 (4,188)			
기정	소로	2	164	8 (8)	국지 도로	200 (200)	1,671 (1,671)	대로3-10 입암 51-4	중로2-5 입암 603-2	강릉시고시 제82-125호 (1982.9.2.)
기정	소로	2	167	8~9 (8~9)	국지 도로	464 (302)	3,928 (2,486)	대로3-10 입암 55-3	중로2-5 입암 574-6	강릉시고시 제82-125호 (1982.9.2.)
기정	소로	2	168	8 (8)	국지 도로	8 (8)	191 (65)	소로2-172 입암543-2	소로1-164 입암596-14	강릉시고시 제82-125호 (1982.9.2.)

※ ()은 금회 시행분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대원 대표이사 전용식
- 2)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1층(문화동 센트럴칸타빌)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027. 10. 31.

바.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로2-164	소로2-167	소로2-168	총계	비고
합계	1,149	787	46	1,982	자기자본 100%
개설공사비	303	470	25	798	
토지보상비	846	317	21	1,184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도로 무상귀속분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시설 내용	무상귀속 토지면적	비고
도로	소로2-164호선	L=200m, B=8.0m	1,671㎡	도로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귀속
도로	소로2-167호선	L=302m, B=8.0~9.0m	2,486㎡	
도로	소로2-168호선	L=8m, B=8.0m	65㎡	

2) 무상귀속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소로 2-164	소로 2-167	소로 2-168	성명		주소
합계				7,535	1,494	1,122	347	25			
1	입암동	604-1 5	과	378	140	140			김○현	강릉시 입암로	
									김○하	강릉시 강변로	
2	입암동	604-1 4	과	400	69	69			김○관	강릉시 화부산로	
3	입암동	604-1 3	과	400	66	66			김○희	강릉시 홍제로	
4	입암동	604-1 0	과	399	64	64			김○현	강릉시 입암로	
5	입암동	604-8	과	1,239	205	205			김○희	강릉시 홍제로	
									김○정	강릉시 월대산로	
									김○하	강릉시 강변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합계	소로 2-164	소로 2-167	소로 2-168	성명	
6	입암동	604-9	과	64	6	6		최○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7	입암동	597-7	과	133	61	61		최○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8	입암동	598-1	대	346	66	66		박○동	강릉시 하슬라로 1	
9	입암동	597-1 5	도	28	28	28		김○자	강릉시 해안로	
10	입암동	596-7	도	132	118	118		홍○장	옥천동	
11	입암동	596-2 6	도	177	54	54		조○복	강릉시 성덕로	
12	입암동	596-4	도	60	60	60		김○희	강릉시 입암동	
13	입암동	596-1 0	과	37	28	28		㈜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1층 ㈜대원(문화동, 센트럴칸타빌)	
14	입암동	596-5	도	79	79	79		최○진	강릉시 강변로	
15	입암동	596-1 1	전	76	41	41		㈜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1층 ㈜대원(문화동, 센트럴칸타빌)	
16	입암동	596-6	도	33	24	24		최○자	강릉시 성남동	
17	입암동	596-1 5	전	35	13	13		㈜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1층 ㈜대원(문화동, 센트럴칸타빌)	
18	입암동	580-1 9	대	12	8	8		사회복지 법인○○ ○○원	강릉시 입암동	
19	입암동	581-4	대	440	69	69		이○숙	강릉시 강변로	
20	입암동	581-3	대	552	79	79		이○숙	강릉시 강변로	
21	입암동	589-1	전	67	56	56		㈜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1층 ㈜대원(문화동, 센트럴칸타빌)	
22	입암동	587-2	전	11	11	11		유○수	강릉시 용강동	
23	입암동	585-2 1	대	10	9	9		정○이	강릉시 강변로	
24	입암동	55-2	도	59	1	1		심○윤	강릉시 입암동	
25	입암동	592-1 3	과	240	3	3		유○숙	경기도 김포시 감정로	
								유○연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가금말길	
								유○옥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유○주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유○화	강릉시 경강로	
26	입암동	589	전	153	62	62		㈜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1층 ㈜대원(문화동, 센트럴칸타빌)	
27	입암동	680-3 6	전	144	23	23		강릉시		
28	입암동	589-2	전	1,678	26	26		㈜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1층 ㈜대원(문화동, 센트럴칸타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합계	소로 2-164	소로 2-167	소로 2-168	성명		주소
29	입암동	589	전	153	25			25	(주)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1층 (주)대원(문화동, 센트럴칸타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합계	소 로 2	소 로 2	소 로 2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11,822	4,222	1,671	2,486	65						
1	입암동	604-15	과	378	140	140			김○현	강릉시 입암로	강릉 남부 새마을 금고		근저당 권및 지상권	
								김○하	강릉시 강변로					
2	입암동	604-14	과	400	69	69			김○관	강릉시 화부산로				
3	입암동	604-13	과	400	66	66			김○희	강릉시 홍제로				
4	입암동	604-10	과	399	64	64			김○현	강릉시 입암로	강릉 농업 협동조 합		근저당 권및 지상권	
5	입암동	604-8	과	1,239	205	205			김○희	강릉시 홍제로				
									김○정	강릉시 월대산로				
									김○하	강릉시 강변로				
6	입암동	604-9	과	64	6	6			최○일	서울시 중구 청구로	김○자	서울시 중구 청구로	관계인	
											최○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관계인	
											최○수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관계인	
											최○영	서울시 중구 청구로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합계	소 로 2 - 164	소 로 2 - 167	소 로 2 - 168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	입암동	597-7	과	133	61	61		최○일	서울시 중구 청구로	김○자	서울시 중구 청구로	관계인	
										최○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관계인	
										최○수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관계인	
										최○영	서울시 중구 청구로	관계인	
8	입암동	598-1	대	346	66	66		박○동	강릉시 하슬라로				
9	입암동	597-5	과	382	184	184		강릉시					
10	입암동	597-1 7	도	121	121	121		강릉시					
11	입암동	597-1 3	대	205	94	94		강릉시					
12	입암동	597-1 4	도	11	11	11		강릉시					
13	입암동	597-1 5	도	28	28	28		김○자	강릉시 해안로				
14	입암동	596-7	도	132	118	118		홍○장	옥천동				
15	입암동	596-4 0	도	84	56	56		강릉시					
16	입암동	596-3	도	83	83	83		강릉시					
17	입암동	596-2 6	도	177	54	54		조○복	강릉시 성덕로				
18	입암동	596-4	도	60	60	60		김○희	강릉시 입암동	김○자	강릉시 성덕포남로	관계인	
										김○정	강릉시 경강로	관계인	
										김○성	강릉시 성덕로	관계인	
										김○혜	강릉시 성덕포남로	관계인	
19	입암동	596-1 0	과	37	28	28		(주)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1층 (주)대원(문화동, 센트럴칸타빌)				
20	입암동	596-5	도	79	79	79		최○진	강릉시 강변로				
21	입암동	596-1 1	전	76	41	41		(주)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1층 (주)대원(문화동, 센트럴칸타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합계	소 로 2 - 164	소 로 2 - 167	소 로 2 - 168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2	입암동	596-6	도	33	24	24		최○자	강릉시 성남동	김○경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	관계인	
										김○경	강릉시 율곡로	관계인	
										김○경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관계인	
										김○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 로	관계인	
										김○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관계인	
										김○희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관계인	
										김○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관계인	
23	입암동	596-1 5	전	35	13	13		(주)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1층 (주)대원(문화동, 센트럴칸타빌)				
24	입암동	580-1 9	대	12	8	8		사회복 지법인 ○○○ ○원	강릉시 입암동				
25	입암동	581-4	대	440	69	69		이○숙	강릉시 강변로				
26	입암동	581-3	대	552	79	79		이○숙	강릉시 강변로				
27	입암동	680-2 2	구	2,74 8	1,62 7	1,58 7	40	강릉시					
28	입암동	581-9	과	45	45	45		강릉시					
29	입암동	589-1	전	67	56	56		(주)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1층 (주)대원(문화동, 센트럴칸타빌)				
30	입암동	588	잡	99	43	43		강릉시					
31	입암동	587-2	전	11	11	11		유○수	강릉시 용강동	김○숙	춘천시 공원2길	관계인	
										유○영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관계인	
32	입암동	587-1	전	43	3	3		강릉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합계	소 로 2 - 164	소 로 2 - 167	소 로 2 - 168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33	입암동	585-2 1	대	10	9		9		정○이	강릉시 강변로				
34	입암동	55-13	도	7	7		7		강릉시					
35	입암동	55-2	도	59	1		1		심○윤	강릉시 입암동 651-7	심○섭	강릉시 가작로	관계인	
											심○섭	강릉시 왕산면 선인당길	관계인	
											심○숙	강릉시 해안로	관계인	
											심○섭	강릉시 월대산로	관계인	
											심○숙	강릉시 토성로	관계인	
36	입암동	55-3	답	195	191		191		강릉시					
37	입암동	55-12	도	14	14		14		강릉시					
38	입암동	592-1 1	답	3	3		3		강릉시					
39	입암동	592-1 0	과	247	246		246		강릉시					
40	입암동	592-1 3	과	240	3		3		유○숙	경기도 김포시 감정로	강릉 원에 농업협 동조합		근저당 권및 지상권	
									유○연	충청남도 서산시 읍암면 도당가금말길				
									유○옥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유○주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유○화	강릉시 경강로				
41	입암동	589	전	153	62		62		(주)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1층 (주)대원(문화동, 센트럴칸타빌)				
42	입암동	680-3 6	전	144	23		23		강릉시					
43	입암동	589-2	전	1,67 8	26		26		(주)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1층 (주)대원(문화동, 센트럴칸타빌)				
44	입암동	589	전	153	25		25		(주)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1층 (주)대원(문화동, 센트럴칸타빌)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5. 3. 21. ~ 4. 4.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강릉시청 도시과(6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도시과(☎033-640-57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건 서

① 건 명	강릉 도시계획시설(소로2-164호선 외 2개소)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열람·공고		
② 열람의견관련토지	토 지 소 재 지	지적	지목
③ 의 건 제 출 인	성 명	(인)	소유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④ 의 건			

강릉시 공고 제2025-609호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열람 ·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의 주요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강릉시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 나. 위 치: 초당동 233번지 일원

2.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주요 내용

-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9	공공청사	강릉시 초당동 233번지 일원	-	증)3,484	3,484	-	-

-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내용	사유
19	공공청사	신설 - A = 3,484m ²	· 초당동 주민센터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3. 열람 장소 및 기간

- 가. 열람장소: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도시과(6층)
- 나. 열람기간: 2025. 3. 26. ~ 4. 10.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4. 관계도서: 게재 생략

5. 의견제출: 관련도서 및 도면을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도시과 도시계획부서

【전화번호 033-640-5767, 우)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건 서

① 건 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열람·공고		
② 열람의견관련토지	토 지 소 재 지		지적
			지목
③ 의 건 제 출 인	성 명	(인)	소유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④ 의 건			

동해시 고시 제2025-40호

동해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동해시 송정·나안동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간연장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033-530-260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3월 28일

동 해 시 장

1.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동해시 송정동·나안동 일원
- 면적 : 316,280㎡

2. 기간연장 사유

- 동해항 배후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 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난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제한을 연장 함

3. 제한개요 및 기간(변경)

- 제한개요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 제한기간 : (기정)2022. 4. 1. ~ 2025. 3. 31. ⇒ (변경)2022. 4. 1. ~ 2027. 3. 31.

4. 제한내용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5. 허용행위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 공익사업으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등의 설치
- 고시일 이전에 신청되어 진행 중인 인·허가 사항

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지형도면 등 : 실음생략

삼척시 고시 제2025-60호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6)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삼척시 고시 제2023-219호(2023. 12. 22.)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6)의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사업면적, 편입토지조서 등) 작성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삼 척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성내동 14-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류 :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6) 사업
 - 나. 명칭 :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6)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구 분	시 설 명	사업의 면적(m ²)			사업의 규모(m)		
		기정	변경	변경후	연장(L)		폭원(B)
					기정	변경	
도시계획도로	소로2-16	1,500.4	감)382.1	1,118.3	177.0	100.0	8.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명 : 삼척시장(도시과장)
 -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가. 사업착수일: 2020. 6. 26.
 - 나. 준공예정일: 2025. 6.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붙임)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순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위치	지번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성내동	14-6	도	167.3	125.2	국토해양부	국		
2	성내동	14-3	도	504.0	18.0	국토해양부	국		
3	성내동	16-30	도	3.0	3.0	강원도지사	공		
4	성내동	25	도	3,918.0	278.3	국토해양부	국		
5	성내동	17-5	대	169.0	11.7	국토해양부	국		
6	성내동	16-36	대	49.8	0.4	삼척시	공		
7	성내동	16-51	대	14.0	0.6	삼척시	공		
8	성내동	16-52	대	11.7	2.3	삼척시	공		
9	성내동	16-32	대	185.8	13.4	삼척시	공		
10	성내동	16-2	도	50.2	50.2	강원도지사	공		
11	성내동	17-22	대	103.0	1.9	삼척시	공		
12	성내동	16-44	대	92.8	73.1	삼척시	공		
13	성내동	17-10	도	30.0	22.7	삼척시	공		
14	성내동	17-3	차	271.0	6.8	삼척시	공		
15	성내동	16-1	도	24.5	24.5	국토해양부	국		
16	성내동	17-9	도	50.0	25.5	강원 삼척시 성내동 1*~*	장*진		
17	성내동	16-29	대	26.8	3.0	삼척시	공		
18	성내동	16-6	도	57.9	9.4	강원도지사	공		
19	성내동	16-5	도	5.0	5.0	강원도지사	공		
20	성내동	16-58	대	49.6	26.3	삼척시	공		
21	성내동	16-38	도	87.0	87.0	국토해양부	국		
22	성내동	17-8	도	30.0	23.9	강원도지사	공		
23	성내동	16-57	대	22.8	8.3	삼척시	공		
24	성내동	16-8	도	7.0	7.0	강원 삼척시 성내리 1*~*	김*경		
25	성내동	25-17	대	2.0	1.8	기획재정부	국		
						삼척시	공		
26	성내동	6-59	도	187.9	0.2	삼척시	공		
27	성내동	25-14	도	11.3	0.8	국토해양부	국		
28	성내동	2-15	도	253.0	253.0	국토해양부	국		
29	성내동	2-36	대	34.0	34.0	삼척시	공		
30	성내동	16-4	대	271.0	1.0	삼척시	공		
합 계				6,689.4	1,118.3				

※ 기타(물건 등): 토지상의 일체 지장물을 포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본 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4)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고시 제2025-62호

삼척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삼척시 고시 제2024-278호(2024. 12. 27.)로 건축신고(증축) 사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삼척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사업' 의 실시계획 (변경- 사업규모, 기간연장 등) 작성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삼 척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127번지(1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 나. 명칭 : 블랙밸리C.C 골프장 조성사업 - 예지물(잔디폐기물) 보관창고 설치
- 3. 사업시행자(건축주)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명 : 블랙밸리컨트리클럽(주)
 -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307-84번지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일 : 2024. 12. 2. 【 * 문서번호: 도계읍-18243(2024. 12. 2.)호 시행 】

5. 사업의 규모(변경)

구 분	건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 동수	구 조
기 존	주1	운동시설(클럽하우스)	1,878.96	4,536.72	2층/1동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
	주2	운동시설(휴게소-1)	100.74	100.74	1층/1동	
	주3	운동시설(휴게소-2)	100.74	100.74	1층/1동	
	주4	운동시설(장비창고)	779.45	1,130.55	2층/1동	
	주5	운동시설(퇴비사)	180.00	180.00	1층/1동	
	주6	운동시설(수위실)	18.75	18.75	1층/1동	
	주7	운동시설(카트차고지)	300.02	300.02	1층/1동	일반철골구조
증 축 (금회 건축사항)	주8	운동시설(예지물창고)	34.20	34.20	1층/1동	경량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합 계			3,392.86	6,401.72		
참 고 사 항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전체 부지면적: 979,697㎡ (도계읍 상덕리 127, 142-1, 149, 250, 268, 도계리 2, 21-1, 50)			
변 경 사 항			▷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동수, 구조(변경없음) ▷ 건축물 높이(변경): [기정] 6.32m → [변경] 7.52m (증 1.2m)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사업착수일: 2024. 12. 9. 【 건축신고일, 신고번호: 2024-도계읍-증축신고-4 】

나. 준공예정일: 2025. 4. 10.

【 * 변경사항(준공예정일): [기정] 2025. 2. 10. → [변경] 2025. 4. 10.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없음)

순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위치	지번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도계읍 상덕리	127	체	668,386	668,386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307-***	블랙** 컨트리 클럽(주)		

※ 기타(물건 등): 위 토지 상에 존재하는 지장물 등 일체 포함.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본 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4)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 공고 제2025-73호

횡성 군계획시설(연구시설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안) 열람 · 공고

횡성 군계획시설(연구시설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열람 ·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횡 성 군 수

□ 횡성 군계획시설(연구시설①) 결정(경미한 변경)

1. 군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연구시설	연구 시설	목계리 112-10번지 일원	291,178	증) 10,618	301,796	횡성군고시 제2022-38호 (2022.3.3)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연구시설	○ 시설면적 변경 - 기정:291,178 - 변경:301,796m ² (증:10,618m ²)	○ E-모빌리티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면 적 변경

□ 횡성 군계획시설(연구시설①)사업 실시계획(안)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목계리 13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횡성 군계획시설(연구시설①)사업

○ 명 칭

- (1단계)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공사

- (2단계)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 건설공사

- (3단계)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시험센터 건설공사
- (4단계) 실도로 기반 Lv4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평가 기술개발센터 건설공사
- (5단계) 고난이도 자율주행 실증평가 증축공사

3. 사업의 규모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91,178	증) 10,618	301,796	
1단계	140,210	-	140,210	
2단계	10,862	-	10,862	
3단계	3,287	-	3,287	
4단계	-	증) 42,114	42,114	금회시행
5단계	-	증) 51,770	51,770	금회시행
향후계획	136,819	감) 83,266	53,55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성 명	주 소	비고
1·3·5 단계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 천영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길 7(서초동)	
2단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4단계	한국도로교통공단 대표 김희중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반곡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구 분	사업기간	비고
1·2단계	실시계획 인가일 ~ 2025. 12.	
3·4·5단계	실시계획 인가일 ~ 2026. 12. 인가일 ~ 2025. 12.	

6. 열람장소: 횡성군청 도시교통과(도시계획팀 033-340-2622)

7. 열람기간: 2025. 3. 28. ~ 4. 18.(22일간)

8. 관계도면: 게재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게재생략(협의매수 완료)

10. 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횡성군청 도시교통과(☎033-340-2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5-321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소로3-35호선) 공사완료 공고

정선군 고시 제2010-96호(2010. 7. 9.)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도로: 소로3-35호선)에 대한 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도로 : 소로3-35호선)

나. 명 칭 : 백두대간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정선5일장 아리랑로)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교통시설 (도로)	소로3-35	□ L=127m, B=6m(A=799m ²)	□ 도로개설 A=167m ² - L=35m, B=4~6m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관광과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착수일 : 2024. 6.

나. 준공일 : 2024. 10.

정선군 공고 제2025-322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소로2-2호선, 소로3-10호선) 공사완료 공고

강원도 고시 제1992-15호(1992. 2. 13.)로 최초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소로2-2호) 및 정선군 고시 2003-41호(2003. 5. 9.)로 최초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0호)에 대한 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도로)

나. 명 칭

- 1) 1공구 : 백두대간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정선5일장 아라리로) 조성사업
- 2) 2공구 : 정선 소2-2호(녹송둔치)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교통시설 (도로)	소로2-2호	□ L=982m, B=8m (A=7,856㎡)	□ 1공구(관광과 시행) - L=600m, B=4.0~8.0m, A=3,075㎡ □ 2공구(도시과 시행) - L=360.7m, B=2.5~4.5m, A=1,639㎡	
	소로3-10호	□ L=450m, B=6m (A=2,733㎡)	□ 2공구(도시과 시행) - L=94.6m, B=2.5~4.5m, A=506㎡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1공구 관광과장, 2공구 도시과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착수일 : 2024. 3.

나. 준공일 : 2024. 10.

정선군 공고 제2025-326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장찬천) 공사완료 공고

정선군 고시 제2016-25호(2016. 4. 15.)로 최초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방재시설:장찬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34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장찬천)

나. 명 칭 : 소하천(장찬천) 정비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방재시설	소하천 (장찬천)	□ A=165,824㎡	□ A=5,522㎡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건설과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착수일 : 2022. 10.

나. 준공일 : 2024. 10.

화천군 공고 제2025-350호

화천군 공인 폐기 공고

「화천군 공인 조례」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의거 폐기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화 천 군 수

- 폐기 사유 : 명칭 변경으로 인한 미사용 폐기
- 폐기 일자 : 2025. 3. 14.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연번	공인명	인영	규격 및 재료	비고
1	화천군재무과 분임경리관인		2.1cm × 2.1cm (수각)	
2	화천군 경리관인		1.8cm × 1.8cm (황양목)	